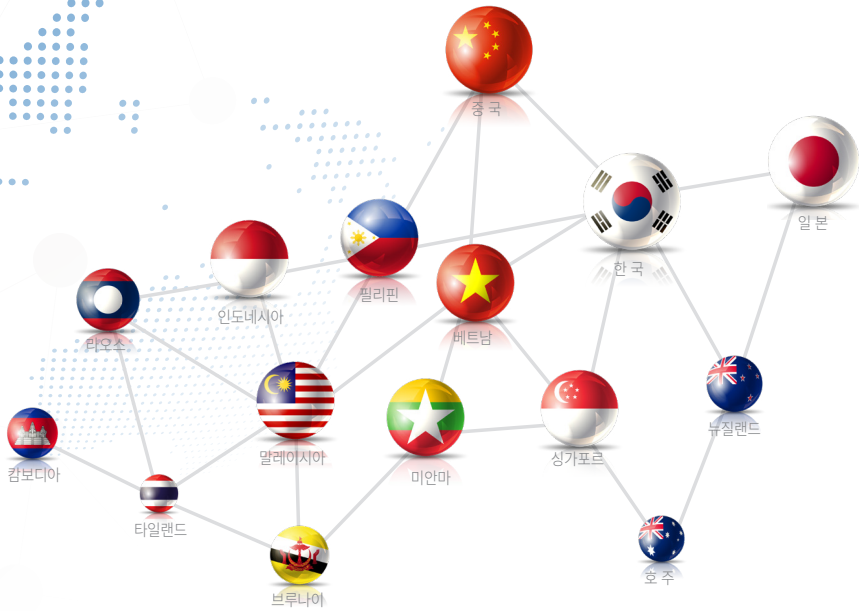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KOTRA 한국무역협회 합동

RCEP

역 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종합 가이드북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KOTRA 한국무역협회 합동

RCEP

역 내 포 괄 적 경 제 동 반 자 협 정

종합 가이드북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발간사

1995년 WTO 창립 이후 상품무역의 세계화는 순조롭게 진행 되어왔으나, 환경, 노동, 보조금 등의 추가 이슈를 다루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와 같은 이슈는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통상질서는 약화되고, 국내 무역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2월 발효한 국내 최대의 Mega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통상규범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RCEP은 동아시아 15개국의 무역 규제를 완화하고 규범을 단일화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가간 무역 확대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새로운 FTA를 활용하여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첫 FTA라는 점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RCEP의 실익과 규범을 숙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코트라 등 정부기관·FTA지원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RCEP 활용 핵심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기업 CEO부터 수출 실무자까지 RCEP 활용 전략과 사례, 현지 동향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책자를 발간하는데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코트라 집행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RCEP 관련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층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FTA종합지원센터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만기



RCEP

역 내 포괄적 경제 동 반 자 협 정

종합 가이드북

PART 1 서론

- 1. RCEP의 발효 의미 08
- 2. RCEP 수출입 동향 17
- 3. RCEP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 현황과 의미 25

PART 2 Mega FTA 활용법

- 1. 국가별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34
 -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 기존 FTA와 차별점
- 2.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침 41
- 3. RCEP 활용전략 51
 - 다국누적 활용전략
 -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전략
 - 관세차별 활용전략
 - 연결원산지증명 활용전략
- 4. 원산지검증 유의사항 78

PART 3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 전략

- 1. RCEP 현지동향 88
 -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 2. 국가별 RCEP 활용 전략 108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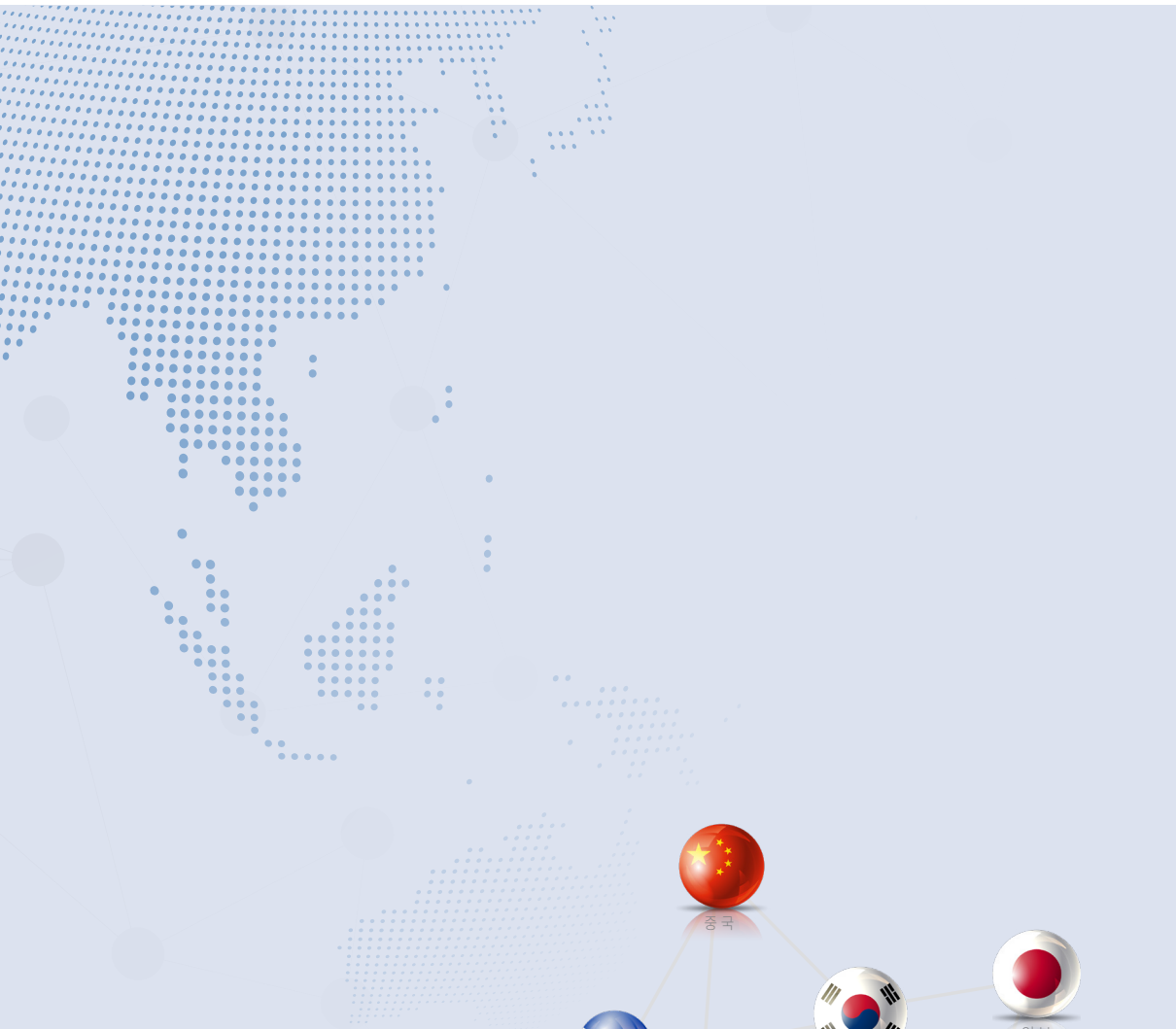
PART 4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1. 일본의 수출입 현황	120
2. 對일본 RCEP 활용전략	122
- RCEP 활용 수출 유망산업	
- 다국누적 활용전략	
- 일본 중계무역 활용전략	
3. 일본 현지 RCEP 활용전략	147
- 최저세율 활용, 1국 다(多)협정 전략	
- 현지 지원제도 및 정책 정보 활용	
- 현지 RCEP(EPA) 활용 방법	

부 록

1. RCEP 활용 실무절차	166
2. 수출 1,000대 품목으로 본 RCEP 수출 유망품목	177
3. RCEP 원산지 간이확인제도 대상품목	187
4. 국가별 주요 품목 양허 실익	199
5. 일본 수출 RCEP 활용 유망품목 300개	214
6. 일본 RCEP 활용 전략 원산지기준 관련 일본어-한국어 대조표	223
7. RCEP FAQ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225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서론

1. RCEP의 발효 의미	08
2. RCEP 수출입 동향	17
3. RCEP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 GVC) 현황과 의미	25



PART 1

서론

1. RCEP의 발효 의미

2022년 2월 1일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MEGA)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기체결된 FTA 효과와 더불어 추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첫 FTA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RCEP 발효로 우리 기업들은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관세 혜택 외에 RCEP은 15개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했고,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 CR) 기준 도입과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의무 삭제 등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하였다.

RCEP 역내 회원국간 상품을 분류,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활용하여 무역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RCEP은 재료누적뿐만 아니라 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의 가능성도 열어두어 향후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에 편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RCEP 발효 의미】

- | | |
|------------------------|------------------------|
| ① 세계 최대 규모의 MEGA FTA | ⑤ 기업 무역비용 절감 |
| ② 아세안 시장 접근성 확보 | ⑥ 기존 FTA 외 추가 관세 혜택 제공 |
| ③ 15개 회원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통일 | ⑦ 일본과의 첫 FTA 체결 |
| ④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 ⑧ 역내 공급망 및 GVC 재편 |

오늘날 기체결된 FTA 이외에 신규로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경우 이미 기존 협정에서 대부분의 상품이 개방되었거나, 관세가 철폐되었기에 원산지 판정기준, 환경, 노동 등 새로운 제도와 규범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RCEP은 15개 회원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했고, 일부 무역규범에 미숙한 국가들의 통관 및 관세 행정을 제도화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 아세안 국가들이 무역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수록 RCEP 협정의 활용 실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s)처럼 신규 FTA의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효과가 제한적인 FTA가 있는가 하면⁰¹⁾, 원산지 관리에 유리한 RCEP은 발효 연차가 커질수록 관세 혜택 및 비용 절감이 커져서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등 기체결된 FTA를 대체해 나갈 것이다. 당장 RCEP의 관세 혜택이 기체결된 FTA 보다 적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RCEP 발효 연차에 따른 혜택과 활용 가능성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세계 최대 경제규모의 메가 FTA

RCEP은 아세안 회원국 최소 6개국의 서명국과 비아세안 회원국 3개국의 서명국 비준이라는 발효 요건을 충족해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이날부터 협정이 발효되었고, 이어서 2022년 2월 1일 한국, 3월 18일 말레이시아까지 15개 회원국 중 12개 회원국에서 협정이 발효되었다. 향후 인도네시아(2022년 8월 31일 비준완료), 미얀마, 필리핀까지 RCEP이 발효된다면, RCEP은 경제 규모면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된다.

【주요 협정별 GDP/인구수/수출입 현황】

(단위: 십억불/백만명)

구분	GDP		인구수		수출		수입	
	금액	비중	명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RCEP	26,193	30.7%	2,282	29.8%	5,342	30.8%	4,636	26.4%
USMCA	23,626	27.7%	497	6.5%	2,239	12.9%	3,171	18.1%
EU	15,283	17.9%	445	5.8%	5,376	31.0%	5,058	28.8%
CPTPP	10,836	12.7%	511	6.7%	2,651	15.3%	2,550	14.5%
MERCOSUR	1,974	2.3%	296	3.9%	287	1.7%	238	1.4%
AfcFTA	1,247	1.5%	578	7.5%	198	1.1%	254	1.4%
IPEF(협상중)	34,767	40.8%	2,503	32.7%	4,302	24.8%	5,012	28.6%
전세계	85,239	100.0%	7,658	100.0%	17,367	100.0%	17,538	100.0%

출처: IMF(2020년 기준)

01) USMCA는 2022년 기준 발효 28년차인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4년 발효)로 시장개방이 거의 완료된 상황 속에서 협상을 추진하여 다른 FTA 협상과 달리 관세 인하나 시장개방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협상의 목적은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규범 개편에 있었음

서론

RCEP과 다른 다자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을 비교해 보면, 우선 RCEP은 유일하게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여하는 국가 수도 15개국으로 가장 많다. 경제 규모면에서도 협상 중인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GDP, 인구수 및 한국의 수출입 비중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이며, IPEF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2020년 기준 한국의 수출 비중은 RCEP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협정별 참여국 현황(발효/협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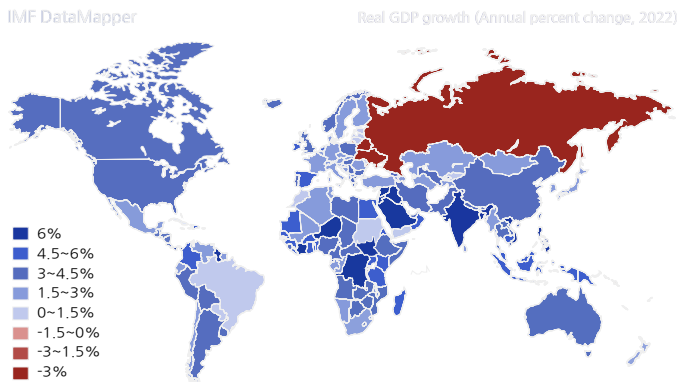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

■ 아세안 시장 접근성 확보

우리 기업들은 RCEP을 통해 향후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5~6% 수준으로 높게 예상되어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IMF Data Mapper

【아세안 1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평균
필리핀	6.5	6.3	6.5	6.5	6.5	6.5	6.5
베트남	6.0	7.2	7.0	6.9	6.8	6.7	6.9
브루나이	5.8	2.6	2.1	2.1	2.1	2.1	2.2
말레이시아	5.6	5.5	4.9	4.4	4.4	3.9	4.6
인도네시아	5.4	6.0	5.8	5.4	5.3	5.2	5.5
캄보디아	5.1	5.9	6.1	6.3	6.5	6.5	6.3
싱가포르	4.0	2.9	2.6	2.5	2.5	2.5	2.6
태국	3.3	4.3	3.8	3.3	3.2	3.1	3.5
라오스	3.2	3.5	3.8	3.9	4.1	4.3	3.9
미얀마	1.6	3.0	3.1	2.9	3.0	3.3	3.1

출처: IMF

또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RCEP에서 상품무역 외에 문화콘텐츠 및 유통, 물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우리 서비스 기업들의 접근성도 일부 개선되었다.⁰²⁾ 이와 함께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서비스 양허 방식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였고,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 국가 중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은 향후 6년 이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⁰³⁾ 구글의 전자상거래 보고서⁰⁴⁾에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가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정인 기업들도 RCEP으로 인한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국가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내용】

	분야	국가	내용
문화콘텐츠	온라인 게임	필리핀	최소납입자본금 요건 충족 시 자본제한 없이 합작법인 설립 허용
	교육용 온라인 게임	태국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라디오/TV	필리핀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영화 제작·배급·상영, 음반제작, 공연	인도네시아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유통물류	자국생산상품 소매, 의약품 도매	태국	외자지분제한(49%, 70%)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식음료/의류 분야 도매·프랜차이즈	인도네시아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서명 발효

■ 15개 회원국의 RCEP 원산지 결정기준 통일

RCEP의 발효로 15개 회원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통일되어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기존 FTA 협정⁰⁵⁾에서는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할 경우 협정별로 서로 다른

02) 이유진 수석연구원 (2022). "RCEP의 주요 기대효과", 통상 이슈브리프

03) 단, 최빈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발효 후 15년 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04) e-Conomy SEA 2021, Google, Temasek, Bain & Company

05)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아 FTA, 한-호주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RCEP을 활용하여 수출할 경우 단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5개 회원국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RCEP 역내 회원국 대상 수출입이 많은 기업은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맞춰서 제품의 공급망과 부가가치를 관리하기보다는 RCEP을 통해 원산지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기존 FTA 협정과 비교하여 일부 완화된 측면도 있다.⁰⁶⁾ 먼저, 기체결 협정과 비교 할 때 RCEP은 단일 원산지 판정기준 비중이 30.51%로 가장 낮다.⁰⁷⁾ 이는 기업들이 세번변경 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이외에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RVC), 가공 공정기준(Specific Process, SP) 등 제품별 유리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기준(RVC)을 선택할 경우 집적법 및 공제법 중 유리한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적용 비율도 40%로 동일하게 규정하여 다른 협정이 최대 60~70% 부가가치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추가로 기업들은 기체결 협정들의 세번변경 기준이 2단위(CC)에서 4단위(CTH) 등으로 완화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주요 협정의 부가가치기준 활용 가능 품목 비중 현황】

한-호주FTA 22.75%	<	뉴질랜드 23.53%	<	한-중FTA 24.85%	<	RCEP 66.34%	<	한-아세안 85.97%	<	한-베트남FTA 87.67%
-------------------	---	----------------	---	------------------	---	------------------------	---	-----------------	---	--------------------

출처: RCEP 국가 간 GVC 네트워크 현황과 부가가치기준 활용에 관한 연구. 노재연, 안소영

RCEP은 추가로 보충적 특례규정을 채택하여 회원국간 원산지재료 누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 간접재료 등의 회원국 이외에서 수입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역내부가가치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발효 첫 해 RCEP은 재료누적만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15개국 협정이 모두 발효되어 5년 내 부가가치 누적의 확대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RCEP의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나라가 완전누적을 인정하는 최초의 협정이 될 것이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가공공정기준(SP)에서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CR) 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선택 폭도 넓어졌으며, 섬유업계의 경우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를 삭제하여 보다 완화된 원산지결정 기준을 의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업 무역비용 절감

RCEP 협정은 연결원산지증명제도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의 무역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CEP 역내에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추가 가공 없이 원상 태로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활용하여 물류, 재고관리의 편의성을

06) 노재연, 안소영 (2021). “RCEP 국가 간 GVC 네트워크 현황과 부가가치기준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2권 제3호
 07) 기체결 FTA 협정의 단일기준 비중은 한-싱가포르 77.56%, 한-호주 63.34%, 한-뉴질랜드 70.77%, 한-중 59.65%

높이고 더불어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중국, 아세안 국가들이 원산지증명 방식을 기관발급만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RCEP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간과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인 완전자율증명도 협정 발효 후 10년 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향후 그 편의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⁰⁸⁾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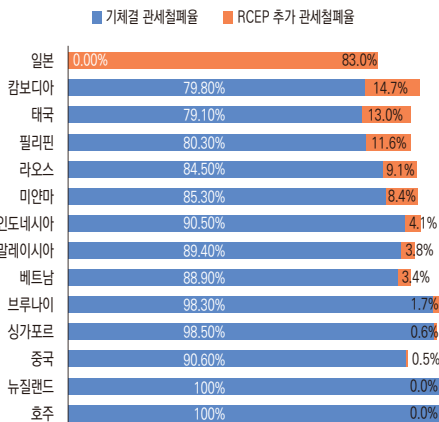
구분	RCEP	중국	아세안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증명방식	기관/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증명주체	세관/상의, 수출자/생산자	세관/상의	세관/상의	세관/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세관/상의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출처: RCEP의 주요 기대효과, 통상이슈 브리프, 이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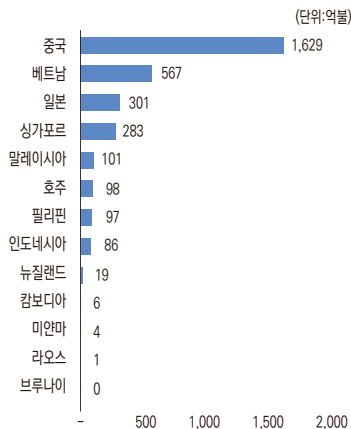
■ 기존 FTA 외 추가 관세 혜택 제공

RCEP 발효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RCEP 회원국 대상 추가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되었다. 기체결 FTA의 양허대상 품목수와 RCEP으로 인한 추가 품목수를 합산한 기준으로 캄보디아 14.7%, 태국 13.0%, 필리핀 11.6% 등 아세안 국가들 중심으로 추가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기체결 FTA가 없기 때문에 양허 일정에 따라 향후 20년 내에 전체 품목수 대비 83.0%의 품목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발효 1년차 즉시철폐 비중도 67.0%에 이른다.⁰⁹⁾

【RCEP 발효로 인한 추가 관세 철폐율 비교】



【한국의 對RCEP 회원국 수출액(2021년 기준)】



출처: RCEP 상세 설명자료(관계부처 합동),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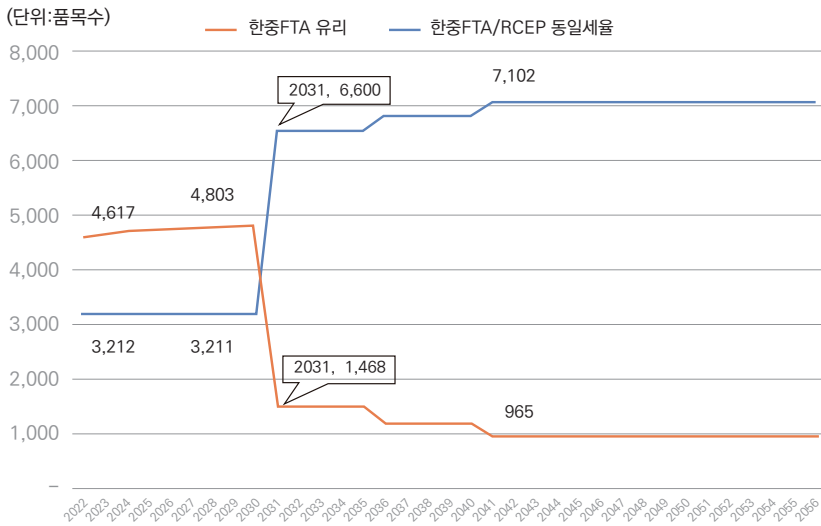
주: 해당국 對한국 수입양허 대상품목 기준(기체결 FTA 품목수에 RCEP 철폐 품목수 합산 비중)

08) 다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협정 발효 후 20년 내 완전자율증명 방식도입을 시행하도록 규정됨

09) 관계부처 합동 (2021), "RCEP 상세 설명자료", 부록1. 상품양허 주요내용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RCEP의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물론, 한-중 FTA 및 APTA¹⁰⁾를 활용하는 게 관세 실익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 관리 편의성과 향후 완전누적 활용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기체결 FTA와 RCEP의 관세율이 같은 동일세율 품목에 한하여 RCE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RCEP 발효 1년차 기준으로 한-중 FTA 및 APTA 협정과 동일 관세율을 유지하는 RCEP 품목수는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발효 10년차인 2031년 기준 그 비중은 77.6%까지 증가한다. 향후 누적원산지기준을 활용하거나 RCEP 역내 무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중국 수출 시 RCEP 활용 유인이 더 커질 수 있다. 참고로 발효 1년차 기준 한-중 FTA 및 APTA보다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있는 품목은 의료용 기기, 자동차 부품품, 전동기 및 발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업용 섬유제품, 인쇄기 및 복사, 필름 등 총 16개 품목¹¹⁾으로 확인된다.

【RCEP과 한-중 FTA 연차별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 비교】



출처: 저자 작성(APTA, 한중 FTA, RCEP 양허표 중 관세율 형태만 비교)

주1: RCEP 및 APTA 협정세율을 비교한 품목수는 비중이 적어 한-중 FTA 및 RCEP 비교 세율만 표기

주2: RCEP, APTA, 한-중 FTA 등 모든 협정 동일세율 구간은 한-중 FTA/RCEP 동일세율에 포함

베트남의 경우 기체결 FTA인 한-베트남 FTA(2015년 발효),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와 비교할 때 일부 품목에서 소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났다. 기체결 FTA로 이미 전체 품목수(8,824개) 대비 88.9%에 해당하는 품목의 베트남 시장이 개방되었고, RCEP 발효로 향후 10년 내에 326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3.4%가 추가로 개방된다.¹²⁾ 주요 관세 혜택 품목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와 형강 등 일부 철강 품목이 주요 관세 혜택 품목에 해당된다.¹³⁾

10)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1976년 발효 후 3차 개정까지 이루어짐

11) 3701.99.90, 5911.90.00, 8443.31.10, 8443.39.12, 8486.30.41, 8501.31.00, 8543.20.10, 8708.93.90, 9022.19.20, 9022.19.90, 9024.90.00, 9030.10.00, 9030.39.00, 9030.84.10, 9030.89.10, 9030.89.90 (HS Code 2012 기준)

12) 관계부처 합동 (2021), “RCEP 상세 설명자료”, 부록1. 상품양허 주요내용

13) 이윤진 수석연구원 (202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주요 기대효과”, 통상이슈브리프

■ 일본과 첫 FTA 체결

일본은 RCEP을 통해 양허 대상 전체 품목수(9,091개) 대비 83.0%(7,548개) 품목의 관세를 20년내 철폐할 예정으로 對일본 수출 기업의 관세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¹⁴⁾ 일본 관세청의 실행 관세율을 기준으로¹⁵⁾ 우리 기업들은 일본 수출시 전체 9,672개 품목 중 WTO기본세율, 일반관세가 유리한 품목을 제외한 3,872개 품목에 대해 RCEP 관세 혜택을 얻게 된다. 이 중 한국의 2021년 수출 실적에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는 집계 시 총 1,292개 품목이 RCEP에 따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RCEP 협정실익에 따른 對일본 품목/수출 현황(21년 수출액 기준)】

협정실익		품목수 (개/비중)				수출액 (21년 기준, 백만엔/비중)	
		전체		수출실적 있음			
RCEP		3,872	40.0%	1,292	35.9%	621,260	18.9%
최저세율 품목수 (MFN)	WTO 기본세율	808	8.4%	186	5.2%	517,992	15.8%
	일반관세	4,834	50.0%	2,115	58.7%	2,139,673	65.1%
비교 불가		158	1.6%	9	0.2%	7,218	0.2%
총합		9,672	100.0%	3,602	100.0%	3,286,143	100.0%

출처: 일본관세청 관세율표(2022년 4월 1일자 기준, HS code 2022기준), 일본 수입액 기준

주1: WTO기본세율 및 일반관세가 유리한 품목수를 합산한 것이 일본의 MFN 세율임

주2: 비교불가 품목은 중량과 세율이 병기되었거나, HS Code 2022년 기준에 따라 일부 품목 조정(RCEP 비양허 품목과 양허 품목 통제 합 등)으로 단순 비교가 불가한 품목을 의미함

주3: 잠정세율은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관세율로 간주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2021년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석유제품, 철강/비철 금속, 섬유/의복/가죽, 농수산물 순으로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對일본 수출실적이 없는 2,580개 품목도 향후 신규수출을 통해 RCEP을 활용할 여지가 있고,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들도 관세철폐 스텝에 따라 관세 혜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對일본 수출 시 RCEP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실적 기준 RCEP 관세 실익 품목의 산업별 현황】

(단위:백만엔)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고무	석유제품	철강/비철 금속	섬유/의복/가죽	농수산물	화장품	전기전자	비금속 제품	기타	합계
수출금액	182,224	157,174	130,394	56,133	41,119	11,333	8,613	8,575	7,661	18,034	621,260
금액비중	29.3%	25.3%	21.0%	9.0%	6.6%	1.8%	1.4%	1.4%	1.2%	2.9%	100%
품목수	289	137	12	87	523	56	6	6	38	138	1,292

출처: 일본관세청 관세율표(2022년 4월 1일자 기준), 2021년 수입액 기준

주: 품목수는 일본 HS Code 9단위 기준

14) 관계부처 합동 (2021), "RCEP 상세 설명자료", 부록1. 상품양허 주요내용

15) 일본관세청 실행 관세율표 (2022년 4월 1일자 기준)

■ 공급망 및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재편 여건 마련

미-중 무역분쟁 이후 코로나19 확산, 에너지 공급 문제 등 신무역규범의 등장은 통상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특히,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수출규제는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러한 통상여건 속에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RCEP은 우리 기업에게 공급망 변화와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재편 여건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누적원산지 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완전누적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제품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Value)를 관리할 유인이 커졌다.

RCEP 회원국간 부가가치 교역 현황을 연구해본 결과¹⁶⁾, RCEP 회원국은 전세계 총부가가치 수출의 약 2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회원국 사이에는 중간재 수출이 13.5%, 최종재 수출이 9.3%로 중간재 교역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보면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품목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의 비중이 높았다. 컴퓨터 및 전자기기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으로 무관세 품목이 많은 만큼 화학제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 교역 측면에서 재편이 예상되는 품목은 화학산업에 투입되는 에너지 광산품, 1차 금속제품에 투입되는 비에너지 광산품, 석유제품에 투입되는 에너지 광산품 및 석유제품 등이다. 해당 제품 등은 RCEP 역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호주,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치사슬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 RCEP 발효에 따른 GVC 재편 가능성 및 일본 활용전략 연구 (2022). 노재연, 안소영, 무역협회 연구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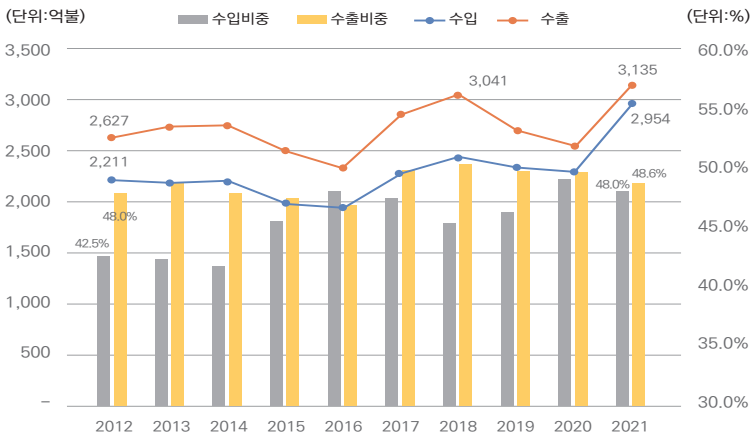
2. RCEP 수출입 동향

1) 한국의 對RCEP 회원국 수출입

■ 한국의 10년간 對RCEP 회원국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2021년 對RCEP 회원국 수출입 금액은 2012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2019년 對중국 수출 부진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감소했지만, 2022년 기준 2018년 수출액 이상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전세계 수출입 금액 중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대비 5.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국 입장에서 RCEP 국가의 중요성도 그 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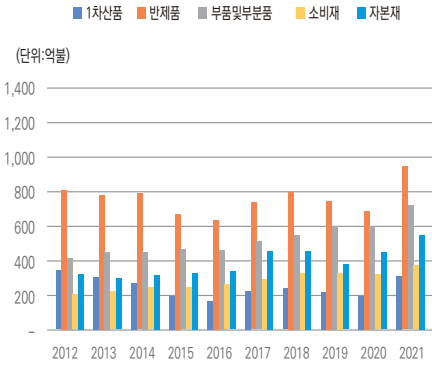
【한국의 對RCEP 회원국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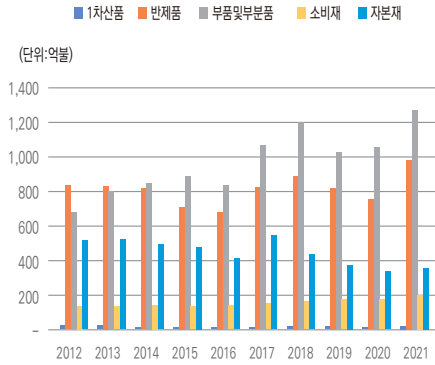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RCEP 회원국들은 한국의 제조업 분업구조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RCEP 회원국 간의 수출입은 대부분 중간재에 해당하는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비재의 경우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의 RCEP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큰 증감이 없었다. 한국의 RCEP 회원국 대상 자본재 수입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수출의 경우 201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단계별 한국의 對RCEP 수입 현황】



【생산단계별 한국의 對RCEP 수출 현황】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한국의 수출입 중 對중국 중간재 수입 및 對중국 소비자재 수출 비중은 2021년 기준 10년 전 대비 각각 9.1%p, 5.2%p 증가했다. 對아세안의 경우 자본재 수입이 7.1%p, 중간재 수출은 5.3%p 증가했다. 반면, 일본에 대한 전체적인 수출입 비중은 10년 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수출입 금액 중 RCEP 주요국 생산단계별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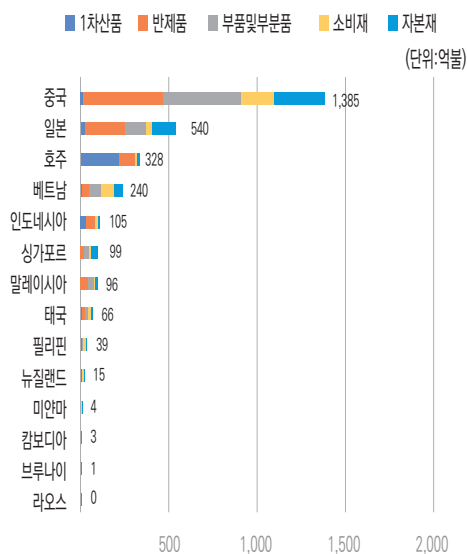
구분		수입비중			수출비중		
국 가	생산단계	2012년	2021년	증감	2012년	2021년	증감
중 국	1차산품	1.3%	1.6%	0.3%p	34.6%	44.0%	9.3%p
	소비재	25.3%	23.5%	-1.8%p	6.3%	11.4%	5.2%p
	자본재	29.2%	31.6%	2.5%p	23.5%	23.7%	0.2%p
	중간재	19.3%	28.4%	9.1%p	25.3%	26.6%	1.3%p
아세안	1차산품	7.2%	4.2%	-3.0%p	16.1%	18.0%	1.8%p
	소비재	12.4%	15.7%	3.2%p	5.2%	6.8%	1.6%p
	자본재	7.2%	14.3%	7.1%p	10.1%	10.8%	0.7%p
	중간재	10.6%	11.0%	0.4%p	12.3%	17.6%	5.3%p
일 본	1차산품	2.0%	2.0%	0.2%p	22.0%	16.0%	-6.5%p
	소비재	5.0%	4.0%	-1.4%p	6.0%	5.0%	-0.8%p
	자본재	21.0%	15.0%	-6.0%p	5.0%	3.0%	-1.7%p
	중간재	17.0%	11.0%	-6.1%p	6.0%	4.0%	-1.7%p

■ 한국의 2021년 기준 對RCEP 국가별 수출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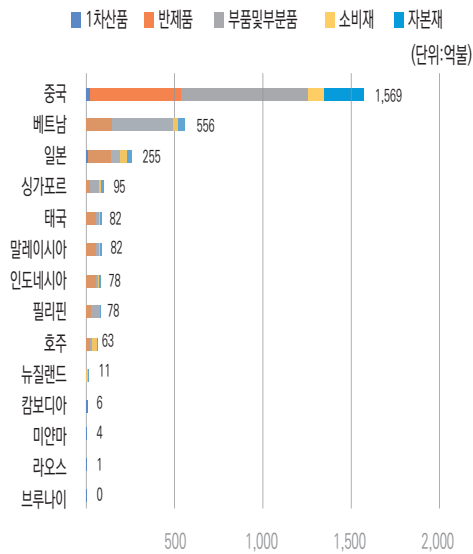
2021년 기준 국가별로 한국은 중국과 수출입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수입은 일본, 호주, 베트남, 수출은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중 중간재 및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對중국 전체 수입의 84.9%, 수출의 93.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소비재는 對중국 수출보다 對중국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특히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은 약 190억 달러어치인 반면, 수출은 89억 달러 수준에 그친 걸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對일본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한국의 對일본 수입액 540억 달러 중 중간재가 6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8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호주로부터는 1차 상품 수입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한국의 2021년 對RCEP 생산단계별 수입 현황】



【한국의 2021년 對RCEP 생산단계별 수출 현황】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① 對중국 수출입 현황

중국의 경우 한국의 전기전자 중간재 교역에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ITA 협정 등에 비해 관세 실익이 적어, RCEP 발효로 인한 효과는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고무 등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2021년 기준 對중국 수입을 보면 소비재의 경우 섬유/의복/가죽제품이 전체 189.7억 달러의 2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재의 경우 기계류 및 전기전자 수입이 전체 자본재 수

서론

입금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 수입의 경우 전기전자, 화학공업제품, 철강/비철금속 제품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21년 기준 對중국 수출에서는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이 단일 품목으로는 5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재의 경우 기계류, 의료/정밀기기, 전기전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경우 전기전자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억불)

수입					수출				
구분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구분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기 계 류	10.4	115.9	-	57.5	기 계 류	0.6	99.8	-	74.8
의료/정밀기기	1.1	25.1	7.5	3.5	의료/정밀기기	3.7	76.0	26.0	5.0
전 기 전 자	18.5	125.9	11.3	354.7	전 기 전 자	0.8	46.1	11.5	620.9
철강/비철금속	3.7	3.2	128.9	0.0	철강/비철금속	0.2	2.4	96.9	0.0
플라스틱/고무	19.0	-	40.8	3.1	플라스틱/고무	4.3	-	142.2	0.5
화학공업제품	1.4	-	153.2	-	화학공업제품	4.4	-	188.8	-
섬유/의복/가죽	43.0	-	22.1	0.5	화 장 품	47.7	-	0.1	-
기 타	92.6	17.4	82.8	22.5	기 타	22.7	1.5	51.6	18.2
총 합 계	189.7	287.4	446.6	441.9	총 합 계	89.4	225.7	517.1	719.4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② 對일본 수출입 현황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으로 일본의 주력 수출품과 유사한 관계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그 만큼 더 커지는 상호존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부 소재 부품의 경우 對일본 의존도가 일부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동일본 대지진 및 최근 에너지 대란의 영향으로 對일본 석유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RCEP의 발효로 인해 2022년 4월 이후 일본은 2년차 관세철폐가 진행되었으며, 중간재를 수출입하는 우리 업계의 활용 실익이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한국은 일본에 농수산물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은 관세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21년 기준 對일본 수입은 중간재(63.7%) 및 자본재(24.8%)가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재의 경우 기계류 및 의료/정밀기기, 전기전자 순으로 많았으며, 중간재의 경우,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 철강/비철금속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21년 기준 對일본 수출은 중간재가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철강/비철금속 및 석유제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재 수출의 경우 기계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이하게 농수산물 소비재 수출이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수산물 소비재는 주로 담배, 어육, 조제식품, 채소 및 채소 조제품, 과일/견과류, 라면 등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對일본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억불)

수입					수출				
구분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구분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반제품	부품 및 부분				반제품	부품 및 부분
기 계 류	0.4	77.3	-	32.9	기 계 류	0.2	12.8	-	18.5
전 기 전 자	0.2	19.4	1.8	75.2	전 기 전 자	0.5	9.3	2.7	27.8
철강/비철금속	0.3	1.5	64.1	-	철강/비철금속	0.8	1.2	45.1	-
플라스틱/고무	2.1	-	36.2	0.8	플라스틱/고무	2.0	-	17.8	0.6
화학공업제품	3.1	-	78.6	-	화학공업제품	1.1	-	25.7	-
석 유 제 품	-	9.7	-	-	석 유 제 품	-	2.7	45.4	-
의료/정밀기기	0.3	28.4	8.8	4.0	농 수 산 물	17.1	0.0	1.3	-
기 타	26.1	8.9	28.7	7.0	기 타	18.2	5.0	30.8	7.8
총 합 계	32.5	145.2	228	119.9	총 합 계	39.9	31.0	126.2	54.7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③ 對베트남 수출입 현황

한국 법인의 공장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으로는 중간재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품 및 부분품 수출 중 전기전자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6%로 매우 높았다. 또한 섬유/의복/가죽제품의 반제품 형태의 對베트남 수출과 최종재인 소비재 형태의 對베트남 수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베트남으로의 플라스틱/고무제품 반제품 수출과 베트남으로부터 농수산물 소비재 수입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Korea Chamber of Business in Vietnam)의 베트남 현지기업 설문조사 결과¹⁷⁾,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의 원부자재 및 부품 조달처가 주로 베트남 현지(35.2%), 한국(34.7%), 중국(21.7%)으로 총 91.6%를 RCEP 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 실익에 따라 누적원산지 등을 활용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17)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2021년 하반기 '올상', 5년 후엔 '햇살'. (2022-2-7), 산업일보 기사 발췌(<https://kidd.co.kr/news/225753>)

【2021년 기준 한국의 베트남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억불)

구분	수입				구분	수출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반제품	부품 및 부분				반제품	부품 및 부분
전 기 전 자	6.0	31.3	3.8	56.8	전 기 전 자	0.3	9.7	3.8	322.0
섬유/의복/가죽	34.4	-	10.0	0.0	섬유/의복/가죽	4.1	-	21.3	0.2
기 계 류	0.3	16.3	-	10.0	기 계 류	0.2	19.0	-	9.3
농 수 산 물	11.7	-	1.1	-	플라스틱/고무	2.0	-	40.5	0.1
기 타	19.0	4.5	23.6	2.4	기 타	17.7	17.0	75.2	12.3
총 합 계	71.4	52.1	38.6	69.2	총 합 계	24.2	45.7	140.7	3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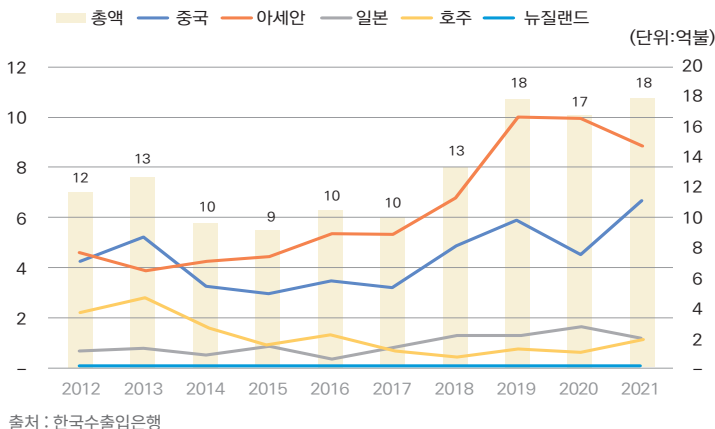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무역협회(K-stat)

2) 한국의 對RCEP 회원국 투자

한국 對RCEP 회원국에 대한 해외투자 금액은 2015년 약 9억 달러에서 2021년 약 18억 달러로 약 2 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지역별로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6.7% 증가하여 중국 5.1% 비해서 더 높았으며, 투자금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금융,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나, 투자 대상국은 베트남에 집중되었다.¹⁸⁾ RCEP 발효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아세안 국가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 개방과 향후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RCEP 해외 투자 현황】



18)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RCEP 역내 수출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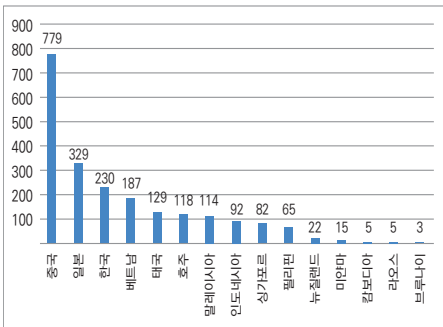
■ RCEP 회원국간 수출입 현황

2020년 기준 RCEP 회원국간 역내 수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순이며, 수출액의 경우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순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국은 RCEP 회원국간 수출입 전체의 35.0%를 차지하고 있어, 회원국간 교역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의 전체 수출입 중 RCEP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누적원산지 규정 활용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수출 대비 RCEP 역내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브루나이, 라오스, 호주 순이며, 수입의 경우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입 금액이 가장 많은 중국의 역내 수출입 비중은 수입 37.6%, 수출 26.9%에 그쳐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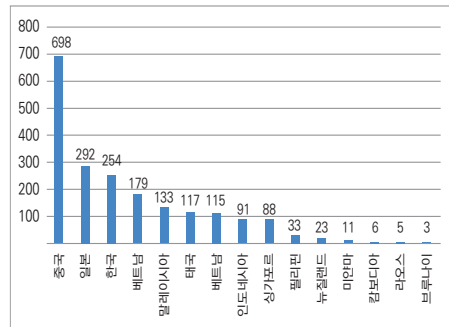
【RCEP 회원국 간 수입액】

(단위: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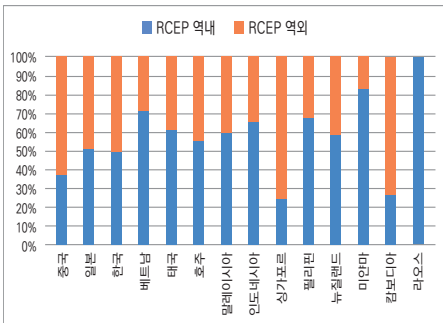


【RCEP 회원국 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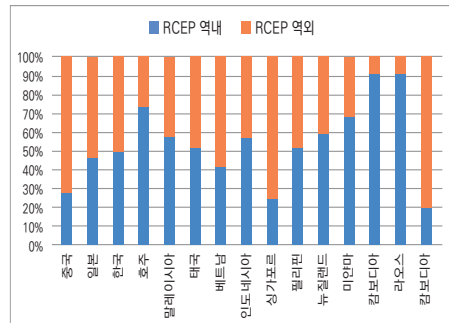
(단위:억불)



【RCEP 회원국 간 수입비중】



【RCEP 회원국 간 수출비중】



자료 : UN Comtrade (2020년 기준)

4) RCEP 회원국간 산업별 수출입 동향

■ 중국은 RCEP 회원국중 최대 교역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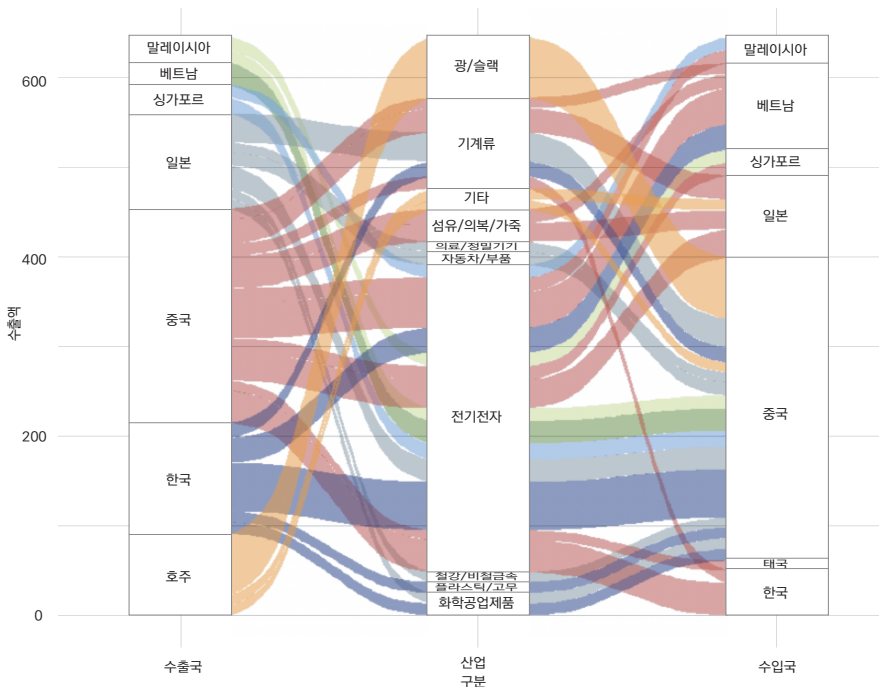
2020년 기준 중국은 RCEP 회원국 중에서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서 산업별 교역도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의 경우 RCEP 전체 수출입의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계류 수출액은 101억 달러로 이중 26.5%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섬유/의복/가죽 제품의 경우 일본 및 베트남으로 수출이 각각 21억 달러, 15억 달러로 많았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호주가 수출하는 광/슬랙 등 1차 산업품의 수출 가운데 81.3%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은 기계류, 의료정밀기기, 자동차 부품 수출국

일본은 주로 기계류, 의료/정밀기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철강/비철금속, 플라스틱/고무 등 다양한 품목을 RCEP 역내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출 품목들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 주요국 산업별 수출입 현황】

[금액 단위: 1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2020년 기준)

주: 도표의 심미성을 위해 10억불 이상의 교역 흐름만을 도식화함

(Global Value Chain, GVC)
**3. RCEP 글로벌 밸류체인
 현황과 의미**

수출입 측면에서 RCEP 회원국간 중간재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그 만큼 역내 제조업 분업 구조도 심화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은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 무역장벽 해소는 원부자재 교역을 원활하게 하여 RCEP 역내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¹⁹⁾ 이에, 한국무역협회가 의뢰한 ‘RCEP 발효에 따른 GVC 재편 가능성 및 일본 활용 전략 연구(2022. 노재연, 안소영)²⁰⁾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장에서는 RCEP 역내 가치사슬 현황과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1) RCEP 회원국의 부가가치 교역 현황

■ 전세계 부가가치 교역 현황

RCEP 국가들의 총부가가치수출액은 6조 139억 달러로 전세계 수출의 27.7%에 달한다. RCEP 역내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2조 5,553억 달러로 對전세계 수출의 11.7%를 차지하며, 중간재 수출금액(1조 7,272억 달러)과 비중(전세계 중간재 수출의 13.5%)이 최종재(전세계 최종재 수출의 9.3%)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국가유형별 전세계 부가가치 교역 현황】

[금액 단위: 100만 달러]

국가유형		총부가가치 수출		중간재 수출		최종재 수출	
수출국	수입국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RCEP 국가	총계	6,013,976	27.7%	3,430,948	26.8%	2,583,028	29.0%
	RCEP	2,553,345	11.7%	1,727,282	13.5%	826,063	9.3%
	기타 FTA	2,253,671	10.4%	1,101,796	8.6%	1,151,876	12.9%
	비체약국	1,206,959	5.6%	601,871	4.7%	605,088	6.8%

19) 피터슨경제연구원(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은 RCEP이 한-중-일 3국간 강력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동아시아 및 미국을 포함한 지역의 공급사슬 변화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함

20) 본 연구는 OECD ICIO(Inter-Country Input-Output Database, 2021)를 활용해 2018년 기준으로 RCEP 회원국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국가별, 산업별 GVC 분석을 진행하였음

기타FTA 국가	총계	11,670,042	53.7%	6,621,900	51.7%	5,048,142	56.6%
	RCEP	1,867,711	8.6%	1,185,518	9.3%	682,193	7.6%
	기타 FTA	7,725,760	35.6%	4,409,181	34.4%	3,316,579	37.2%
	비체약국	2,076,571	9.6%	1,027,201	8.0%	1,049,370	11.8%
비체약국	총계	4,047,700	18.6%	2,756,911	21.5%	1,290,789	14.5%
	RCEP	1,329,700	6.1%	1,043,177	8.1%	286,522	3.2%
	기타 FTA	2,097,635	9.7%	1,352,750	10.6%	744,885	8.3%
	비체약국	620,365	2.9%	360,984	2.8%	259,381	2.9%
총합계		21,731,717	100.0%	12,809,758	100.0%	8,921,959	100.0%
전세계 교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				58.9%			
전세계 교역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				41.1%			

자료: OECD (2021). Inter-Country Input-Output Database (2022, 노재연, 안소영)
 주: 국가유형은 한국의 FTA 체결 현황에 따라 RCEP국, 기타 FTA국, 비체약국의 3개 그룹으로 분류

■ RCEP 회원국 간 부가가치 교역 현황

RCEP 역내 부가가치 교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RCEP 역내 부가가치 수출 전체 유형 중 상위 4위는 모두 중국이 관여하고 있으며, 전체 교역 중 절반 이상(55.8%)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RCEP 역내 부가가치 교역 상위 25위 중 4쌍의 교역 형태가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가가치 수출이 2,361억 달러(9.2%)로 전체 유형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의 對일본 부가가치 수출은 435억 달러, 수입은 600억 달러로 무역액과 같은 적자 상황이었으며, 그 원인도 중간재 수입에 있는 걸로 확인된다. 한국은 베트남에 342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간재가 307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CEP 회원국 간 부가가치 교역 현황】

금액 단위: 100만 달러

순위	국가		역내 총부가가치 수출		역내 중간재 수출		역내 최종재 수출	
	수출국	수입국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	한국	중국	236,117	9.2%	184,075	10.7%	52,042	6.3%
2	중국	일본	190,972	7.5%	100,449	5.8%	90,522	11.0%
3	일본	중국	189,668	7.4%	129,707	7.5%	59,961	7.3%
4	중국	한국	123,138	4.8%	87,303	5.1%	35,835	4.3%
5	호주	중국	112,604	4.4%	85,487	4.9%	27,117	3.3%
6	중국	베트남	65,570	2.6%	58,392	3.4%	7,178	0.9%
7	싱가포르	중국	65,385	2.6%	42,969	2.5%	22,416	2.7%
8	중국	호주	60,415	2.4%	27,603	1.6%	32,812	4.0%

9	일본	한국	60,080	2.4%	43,157	2.5%	16,923	2.0%
10	중국	태국	51,780	2.0%	37,212	2.2%	14,568	1.8%
11	태국	중국	51,231	2.0%	30,418	1.8%	20,813	2.5%
12	베트남	중국	48,871	1.9%	38,291	2.2%	10,580	1.3%
13	중국	인도네시아	48,645	1.9%	29,249	1.7%	19,396	2.3%
14	말레이시아	중국	48,594	1.9%	35,750	2.1%	12,844	1.6%
15	호주	일본	46,809	1.8%	41,499	2.4%	5,310	0.6%
16	한국	일본	45,398	1.8%	29,932	1.7%	15,466	1.9%
17	인도네시아	중국	40,586	1.6%	33,089	1.9%	7,498	0.9%
18	중국	싱가포르	40,550	1.6%	30,553	1.8%	9,997	1.2%
19	일본	태국	38,811	1.5%	26,928	1.6%	11,883	1.4%
20	일본	싱가포르	34,893	1.4%	27,780	1.6%	7,113	0.9%
21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34,463	1.3%	21,304	1.2%	13,159	1.6%
22	한국	베트남	34,278	1.3%	30,753	1.8%	3,525	0.4%
23	중국	말레이시아	32,285	1.3%	23,173	1.3%	9,112	1.1%
24	태국	일본	29,661	1.2%	16,223	0.9%	13,438	1.6%
25	중국	필리핀	24,360	1.0%	13,720	0.8%	10,640	1.3%
총합계			2,553,345	100.0%	1,727,282	100.0%	826,063	100.0%

자료: OECD (2021). Inter-Country Input-Output Database (2022, 노재연, 안소영)

주1: RCEP 역내 국가 쌍별 총부가가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렬하여, 25위까지 표에 제시

주2: 한국이 포함된 국가 쌍은 음영표시

2) 한국의 부가가치 교역 현황

■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특징

한국의 총부가가치 수출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34.6%), 자동차(11.0%), 화학제품(11.4%), 기계 및 장비기기(8.5%), 1차 금속제품(7.1%) 산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6%로 전세계 중간재 부가가치 교역 비중 58.9%보다 높고, RCEP 회원국간 중간재 부가가치 교역 비중 67.6%보다는 낮다. 최종재 형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자동차(63.9%), 기계 및 장비기기(53.3%), 기타 운송장비(73.4%), 음식료품(67.3%), 의약품(67.1%), 기계수리 및 설치(58.4%) 산업이며, 나머지는 중간재 형태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다. 특히 화학제품(89.3%), 1차 금속제품(97.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84.8%), 금속가공제품(82.1%) 등은 80% 이상이 중간재의 형태로 부가가치가 수출되고 있다.

■ 한국의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수출 비중

한국의 총부가가치 수출을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와 해외 부가가치(Foreign Value Added)로 분해한 결과, 2018년 한국의 총부가가치 수출 중 65.1%가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었으며, 34.9%는 해외 부가가치 수출²¹⁾로 나타났다. 국내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해외수입에 의한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수출로 인해 우리나라 실질 GDP 증가에 기여가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향후 RCEP으로 40%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RVC), 혹은 민감품목의 경우 국내부가가치 창출(Domestic Value, DV) 20% 등 기준 충족을 쉽게 만드는 장점도 있다. 다만,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석유제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해외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높아, 국내 생산 및 가공에 있어 해외 원재료 사용이 많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수출 분해】

금액 단위: 100만 달러

순위	산업명	총부가가치수출	국내 부가가치 수출		해외 부가가치 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05,664	149,950	72.9%	55,714	27.1%
2	자동차	65,390	45,047	68.9%	20,343	31.1%
3	화학제품	67,841	40,106	59.1%	27,735	40.9%
4	기타 기계 및 장비기기	50,406	35,861	71.1%	14,545	28.9%
5	1차 금속제품	42,273	24,706	58.4%	17,567	41.6%
6	전기장비	26,196	18,265	69.7%	7,931	30.3%
7	기타 운송장비	22,464	15,376	68.4%	7,088	31.6%
8	석유제품	52,903	13,545	25.6%	39,358	74.4%
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5,811	10,969	69.4%	4,842	30.6%
10	금속가공제품	11,617	8,588	73.9%	3,029	26.1%
11	섬유 및 가죽제품	10,750	7,242	67.4%	3,509	32.6%
12	음식료품	7,287	5,527	75.8%	1,760	24.2%
13	비금속 광물 제품	3,993	2,959	74.1%	1,034	25.9%
14	종이 및 인쇄	3,597	2,774	77.1%	823	22.9%
15	의약품	3,277	2,572	78.5%	705	21.5%
16	기계 수리 및 설치	3,046	2,241	73.6%	805	26.4%
17	농림품	803	676	84.2%	127	15.8%
18	수산물	283	214	75.7%	69	24.3%
19	목재 및 목제품	178	128	71.6%	51	28.4%
20	비에너지 광산물	138	113	81.7%	25	18.3%

21) 총수출 중 해외에서 기여한 부분

21	에너지 광산품	9	8	88.0%	1	12.0%
	총합계	593,928	386,866	65.1%	207,062	34.9%

자료: OECD (2021). Inter-Country Input-Output Database (2022, 노재연, 안소영)

주1: 산업은 ISIC Rev.4에 따라 총 45개로 분류하였고, 표에는 제조업 21개만 제시

주2: 상대적으로 해외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 음영표시

■ RCEP 발효가 한국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해외 중간재 수입 중 RCEP 비중이 높을수록, 누적원산지 측면 등에서 RCEP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부가가치 수출 중 RCEP 회원국의 비중이 높을수록 RCEP 회원국의 수출 성장으로 인한 국내부가가치 창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컴퓨터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1차 금속산업, 전기장비 산업, 석유제품 산업, 고무 플라스틱 산업, 금속가공 산업, 섬유산업을 RCEP 활용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산업으로 꼽을 수 있다.

중간재 부가가치 수입 측면에서 석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RCEP 역내에서 조달하는 중간재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유제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독일, 인도, 대만 등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간재 부가가치 수입은 GVC상 후방연계 효과로서 해당 중간재가 투입된 한국 제품이 국내외에서 소비될 경우 해당 국가들의 부가가치도 그 만큼 창출될 것이다.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측면에서도 자동차 산업 및 고무 플라스틱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국내 부가가치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기타 FTA 국가로의 수출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고무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도 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미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 기타 FTA 국가로의 수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경우 최종 수출국가가 RCEP이 아닌 만큼, RCEP을 활용할 유인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낮을 수 있다.

【한국의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수출 분해】

구분	중간재 부가가치 수입(후방연계)			국내부가가치 수출(전방연계)		
	RCEP	기타FTA국	비체약국	RCEP	기타FTA국	비체약국
컴퓨터/ 전자 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534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1,499억불 수출		
	60.1%	25.1%	14.8%	65.8%	16.8%	17.4%
자동차 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223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450억불 수출		
	49.3%	43.0%	7.6%	15.4%	59.3%	25.3%
화학 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340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401억불 수출		
	35.6%	29.6%	34.8%	60.5%	21.2%	18.3%
1차 금속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321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247억불 수출		
	50.4%	29.3%	20.3%	52.2%	31.1%	16.7%

전기장비 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135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182억불 수출		
	58.1%	31.5%	10.4%	47.3%	34.9%	17.7%
석유제품 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847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135억불 수출		
	12.5%	10.9%	76.6%	72.9%	14.0%	13.1%
고무·플라스틱 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106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109억불 수출		
	55.2%	34.9%	9.9%	40.6%	40.7%	18.7%
금속가공 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97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85억불 수출		
	57.3%	31.4%	11.3%	53.7%	26.8%	19.5%
섬유산업	중간재 부가가치 약 105억불 수입			국내 부가가치 약 72억불 수출		
	65.7%	26.0%	8.2%	63.3%	21.1%	13.7%

자료: OECD (2021). Inter-Country Input-Output Database (2022, 노재연, 안소영)

3) RCEP 발효가 GVC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RCEP의 발효로 향후 RCEP 회원국들은 역내 제조업 분업 구조를 강화하여 중간재 이동도 그 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RCEP으로 인한 관세 혜택과 완화된 무역장벽이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원부자재 공급처 및 생산 설비 투자 등의 국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RCEP 역내 부가가치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RCEP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4조 9,000억 위원(약 5,861억불)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43,600개의 RCEP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었고, 5개월 연속 발급 금액 기준 1위 수출국은 일본이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RCEP의 발효로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RCEP을 전자상거래의 초국경 물류 발전의 호기로 보고 있으며, 그 대상국으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중국의 GVC 영향력 확대 여부는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RCEP 역내 부가가치 교역은 중국, 베트남, 일본 위주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RCEP 회원국들의 생산 설비, 유통, 소비 구조가 RCEP 역내로 재편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의 GVC 편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RCEP 역내 가치사슬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수출 증진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RCEP 15개 회원국 관련 협정 체결 현황

	RCEP 발효일*	회원국	RCEP	AP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호주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비 아 세 안 (5)	2022.1.4.	중국	■	■				■		
		일본	■							
		호주	■				■			
		뉴질랜드	■						■	
	2022.2.1.	한국	■	■		■	■	■	■	■
아 세 안 (10)	2022.1.1.	브루나이	■			■				
		캄보디아	■			■				
		라오스	■	■		■				
		싱가포르	■		■	■				
		태국	■			■				
		베트남	■			■				■
	2022.3.18.	말레이시아	■			■				
	비준 (2022.8.31.)	인도네시아	■			■				
	미정	미얀마	■			■				
		필리핀	■			■				

* 2021년 12월 기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Mega FTA 활용법

1. 국가별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34
-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 기존 FTA와 차별점	
2.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침	41
3. RCEP 활용전략	51
- 다국누적 활용전략	
-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전략	
- 관세차별 활용전략	
- 연결원산지증명 활용전략	
4. 원산지검증 유의사항	78



PART 2

Mega FTA 활용법

1. 국가별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인 최초 규정 및 일반정의는 자유무역지대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의 수립, 여러 장(chapter)에 걸쳐 등장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협정의 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얼마나 / 언제 관세가 낮아질까?

→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3.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제2장인 상품무역 내국민 대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상품의 일시 반입 면세 등 상품 시장 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이행을 위한 연도별 관세율은 부속서 1 (관세 양허표)에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1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RCEP 발효 이후 얼마나, 그리고 언제 관세가 낮아질까에 대한 답을 주는 문서이다.

제3장인 원산지 규정은 RCEP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또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준다. 이 장에서는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기

준과 더불어 부속서 3-가에 HS Code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 원산지증명서 관련 절차에 대하여 부속서 3-나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 최소정보 요건을 담았다.

그 외 RCEP의 각 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정의

- 자유무역지대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의수립, 여러 장(chapter)에 걸쳐 등장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 협정의 목적 등 규정

▪ 제2장 상품 무역

- 내국민 대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상품의 일시 반입 면세 등 상품 시장 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이행을 위한 연도별 관세율은 부속서 1 (관세 양허표)에 규정

▪ 제3장 원산지 규정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기준과 부속서 3-가에 HS Code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규정
-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 원산지증명서 관련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속서 3-나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 최소정보 요건 기재

▪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일관성 및 투명성, 사전심사, 상품의 반출, 특송화물, 재심사 및 불복청구 등을 규정

▪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WTO SPS 협정을 근간으로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당사자들의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협력, 협의 강화 등을 규정

▪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아세안-인도 등 기체결 FTA TBT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규범 마련

▪ 제7장 무역구제

- RCEP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RCEP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제8장 서비스 무역

- 제8장 분문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주요 의무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투명성 제고, 자격상호 인정, 지불 및 송금, 국내규제 등을 규율

▪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 당사자 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민·구직행위 등은 불포함

- **제10장 투자**
 - 투자규범 조항(제10.3조~제10.1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제11장 지식재산**
 -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산 전반에 걸쳐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이상의 보호 규범을 마련
- **제12장 전자상거래**
 -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적 무역 행정문서를 수용하고, 전자인증·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
- **제13장 경쟁**
 - 경쟁 촉진,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경쟁 관련 법 규정의 기본원칙,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협력, 정보교환 및 비밀 유지 등을 규정
- **제14장 중소기업**
 - 중소기업 챕터의 목적(제1조)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보 공유(제2조) 및 협력(제3조)에 대한 세부 조항 상세 명시
-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 경제 및 기술협력을 정의하고(제1조), 경제 및 기술 협력 목적(제2조), 적용범위(제3조) 및 자원(제4조)에 관련한 세부 조항 상세 명시
- **제16장 정부조달**
 - ①정부조달 관련 법·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②당사자간 정보 공유·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③향후 정부조달 촉진을 목적으로 동 챕터를 검토할 것을 규정
-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 지리적 적용 범위, 정보 제공, 비밀 유지 등 협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 및 예외에 관해 규정
- **제18장 제도 규정**
 - 협정의 운영, 이행의 점검 및 감독을 위한 위원회 및 그 부속기구의 설치 및 운영, 의사결정 규칙 등을 규정
- **제19장 분쟁해결**
 - 협정의 해석 및 적용, 협정 의무의 불이행 등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
- **제20장 최종 규정**
 - 협정의 발효, 개정, 다른 협정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

■ 기존 FTA와 차별점

우리나라는 기존의 RCEP 참여국과 총 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기존에 체결한 이 FTA들과 비교해 볼 때 RCEP의 원산지 규정이 갖는 특징으로 단일 원산지결정기준, 자율 발급 확대 및 다국누적적용 등을 꼽을 수 있다.

① 단일 원산지결정기준

기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마다 상이하게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했으며, 이는 동일물품임에도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제 RCEP이 발효되어 단일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역내 회원국 간 무역의 효율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편의성이 제고된다.

기체결한 FTA 협정과 RCEP 협정세율이 동일한 경우, 기업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유리한 협정을 골라 활용할 수 있다. 특정품목이 기체결한 FTA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RCEP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역내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RCEP 협정문 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HS Code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정의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RVC 40)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CTC)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CTC)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CTC)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완전생산기준(WO)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말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 규정이 완전생산기준(WO)인 경우, 그 상품은 제3.2조(원산지 상품) 나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됨으로써,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을 여전히 충족할 수 있음.
화학반응(CR)	화학반응이 당사자에서 발생한 경우, 그 화학반응의 산물인 모든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화학반응”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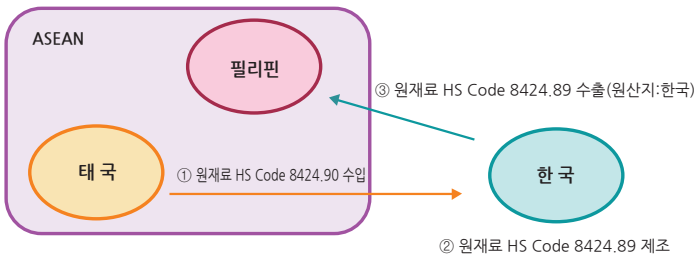
②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가능성

아세안·싱가포르·중국·베트남과의 FTA 협정 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으로 국가 관세 당국의 심사를 거친 후 발급이 가능했다. 한편 뉴질랜드·호주와의 FTA 협정 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은 자율발급으로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었다(다만, 한-호주 FTA의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하여 기관발급 대상임). RCEP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 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③ 누적기준 중 다국 누적 가능성

원산지 누적 조항이란, 당해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 투입요소를 자국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체약 상대국의 원재료도 자국산으로 인정하므로 원산지 영역 확대 및 역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누적조항 사례】



현재 한-아세안 FTA에 한하여 다국누적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RCEP 체결 시 체결국가인 아세안국(10개국)과 非아세안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간 누적조항으로 포괄적인 누적조항 적용을 통한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활용하기

1) 개요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인증수출자 취득 관련 관세청 지원 내용은 [IV. RCEP 협정 활용 TIP]에서 상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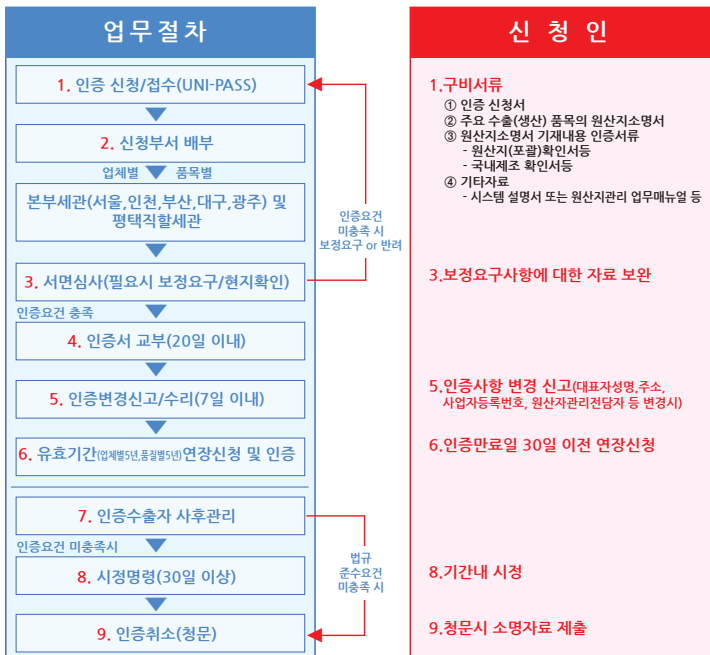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구분됨.

구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CODE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 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CODE 6단위 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2)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품목(HS 6단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혜택범위	전체 협정, 전체 품목	인증 심사 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3) 인증 절차



■ 기존 FTA협정과 RCEP 비교 분석

구분		RCEP	아세안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발급주체	기관 (관세당국) 자율 (수출자/생산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싱가포르 (관세당국) 한국 (세관/상의 등)	중국 (해관/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 (세관/상의)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생산자	자율 (수출자/생산자) 호주 (상의, 산업협회)
	유효기간	1년	1년				2년	
	제출면제 한도	200달러 이하	FOB 2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700달러 이하	FOB 6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역외가공허용		협의중	O, 개성공단			O		
누적기준	재료누적	O	O					
	공정누적	X	X	O	X		O	
미소기준	일반품목	FOB 10% 이하	FOB 10% 이하	관세가격 10% 이하	FOB 10% 이하			조정가치 10% 이하
중간재	인정여부	O	X	O				
	대상물품	역내생산물	X	자가생산물	역내생산물			
	지정의무	X	X	O	X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세번변경 기준	원산지판정 시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판정 시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별 구분 계상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별 구분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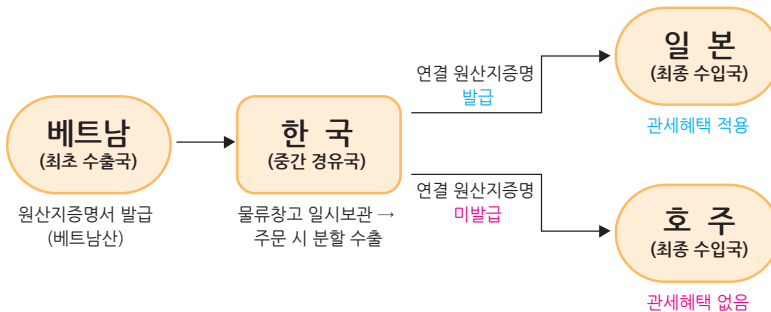
2.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침

관세청은 RCEP 국내 이행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 지침」을 시행(2022. 2. 1.)하였다. 또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및 표준화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시행(2022. 5. 18.)하였다.

- 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⁰¹⁾
 - ②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 ③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 * 실무자 활용 가이드는 부록1 RCEP 활용 실무절차 참고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 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국내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을 통해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예시】



출처 : '22년도 계간 관세사 여름호

01) 관세청 FTA포털 참고(<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표준 권고서식은 우리 기업들의 RCEP 자율증명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마련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해당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2022. 8. 31.)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1)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하거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⁰²⁾

■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⁰³⁾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이하 “원본 원산지증명”)의 작성·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이 작성·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 시행령 제4조제5항이 또는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될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하 “대상물품”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다. 이

02)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2022. 5. 18. 제정

03) 이 지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각각 “RCEP”, “한-아세안 FTA”,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지칭함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되거나,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없다.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수도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여야 한다.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시)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A, B에게 양도하는 경우 A, B는 각각 자신이 양수받은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하나의 세관(상의)에 발급 신청 또는 인증수출자로서 자율 발급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⁰⁴⁾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는 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야 한다.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한 자,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수도한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RCEP 제3.24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다.

■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형태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본 원산지증명의 형태>

▷ (서면본) 다음 중 하나의 것

- ① 아래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②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을 인쇄한 것
-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을 인쇄한 것

▷ (전자본) 다음 중 하나의 것

- ①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
-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04) 최종 수입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의 부록 적용 물품이거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PE)되어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차별을 적용받는 물품

- ②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05) 및 제2호06)의 제출서류.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계약상 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같음
- ③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 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계약상 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 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 ※ 다만, 2) 서류의 수출관리 부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가) [72번]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나) [78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단, 중계무역 수출 제외)

다) [79번] 중계무역수출

라) [93번]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④ 이 지침 1.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품의 국내 양·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이 지침 1.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CEP 원산지국가 입증서류07)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관세청, 2021.6.29.)에 따른 자동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물품의 RCEP 제3.19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되,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08)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제반 절차는 시행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따른다.

05)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각 목의 서류

06)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07) 최초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작성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송품장 사본 등

08) 품명, 규격, 수량, 중량, HS 품목번호 등

■ [자율증명] 연결 원산지신고서 작성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②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 6단 위 기준)으로 한정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지침 2. 가.에 규정한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연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에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른다.

■ 시행일자

이 지침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시행규칙 제10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⁰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다.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다.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다.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09)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2022. 5. 18. 제정

참고: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 및 작성 방법

Declaration of Origin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Unique reference number:						
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2. Authorization code		
3. Produc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if known)				4.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5. Item number	6.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7.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8. Origin Conferring Criterion	9. RCEP Country of Origin	10.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1.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2. Remarks						
13. Declar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Declaration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Date of Declaration: _____ Name of Signatory: _____ Signature: _____						
14.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input type="checkbox"/> Third-party invoicing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의 권고 서식이며,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인쇄될 필요가 없습니다.

1. 모든 상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Unique reference number”란에는 이 신고서의 작성자에 의해 부여된 임의의 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 번호, 상업송장의 일련 번호 등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생산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NOT AVAILABLE”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제5란에는 각 상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8. 제6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협정 제3장 제3.2(가)조를 충족하는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장 제3.2(나)조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다)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화학반응	CTC RVC CR
(라) 협정 제3장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	ACU
(마) 협정 제3장 제3.7조를 충족하는 상품	DMI

- 1)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다)를 사용한 경우 상기 표의 기재 문구를 대신하여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실제로 사용된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시: CTH, RVC 48% 등)
- 2)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나) 또는 (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기재문구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시: CTC, DMI)

11. 제9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 국가를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다만,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고 세율 국가 명 다음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협정 제2.6조제6항가호가 적용된 경우 “**”를, 제2.6조제6항나호가 적용된 경우에는 “***”를 기재합니다.

(예) Australia* 또는 Indonesia**

상황	제9란 RCEP 원산지 국가에 기입
(가)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하지 않음 (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으나,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하지 않음	협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명 기재
아래를 포함한 기타 모든 경우, (다)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며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함 (라) 상품이 협정 제3.2(가)조에 따라 완전획득 또는 생산됨 (마)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다)조에 의한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 (바)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고,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함	수출 당사국명 기재

12. 제10란에는 총중량 등 상품의 수량과 함께 제8란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적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을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다수의 송장이 사용된 경우, 각 물품 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14. 제12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습니다. 다만, 제14란에 "√" 표시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세정보를 이 난에 기재합니다.
15. 제13란에는 이 서식의 작성자가 수입 국가명, 작성 일자, 작성자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합니다.
16. 제14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 가. 협정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란에 "√" 표시 합니다. 이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로 한정)를 제12란에 적습니다.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Third-part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제12란에 적습니다.

3)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¹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RCEP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대상국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인 경우에만 전자본 발급이 가능하다.¹¹⁾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회 출력 원칙)

■ 유의사항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의 유효성 인정은 전적으로 수입국 국내 규정에 따르므로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행일자

2022년 9월 1일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한다.

10)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2022. 8. 31. 시행

11)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3. RCEP 활용 전략

RCEP 참여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메가 FTA가 발효되었으며, RCEP 활용을 통한 수출 증진이 예상된다. 세부적인 RCEP 활용 전략을 소개하기 이전에 간략한 RCEP 활용 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원산지규정 및 이행절차 통합 효과

먼저 RCEP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 협정에서 상이한 원산지규정 및 이행절차가 하나의 협정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협정별로 원산지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원산지증명방식, 원산지검증 등이 상이하여 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로 작용한다. RCEP은 개별 협정들의 상이한 원산지규정 및 이행절차가 통합된 단일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1국 복수 협정 활용환경】

주요 RCEP 참여국	활용 가능 협정		
중 국	한-중 FTA	RCEP	APTA
베 트 남	한-아세안 FTA	RCEP	한-베트남 FTA
호 주	한-호주 FTA	RCEP	
뉴 질 랜 드	한-뉴질랜드 FTA	RCEP	
인 도 네 시 아	한-아세안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미발효)
캄 보 디 아	한-아세안 FTA	RCEP	한-캄보디아 FTA(미발효)
필 리 핀	한-아세안 FTA	RCEP	한-필리핀 FTA(미 발효)
일 본	RCEP		

자료 : 저자작성

■ 원산지재료 조달 가능 범위 확대

역내 영역이 15개국으로 확장되었다. 역내 영역 확장은 원산지재료 조달 가능 국가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누적기준을 활용하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진다.

■ 인증수출자 자율원산지증명방식 도입

인증수출자 자율원산지증명방식이 도입되어 기관발급에 비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발급할 수 있다.

■ 추가 자유화 품목

추가 자유화 품목이 생긴다. 현재 하나의 국가에 복수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RCEP 발효로 추가 양허 품목이 발생한다.

【추가 양허품목 예시(베트남)】

상대국 HS	MFN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비고
		2022년	2022년	2022년	
8502.11.00	15	24	15	13.5	RCEP 유리(추가 양허 품목)
8502.12.10	10	0	0	0	세율 동일 하나, RCEP 활용 유리 (활용 이점 다수 존재)
8502.20.20	10	0	0	9.3	RCEP 불리

자료 :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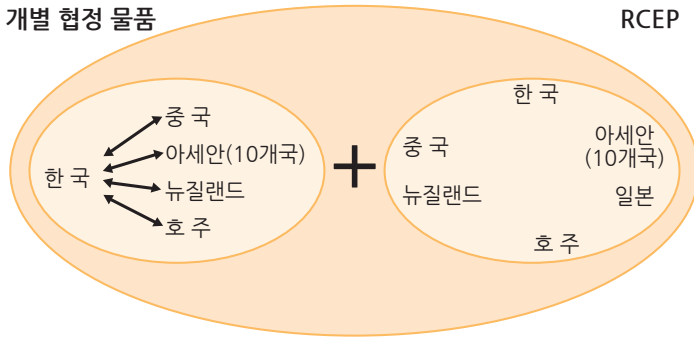
끝으로 RCEP 활용 전략은 RCEP 원산지규정 및 이행절차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에 착안하여 작성되었으며, 세부 사례로 작성된 품목뿐 아니라 유사한 산업 및 품목군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다국누적 활용 전략

선정 개요: RCEP은 역내영역이 15개국으로 원산지재료 조달 용이성이 증가하여, RCEP 참여국과의 상호 무역 증가가 기대된다. RCEP 참여국과는 중간재 및 원부자재 무역이 많아, 다국누적을 활용하면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RCEP 다국누적의 개념

기본적으로 RCEP 참여 15개국은 원재료에 대해 다국 누적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RCEP 참여국간 맺어진 개별 협정 적용 물품도 RCEP 활용 시 누적을 적용받을 수 있다.



■ RCEP 다국누적 사례 작성 품목의 특징

제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의 특징은 완성품과 부속품이 동일 호에 분류되어 HS 코드 4단위가 동일하다. 이에 역외산 부분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할 때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제8708호 품목분류 체계】

HS 코드				품명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	10	0	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	21	0	0	안전벨트
8708	22	0	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8708	29	0	0	기타
8708	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	30	10	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708	30	20	0	브레이크 부스터
8708	30	30	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708	30	90	0	기타
8708	40	0	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708	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8708	50	10	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8708	50	20	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Mega FTA 활용법

8708	70	0	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8708	80	0	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708	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	91	0	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708	92	0	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8708	93	0	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	94	0	0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708	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	95	10	0	에어백
8708	95	90	0	기타

자료 : HSK 2022 전문

■ RCEP 다국누적 기본형 사례

한국에서 클러치를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영국·중국·일본·미국산 원재로는 역외산으로 취급되며, 이로 인해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PSR(CTH or RVC 40)을 충족하지 못한다.

- 세번변경기준 : 역외산 원재료(영국, 중국, 일본, 미국) 중 연번 2·3·4·6·8번 원재료의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CTH를 충족할 수 없음
- 부가가치기준 : 연번 1·2·3·4·5·6·8번 원재료는 역외산으로 취급되므로, 공제법을 사용시 $(413-355)/413=14.0\%$ 으로 RVC 40 충족할 수 없음

반면 RCEP을 활용하면, 영국·미국산 원재료만 역외산으로 취급되며, 일본 및 중국산 원재료는 RCEP 누적이준을 적용받아 RCEP PSR(CTH or RVC 40)을 충족한다.

- 세번변경기준 : 역외산(영국, 미국) 연번 1·5번 원재료의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CTH 충족
- 부가가치기준 : 연번 1·5번 원재료만 역외산 원재료로 취급되므로, 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 산출 시 $(413-85)/413=79.4\%$ 으로 RVC 40 충족

【클러치 BOM(RCEP 다국누적 기본형 사례)】

비고	수출물품 : 클러치(HS 8708.93)					
	거래관계 : 한국에서 클러치를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PSR	한-중 FTA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RCEP	
	RVC 50	CTH or RVC 40			CTH or RVC 40	
클러치 BOM						
연번	품명	HS 코드	가격(\$)	원산지	적용협정	입증서류
1	플라이 휠	HS 8483.50	65	영 국	한-영 FTA	한-영 C/O
2	클러치 디스크	HS 8708.93	75	중 국	RCEP	RCEP C/O
3	압력판	HS 8708.93	70	일 본	RCEP	
4	클러치 하우징	HS 8708.93	100	일 본	RCEP	
5	클러치 스프링	HS 7320	20	미 국	한-미 FTA	한-미 C/O
6	클러치 페달	HS 8708.93	15	일 본	RCEP	RCEP C/O
7	리리스 레버	HS 8708.93	20	베트남	RCEP	
8	클러치 케이블	HS 8708.93	10	중 국	RCEP	
경비			3			
노무비			20			
이윤			15			
FOB			413			

자료 : 관세청(200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참고하여 BOM 구성

■ RCEP 다국누적 확장형 사례

현재 「RCEP 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참여국간 체결한 개별 협정 적용물품도 RCEP 활용 시 누적 기준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별 협정 적용 원재료도 RCEP 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개별 협정 적용물품 누적조건은 RCEP과 개별 협정 PSR이 동일하거나, RCEP이 개별협정 PSR에 비해 완화된 품목은 RCEP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RCEP PSR이 개별협정에 비해 엄격한 물품은 다국누적을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과 개별 협정이 발효되어 있어(일본 제외), RCEP 다국누적을 확장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개별 협정 적용물품 RCEP 누적이의 개념】

구분(RCEP 기준)	RCEP PSR	개별 협정 PSR	개별 협정 누적 가능 여부
PSR 동일	CC	CC	누적 적용 가능
	CTH	CTH	
	CTSH	CTSH	
	RVC 40	RVC 40	

Mega FTA 활용법

PSR RCEP 완화	CC	WO	누적 적용 가능
	CTH	CC	
	CTSH	CTH	
	RVC 40	RVC 45	
PSR RCEP 엄격 (총족 확인 곤란 또는 불충족)	CC, RVC	CTH, CTSH	누적 적용 어려움
	CTH, RVC	CTSH	
	WO, RVC	CC, CTH, RVC	

개별 협정과 RCEP의 PSR 비교를 통해 누적 적합도를 평가해 보면, 기계 및 운송장비 부품 세번(367개)중, RCEP PSR이 개별 협정 PSR과 동일하거나 완화된 품목은 334개(91.0%)로 확인되어, RCEP 누적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 및 운송장비 부품 품목수	개별 협정 누적 가능 품목	개별협정 누적이 어려운 품목
367개	334개	33개

자료 : 저자작성

주 : 367개 품목은 BEC 코드 기계 및 운송장비 부분품 추출(HS 2012 6단위 품목수)(제40류, 제84류, 제85류, 제87류의 기계 및 운송장비 부분품)

예를 들어, 가솔린 엔진(HS 8407.31 등) 및 엔진부품(HS 8408.90 등)의 경우 RCEP과 개별협정의 PSR이 동일하므로(CTH or RVC 40) RCEP 확장형 다국누적 적용이 가능하다. HS 8507.10 축전지는 RCEP PSR이 일부 개별 협정보다 엄격하여 다국누적 적용이 어려우며, 그 이외 축전지는 개별 협정 적용 물품도 누적이 가능하다.

【개별 협정 적용품목의 RCEP 누적 적합도 평가 예시(개별 협정 누적이 가능한 사례)】

구분	HS	6단위 품명	PSR						RCEP 엄격성	누적 가능여 부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호주	한-뉴질랜드	RCEP		
엔진	8407.31	실린더용량이 50cc 이하인 것	CTH or RVC 40	RVC 40	CTH or RVC 40	CTH or RVC 40	CTH or RVC (40/30)	CTH or RVC 40	동일	가능
	8407.32	실린더용량이 50cc를 초과하고 250cc 이하인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cc를 초과하고 1,000cc 이하인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것								
엔진부 부품	8408.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TH or RVC 40	RVC 40	CTH or RVC 40	CTH or RVC 40	CTH or RVC (40/30)	CTH or RVC 40	동일	가능
	8408.99	기타								

축전지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축전지	CTH or RVC 40	CTSH	CTSH or RVC 40	CTSH or RVC 40	CTSH or RVC (40/30)	CTH or RVC 40	일부 협정 누적 불가	가능 (일부 누적 어려움)
	8507.20	그 밖의 연산(鉛酸) 축전지		CTSH	CTSH or RVC 40	CTSH or RVC 40	CTSH or RVC (40/30)	CTSH or RVC 40	동일, 완화	누적 가능
	8507.30	니켈-카드뮴 축전지								
	8507.40	니켈-철 축전지								
	8507.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8507.80	그 밖의 축전지								

자료 : 저자작성

반면 아래의 표에 나열된 품목들은 RCEP의 PSR이 CC or RVC 40이며, 기체결 협정 PSR은 CTH or RVC 40으로 기존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은 품목은 RCEP 누적이 가능하지 않다.

【개별 협정 적용품목의 RCEP 누적 적합도 평가 예시(개별 협정 누적이 어려운 사례)】

HS	6단위 품명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호주	한-뉴질랜드	RCEP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디젤 엔진)	CTH or RVC 40	RVC 40	CTH or RVC 40	CTH or RVC 40	CTH or RVC(40/30)	CC or RVC 40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 [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8714.91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714.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8714.93	허브(hub)[코스터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휠(sprocket-wheel)						

Mega FTA 활용법

8714.94	브레이크[코스터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CTH or RVC 40	RVC 40	CTH or RVC 40	CTH or RVC 40	CTH or RVC(40/30)	CC or RVC 40
8714.95	안장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 (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8714.99	기타						

자료 : 저자작성

앞에서 설명된 RCEP 다국누적 확장형 개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연번 2·7·8 원재료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등 개별협정을 적용받은 원재료이나 RCEP과 PSR이 동일하여 누적 가능하며, 최종물품(클러치)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CTH or RVC 40) 충족한다.

- 세번변경기준 : 역외산(영국, 미국) 연번 1·5번 원재료의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CTH 충족
- 부가가치기준 : 연번 1·5번 원재료만 역외산 원재료로 취급되므로, 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 가치 산출시 $(413-85)/413=79.4\%$ 로 RVC 40 충족

【클러치 BOM(RCEP 다국누적 확장형 사례)】

비고	수출물품 : 클러치(HS 8708.93)					
	거래관계 : 한국에서 클러치를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PSR	한-중 FTA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RCEP		
	RVC 50	CTH or RVC 40		CTH or RVC 40		
클러치 BOM						
연번	품명	HS 코드	가격(\$)	원산지	적용협정	입증서류
1	플라이 휠	HS 8483.50	65	영 국	한-영 FTA	한-영 C/O
2	클러치 디스크	HS 8708.93	75	태 국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C/O
3	압력판	HS 8708.93	70	일 본	RCEP	RCEP C/O
4	클러치 하우징	HS 8708.93	100	일 본	RCEP	RCEP C/O
5	클러치 스프링	HS 7320	20	미 국	한-미 FTA	한-미 C/O
6	클러치 페달	HS 8708.93	15	일 본	RCEP	RCEP C/O
7	리리스 레버	HS 8708.93	20	베트남	한-베트남 FTA	한-베트남 C/O
8	클러치 케이블	HS 8708.93	10	태 국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C/O
경비			3			

노무비		20			
이윤		15			
FOB		413			

자료 : 관세청(200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참고하여 BOM 구성

■ RCEP 다국누적 시사점

RCEP은 원산지조달 국가가 15개국으로 확장되어 개별 협정 적용보다 원재료 조달 가능한 역내 영역이 넓고, RCEP 참여국간 맺은 개별 협정 적용 물품도 누적을 허용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진다.

【협정별 원재료 조달 가능 영역】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호주	RCEP
총 11개국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양 당사국(2개국)	총 15개국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

RCEP 다국누적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원재료” 및 “부가가치기준 활용” 산업에서의 활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계·전자·운송장비 등의 산업에 다국누적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산업은 투입 부품의 수가 방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¹²⁾, 주요 역내 산 원재료의(한국 or RCEP 참여국) 부가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RCEP 다국누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완화된 PSR 활용전략

선정 개요: 역외산 주요 원재료 사용이 많은 산업은 기발효 FTA 협정에서 PSR의 엄격성으로 인해 특혜관세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RCEP에서는 PSR이 완화된 산업 및 품목에서 RCEP 활용 유인점이 발생한다.

■ 원산지결정기준 개념

RCEP 협정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완전생산물품(WO),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PE)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었으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PSR)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RCEP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계결된 FTA와 유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역내 공급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 결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12) 기계, 전자 등의 산업은 투입 부품의 수가 몇 백개 ~ 몇 만개로 모든 원재료의 HS 코드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직물 제품의 경우 기존 FTA에서는 체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다소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었으나, RCEP의 경우 원사에 대해 Yarn Forward Rule¹³⁾ 적용되거나 재단, 봉제 등의 국내 수행 의무가 사라져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결정기준 완화 예시】

업종별	HS CODE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화학제품	제28류, 제29류	·대부분의 품목이 '세번변경기준 (4단위 또는 6단위)'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RVC 40%)'중 선택 ·일부 품목의 경우,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 공정기준 적용
섬유 및 의류	제11부	·대부분의 품목이 '세번변경기준 (2단위 또는 4단위)'을 적용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던 의류의 특수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등의 국내 수행) 규정을 삭제
철강	제72류(제15부)	·대부분의 품목이 '세번변경기준 (2단위 또는 4단위)'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RVC 40%)'중 선택
자동차	제17부	·완성차의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RVC 40%)'으로서 한-아세안 FTA (RVC 45%) 대비 완화된 기준을 사용 ·부분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4단위)'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RVC 40%)'중 선택
기계, 전기·전자	제16부	·대부분의 품목이 '세번변경기준 (4단위)'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RVC 40%)'중 선택 ·세탁기, 냉장고 등 일부 품목은 '세번변경기준 (6단위)'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RVC 40%)'중 선택
농축수산물	제1부, 제2부	·대부분의 품목이 '완전생산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4단위)' ·수산물(제03류), 낙농품(제04류), 화초류(제06류) 중 일부품목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RVC 40%)'중 선택
가공식품류	제4부	·대부분의 품목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사례 1. 코코아 분말(HS 1806.10)

코코아 조제품은 코코아두를 순차적으로 가공하여 생산한다. 코코아두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등이 주산지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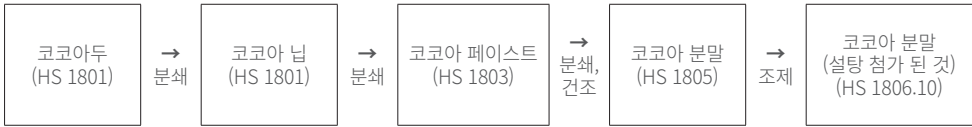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코코아두를 1차 가공한, 코코아 분말(HS 1805), 페이스트(HS 1803), 코코아 버터(HS 1804)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코코아 관련 조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HS 1806.10(코코아 분말, 설탕을 첨가한 것)은 외국산 코코아 분말(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 HS 1805)을 수입하여 설탕 등으로 조제한 후 생산한다.

13) 원사 생산에서부터 섬유 원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FTA 체약국 내에서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칙

14) FAO Better Farming Series(1977)

【코코아 관련 제품 가공 순서】



자료 : 김의기(2014). 한-EU FTA 원산지규정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

기존 한-중 FTA의 경우 PSR이 CC or RVC 40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외산 제18류를 사용하여 생산하면 CC를 충족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반면 RCEP에서는 CTH or RVC 40으로 PSR이 규정되어 있어 CTH를 활용하여도 원산지가 충족된다.

【코코아 분말(HS 1806.10) PSR】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호주	한-뉴질랜드	RCEP
CC or RVC 50	CTH or RVC 40	CTH or RVC 40	CTH	CTH	CTH or RVC 40

■ 사례 2. 제84류(기계) 및 제85류(전자)

기계 및 전자제품도 RCEP에서는 PSR이 완화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한다. 제84류 및 제85류 총 771개 품목 중 한-아세안 FTA에서 PSR이 CTH or RVC 40으로 설정된 품목이 731개로 절대적 수치를 차지한다.

【제84류 및 제85류 PSR 형태】

총 품목수	RCEP			한-아세안 FTA			한-중 FTA		
	CTH or RVC 40	CTSH or RVC 40	기타	CTH or RVC 40	CTSH or RVC 40	기타	CTH or RVC 40	CTSH or RVC 40	기타
771	363	371	37	731	28	12	334	316	121

자료 : 저자작성, 주) HS 2012 6단위 수

반면 RCEP에서 CTSH or RVC 40을 적용받는 품목은 371개이며, 이중 한-아세안 FTA에서 CTH or RVC 40을 적용받는 품목이 343개로, 이는 RCEP에서 PSR이 한-아세안 FTA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84류 및 제85류 PSR 형태】

총 품목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CTH or RVC 40	CTSH or RVC 40	기타	CTH or RVC 40	CTSH or RVC 40	기타
371	343	19	9	48	31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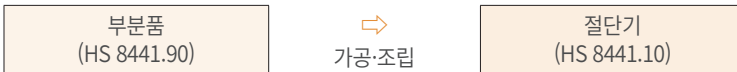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주) HS 2012 6단위 수

제84류 및 제85류의 물품의 특징은 동일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품목이 많다는 것이다.

【제8441호의 품목분류 체계】

HS 코드				품명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	10	00	00	절단기
8441	20			종이백 · 봉지 · 봉투 제조용 기계
8441	20	10	00	종이백 · 봉지 제조용 기계
8441	20	20	00	봉투 제조기
8441	30	00	00	카톤(carton)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441	40	00	00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441	80			그 밖의 기계
8441	80	10	00	종이 · 판지의 트리밍기
8441	80	90	00	기타
8441	90	00	00	부분품

한-아세안 FTA는 PSR이 CTH or RVC 40으로 규정되어 역외산 부분품 사용 시 CTH를 충족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판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RCEP은 CTSH를 규정하고 있어, 부품의 수가 적거나 모듈 형태로 조립되는 제품들은 쉽게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원산지도 충족도 가능하다.



【절단기(HS 8441.10) PSR】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	한-뉴질랜드	한-호주	RCEP
CTH or RVC 40	CTH or RVC 40	CTSH	CTSH or RVC 40/30	CTSH or RVC 40	CTSH or RVC 40

■ 사례 3. 작업용 장갑(HS 6116.10)

기발호 FTA 협정에서 제61류 편직물 PSR이 「재단+봉제 공정」이 동반되거나, 「원재료 제한」 규정(역외산 사(絲) 사용 불가)이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RCEP PSR은 「재단+봉제」 및 「원재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다.

【우리측 기협정 P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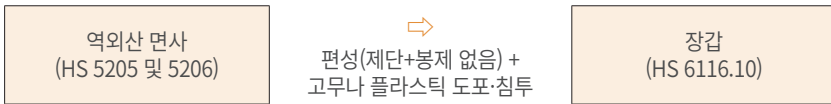
칠레	미국	콜롬비아	EU, 터키, 영국	페루	인도
CC(ex HS 5106~5113, 5204~5212, 5307~5308, 5310~5311, Ch 54, 5508~5516, 6001~6006)+재단 및 봉제	CC(ex HS 5106~5113, 5204~5212, 5307~5308, 5310~5311, Ch.54, 5508~5516, 6001~6006) + 재단 및 봉제	CC (ex HS 5106~5113, 52.04~52.12, 54.01~54.02, 5404, 5407~54.08, 55.08~55.16, 60.01~ 60.06)	방사+편성 or 편성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2조각 이상)	CC(ex HS 5106~5113, 5205~5212, 5306~5311, 5402.11~5402.39, 5402.45~5402.69, 5404.12~5404.90, 5406~5408, 5509~5516, 6001~6006) + 재단 및 봉제	편성(편직) 공정

캐나다	아세안	싱가포르, EFTA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RCEP
CC+재단/봉제/기타 결합공정 역내 수행 or CC+편성 공정	CC+재단 및 봉제 or RVC(40)	CC(ex 제60류) + 재단 및 봉제	CC or RVC 40	CC	CC

자료: 각 협정문 PSR 약어 처리

장갑은 별도의 재단·봉제 없이 편물(Knitting)을 통해 최종제품 형상을 생산하므로, 기발효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봉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역외산 사 사용을 제한(원재료 제한)하는 협정도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렵다.

역외산 면사 사용 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협정은, 역내산사를 생산하는 공정부터 수행하거나, 부가가치기준(베트남, 아세안과의 협정)을 활용해야 하므로 원산지판정의 복잡성 발생한다.



RCEP은 원산지결정기준이 CC로 설정되어 기발효 협정에서 요구하는 「재단+봉제」 또는 「원재료 제한」 규정이 없어 역외산사를 사용하여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 기존 협정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있더라도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인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었으나, 완화된 RCEP PSR 활용을 통해 특혜관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례 4. 설탕(HS 1701.99)

설탕은 사탕무, 사탕수수로부터 생산하는 방식과 원당¹⁵⁾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한 원당을 원재료로 정제 및 결정화 공정을 거쳐 설탕을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원당을(2021년 기준) 주로 호주, 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피지,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5) 사탕무당(HS 1701.12), 사탕수수당(HS 1701.13), 그 밖의 사탕수수당(HS 1701.14)

【HS 1701.14(그 밖의 사탕수수당) 수입 동향】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년 (12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590.5	100	792.5	100
1	호 주	311.6	52.8	450.1	56.8
2	태 국	65.7	11.1	102.6	12.9
3	엘살바도르	39.3	6.7	65.8	8.3
4	과 테 말 라	6.2	1.1	44	5.6
5	니 카 라 과	60	10.2	38.5	4.9
6	코스타리카	38	6.4	29.8	3.8
7	브 라 질	10.13	1.7	29.2	3.7
8	피 지	0	0	17.7	2.2
9	남 아 공	40.85	6.9	11.6	1.5
10	아르헨티나	0.86	0.1	1.1	0.1

자료 : 무역협회 한국 무역통계 재가공

주 : 수입금액 기준 정렬

이에 원산지결정기준이 CC 또는 CTH로 설정된 기존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한-아세안 FTA만 부가가치기준 활용 시 원산지가 충족될 수 있다. RCEP에서는 CC(2단위 세 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면 특혜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협정별 PSR】

품목	한-중	한-아	한-베	한-호	한-뉴	RCEP
설탕 (HS 1701.99)	WO	CTH or RVC 40	CC ex 제12류	CC	CC	CC or RVC 40

■ 완화된 PSR 활용 전략과 시사점

FTA 활용기업은 수출 목적국별로 발효된 개별 협정과 RCEP에서의 PSR 완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기계·전자 등의 산업에서 완화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RCEP을 활용해 수출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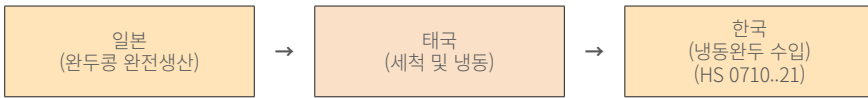
3) 관세차별 품목에 대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 증가 전략

선정 개요: RCEP은 동일 물품에 대하여 RCEP 참여국에 따라 상이한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있으며, 이들 품목을 관세차별 품목이라고 한다. 관세 차별 품목 중 RCEP 참여국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 물품의 협정관세율이 더 유리한 품목이 있어 타 RCEP 참여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

■ 관세차별의 개념

RCEP은 관세차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에서 완전생산된 완두콩을 태국에서 단순공정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태국산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완전생산된 일본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냉동 완두에 대하여 RCEP 참여국에 동일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아세안·호주·중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이 발생하나, 일본산 물품은 관세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RCEP 참여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을 「관세차별품목」이라고 한다.



【RCEP 한국의 양허 (냉동 완두)】

HS	품명	기준세율	RCEP 발효 1년차 세율				
			뉴질랜드	아세안	호주	중국	일본
0710.21	완두콩(냉동)	27.0%	25.2%	25.2%	25.2%	25.2%	미양허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HS 200599.999(일본 HS)의 물품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물품에는 특혜관세 혜택이 있으나, 한국 및 중국 물품에는 특혜관세 혜택이 없다. 이렇게 RCEP 참여국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관세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 RCEP은 관세차별에 따른 원산지결정 조항(제2.6조)을 별도로 규정하여 원산지국을 판정한다.

【RCEP 일본 관세차별 품목 예시】

HS(일본)	기준세율	아세안,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대우(발효 1년차)	중국 및 한국에 대한 대우 (발효 1년차)	비고
200599.999	9.0%	8.4%(발효 16년차부터 0%)	미양허	관세차별품목
620719.000	9.0%	0%	8.4%(발효 16년차부터 0%)	관세차별품목
870321.000	-	0%		공통양허

Mega FTA 활용법

30253.000	3.5%	3.2%	공통양허
-----------	------	------	------

자료 : RCEP 일반양허표 참고하여 저자작성

■ 관세차별에 따른 RCEP 원산지국 결정 방법

RCEP 관세차별로 인한 원산지결정방식은 일반적 「원산지판정」과 다르다. 일반적 원산지판정은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원산지상품이 되었는지 여부를 완전생산, 불완전생산(PSR 충족), 원산지재료생산 등으로 판정한다(제3장 원산지규정). RCEP 원산지결정은 RCEP 원산지규정이 충족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협정문 제2.6조에 따라 RCEP 참여국 15개국 중 1개 원산지국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장 상품무역). 원산지규정이 충족한 원산지상품이라 할지라도, 원산지국은 한국산이 아닌 다른 RCEP 참여국으로 결정될 수 있다.



RCEP 제2.6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관세차별 일반품목」과 「관세차별 민감품목」 등 2가지 품목유형으로 나뉜다. 제2.6조 관세차별 조항은 8개항으로 구성, 이 중 제2·3·4·5항이 중요한 원산지결정 사항이다.

① 관세차별 일반품목

- 제2.6조의 제2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
 - 완전생산시: 완전생산 RCEP 회원국 원산지
 - 불완전생산시: PSR 충족 RCEP 회원국 원산지
 - 원산지재료 생산시: 제5항최소공정 이상 수행국원산지, 최소공정수행시 원산지재료비 최대 기여국

② 관세차별 민감품목(양허표부록 명시 품목)(국가별 100개 내외)

- 제2.6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
 - 제3항: 수출당사국에서 부가가치 20% 발생(다만, 수출당사국 재료가 아닌 다른 당사국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계산)
 - 제4항: 부가가치 20%이상 미발생시 원산지재료비 최대 기여국이 원산지국

사례를 통해 RCEP 원산지결정 방식을 살펴보면,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불완전생산 시 원산지결정은

제2.6조의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며, 불완전생산 시 PSR 충족 RCEP 참여국이 원산지국가로 결정된다.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불완전생산 시 원산지결정 사례】

- 관련 조항 : 제2.6조2항 및 제3.2조

제2.6조

2. 원산지 상품의 RCEP 원산지 국가는 그 상품이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이다.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 타이어 HS 코드 : HS 4011.10
- 한국에서 타이어 생산, 필리핀으로 수출(비원산지재료 사용하여 생산)
- 필리핀 양허: [기준세율 : 10%], [아세안, 호주, 한국, 일본, 뉴질랜드 : 0%], [중국 : 10%]
- RCEP PSR : CTH or RVC 40%
- 수행공정: 원료 배합 및 타이어 성형공정 등을 거쳐 생산
- 불완전 생산시 PSR 충족국을 원산지국으로 결정하므로, 한국에서 생산된 타이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 이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필리핀에서 0%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품 명	HS 코드	원산지	원산지지위	가격
합성고무(SBR)	4002.10	인도네시아	원산지재료	\$5
카본블랙(착색 등)	2803.00	호주	원산지재료	\$6
스테인리스강의 선 (황동 도금)	7223.00	한국	원산지재료	\$7
철강제 코드	7312.10	미국	비원산지재료	\$9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 시 원산지결정은 제2.6조의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며, 제2.6조5항의 최소공정(단순공정)을 넘어서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로 결정한다. 다만 수출 당사국이 제2.6조5항에 최소공정(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 제2.6조4항에 따라 원산지재료 최대기여국을 원산지국으로 결정한다.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원산지재료 생산시 원산지결정 사례】

- 관련 조항 : 제2.6조 2항, 4항, 5항 및 제3.2조

제2.6조 관세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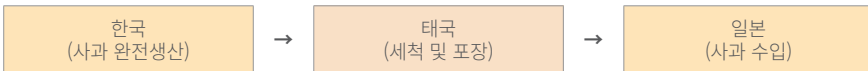
2. 제3.2조(원산지 상품) 나호와 관련하여,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다만,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그 수출 당사자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4. 원산지 상품의 수출 당사자가 제2항및 제3항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이다.
5. 제2항의 목적상, “최소공정”은 아래에 규정된 공정이다.(단순공정을규정)(상세규정 생략)

제3.2조 원산지 상품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사과 HS 코드 : HS 0808.10
- 태국에서 사과 세척 및 포장 후 일본으로 수출(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 생산)
- 일본 양허 : [기준세율 : 17%],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 14.9%], [중국 및 한국 : 미양허]
- RCEP PSR : CTH or RVC 40%

품명	HS 코드	원산지	원산지지위	가격
신선 사과	0808.10	한국	원산지재료	\$2
세척·포장비				\$0.2



- 수행공정 : 태국에서 수행한 세척 및 포장은 제2.6조5항의 최소공정에 해당
- 원산지재료만 생산 시 제2.6조5항의 최소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수출 당사국이 원산지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원산지재료 중 최대 기여국을 원산지국으로 결정해야 함
- 이에 원산지재료 최대 기여국인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결정되어 특혜관세 혜택 없음

관세차별 민감품목의 원산지결정은 PSR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에서 부가가치를 20%이상 발생시켜야 원산지국으로 결정되며, 수출당사국에서 부가가치 20%를 발생시키지 못한 경우 원산지재료비 최대 기여국이 원산지국으로 결정된다.

- 관련 조항 : 제2.6조 3항, 4항

제2.6조 관세차별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자가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의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그 상품이 그 부록에 명시된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수출 당사자이다.
4. 원산지 상품의 수출 당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이다.

* 부록 추가 요건

원산지 상품의 수출 당사자는 그 원산지 상품의 생산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계산된1 그 원산지 상품 총 가액의 20퍼센트 이상이 추가된 당사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말한다.

이 부록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총 가액을 계산하는 목적상, 제3.4조(누적)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서 생산된 상품과 재료는 그것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비원산지로 여겨진다.

- 무수프탈산 HS : HS 2917.35
- 한국 무수프탈산 생산, 인도네시아로 수출(원산지재료만 사용)
- 인도네시아 양허 : [기준세율: 5%], [아세안, 호주, 한국, 일본, 뉴질랜드 : 4.6%], [중국 : 미양허]
- * 인도네시아는 무수프탈산을 관세차별 민감품목으로 지정[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 RCEP PSR : CTH or RVC 40%
- 수행공정: 크실렌 및 산화바나듐을 산화하여 생산

품명	HS 코드	원산지	원산지지위	가격
크실렌	2902.10	중국	원산지재료	\$20
산화바나듐	2825.30	호주	원산지재료	\$5
경비+이윤				\$3
국내 운송비				\$0.5
상품가격				\$28.5

- 결과 : $(28.5-25)/28.5=12.2\%$ 로 부가가치 20% 미발생, 원산지재료비 최대기여국인 중국산으로 판정되고, 특혜수출(미양허) 불가

■ 사례 1. 對태국 수출 시 관세차별을 활용한 수출전략(철강 및 운송장비 부품)

태국의 RCEP 양허표를 보면 제72류 및 제84류(운송장비 부품)에 중국,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 물품 특혜관세가 유리한 품목이 대다수이다. 이에 태국으로 철강 및 운송장비 부품 수출 시 관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RCEP 태국 관세차별 품목 예시】

HS(태국)	품목	기준 세율	아세안, 호주, 한국, 뉴질랜드에 대한 대우 (발효 1년차)	중국에 대한 대우 (발효 1년차)	일본에 대한 대우 (발효 1년차)
7219.31.00	---- 냉간압연(냉간환원) 보다 더 가용하지 않은것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4.7% (발효 20년 차부터 0%)	미양허	4.7% (발효 20년 차부터 0%)
7219.32.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4.7% (발효 20년 차부터 0%)	미양허	4.7% (발효 20년 차부터 0%)
7209.27.00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4.7% (발효 20년 차부터 0%)	미양허	4.7% (발효 20년 차부터 0%)
8409.91.41	---- 기화기와 그 부분품	10%	9% (발효 10년 차부터 0%) (OEM 조건에 따라야함)	미양허	미양허
8409.91.42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10%	9% (발효 10년 차부터 0%) (OEM 조건에 따라야함)	미양허	미양허

자료 : RCEP 협정문 참고하여 저자작성

다만, 태국에 운송장비 부품 수출 시 협정문상 OEM 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만 약속된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RCEP 부속서 1 관세양허표 태국 두주 OEM 조건】

4.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이 양허표에서 “OEM”이라 한다) 조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번의 품목은 다음의 경우에만 특혜 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다.

-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8702호부터 제8705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생산자에 의하여 그러한 자동차의 조립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또는
-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8702호부터 제8705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자에 의하여 그러한 자동차의 생산자에 전달될 그러한 부품 및 부속품의 조립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인증 절차는 태국이 지정하는 당국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다.

자료 : RCEP 협정문

■ 사례 2. 對일본 수출시 관세차별을 활용한 수출전략(섬유제품)

일본으로 수출 시 역내에서 중국이 경합국가로 판단되며, 일본의 관세차별 품목 중 중국 물품에 비해 한국 물품에 유리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있어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

중국과 우리 측 세율 유불리를 확인해 본 결과, RCEP 일본 양허표상 총 9,410개의 세부 품목이 있으며, 이중 2,756개(29.3%) 품목이 관세차별 품목이다. 관세차별 품목 중 중국과 한국 특혜세율이 동일한 품목 1,303개, 우리 측 세율 유리 품목 853개, 중국 측 세율 유리 품목 600개로 확인된다.

【RCEP 일본의 관세차별 품목 현황 요약표】

(단위 : 품목수)

총 품목수	공통양허	관세차별 품목(한국과 중국 비교)		
		한국유리 (중국불리)	중국과 한국 동등	중국유리
9,410	6,654	2,756	1,303	600

자료 : 협정문 RCEP 일본 양허표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주) 일본 HS 최하위단위 품목수로 집계함

【일본 관세차별 품목중 중국과 한국간 세율 유불리 세부 현황】

류 (Chapter)	한국유리		한국중국동등		중국유리		총합계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1	-	-	1	0.08	-	-	1	0.04
2	-	-	19	1.46	-	-	19	0.69
3	-	-	63	4.83	61	10.20	124	4.50
4	-	-	22	1.69	2	0.30	24	0.87
7	-	-	24	1.84	31	5.20	55	2.00
8	-	-	12	0.92	11	1.80	23	0.83
9	-	-	5	0.38	10	1.70	15	0.54
10	-	-	1	0.08	-	0.00	1	0.04
11	-	-	7	0.54	3	0.50	10	0.36
12	-	-	1	0.08	1	0.20	2	0.07
13	-	-	-	-	1	0.20	1	0.04
14	-	-	1	0.08	-	-	1	0.04
15	-	-	5	0.38	10	1.70	15	0.54
16	-	-	61	4.68	22	3.70	83	3.01
17	-	-	10	0.77	-	-	10	0.36
18	-	-	15	1.15	2	0.30	17	0.62
19	-	-	23	1.77	3	0.50	26	0.94
20	-	-	39	2.99	60	10.00	99	3.59

Mega FTA 활용법

류 (Chapter)	한국유리		한국중국동등		중국유리		총합계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21	-	-	35	2.69	17	2.80	52	1.89
22	-	-	4	0.31	3	0.50	7	0.25
23	-	-	1	0.08	2	0.30	3	0.11
25	-	-	2	0.15	-	-	2	0.07
27	5	0.59	29	2.23	22	3.70	56	2.03
28	37	4.34	24	1.84	-	-	61	2.21
29	27	3.17	77	5.91	-	-	104	3.77
30	1	0.12	-	-	-	-	1	0.04
32	-	-	16	1.23	-	-	16	0.58
35	-	-	4	0.31	1	0.20	5	0.18
36	1	0.12	2	0.15	-	-	3	0.11
38	4	0.47	9	0.69	-	-	13	0.47
39	5	0.59	147	11.28	6	1.00	158	5.73
40	-	-	1	0.08	-	-	1	0.04
41	-	-	3	0.23	62	10.30	65	2.36
42	-	-	12	0.92	30	5.00	42	1.52
43	-	-	21	1.61	-	-	21	0.76
44	33	3.87	84	6.45	-	-	117	4.25
46	12	1.41	4	0.31	-	-	16	0.58
50	1	0.12	11	0.84	5	0.80	17	0.62
51	19	2.23	-	-	-	-	19	0.69
52	315	36.93	-	-	-	-	315	11.43
53	6	0.70	-	-	-	-	6	0.22
54	83	9.73	-	-	-	-	83	3.01
55	101	11.84	-	-	-	-	101	3.66
56	25	2.93	-	-	-	-	25	0.91
57	29	3.40	-	-	-	-	29	1.05
58	25	2.93	-	-	-	-	25	0.91
59	-	-	19	1.46	6	1.00	25	0.91
60	52	6.10	-	0.00	-	0.00	52	1.89
61	-	-	196	15.04	33	5.50	229	8.31
62	3	0.35	97	7.44	72	12.00	172	6.24
63	2	0.23	34	2.61	42	7.00	78	2.83

류 (Chapter)	한국유리		한국중국동등		중국유리		총합계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64	-	-	32	2.46	50	8.3	82	2.98
65	5	0.59	3	0.23		0	8	0.29
66	2	0.23	-	-	1	0.2	3	0.11
67	-	-	1	0.08	-	-	1	0.04
68	-	-	3	0.23	-	-	3	0.11
69	4	0.47	3	0.23	-	-	7	0.25
70	3	0.35	5	0.38	1	0.2	9	0.33
71	1	0.12	5	0.38	-	-	6	0.22
72	2	0.23	5	0.38	7	1.2	14	0.51
73	-	-	15	1.15		0	15	0.54
74	5	0.59	21	1.61	10	1.7	36	1.31
75	-	-	4	0.31	3	0.5	7	0.25
76	14	1.64	8	0.61	-	-	22	0.80
78	-	-	2	0.15	1	0.2	3	0.11
79	1	0.12	3	0.23	2	0.3	6	0.22
81	8	0.94	6	0.46	-	-	14	0.51
82	4	0.47	5	0.38	-	-	9	0.33
83	4	0.47	10	0.77	-	-	14	0.51
85	-	-	4	0.31	-	-	4	0.15
90	2	0.23	-	-	-	-	2	0.07
91	-	-	-	-	3	0.5	3	0.11
93	1	0.12	-	-	-	-	1	0.04
94	1	0.12	4	0.31	4	0.7	9	0.33
95	1	0.12	11	0.84	-	-	12	0.44
96	9	1.06	12	0.92	-	-	21	0.76
총합계	853	100	1,303	100	600	100	2,756	100

자료 : 저자작성

우리 측 세율 유리 853개 품목 중 제50류~63류에 해당하는 섬유제품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총 661개 품목), 특히 제51류~제58류 및 제60류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품목은 일본에서 수입 시 중국 물품보다 우리 측 수출 물품이 3.2~9.1%의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차별로 인한 우리 측 특혜 세율 유리 품목 예시】

HS(일본)	품목	기준세율	협정세율(발효 1년차)	양허국가
540110.021	(1) 합성섬유 또는 합성섬유와 아세테이트 섬유를 혼방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6%	Free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6.0%	중국
540219.21	- 꼬이지 않은 것 또는 꼬임이 1미터 당 50 이하인 것	5.3%	Free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4.8%	중국
540220.021	(1) 합성섬유 또는 합성섬유와 아세테이트 섬유를 혼방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6%	Free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6.0%	중국
54050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	Free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3.2	중국
540791.091	(1) 합성섬유 또는 합성섬유와 아세테이트 섬유를 혼방한 것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러한 섬유의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가지는 것["특정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섬유 또는 "특정 합성섬유"와 아세테이트 섬유를 혼방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러한 섬유의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갖는 것은 제외한다]	10.0%	Free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9.1	중국

자료 : RCEP 협정문 일본 양허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RCEP 관세차별 활용전략 시사점

수출 목적국이 관세차별 운영국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RCEP 참여국에 비해 우리 수출물품에 유리한 특혜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및 산업은 역대 수출 경합국가에 비해 특혜관세 측면에서 수출 이점이 발생한다.

4)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한 직접운송 완화 전략

선정 개요: 기존 아시아 지역과 맺은 협정은 중간 경유국에서 거래·소비 금지, 통과선하 증권 제출 등의 엄격한 운송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3국에 보관하던(BWT 거래)¹⁶⁾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된다. RCEP의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해 역대 BWT거래가 가능하며, 직접운송 완화 효과도 볼 수 있다.

16)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보세창고도 거래

■ RCEP 연결원산지증명¹⁷⁾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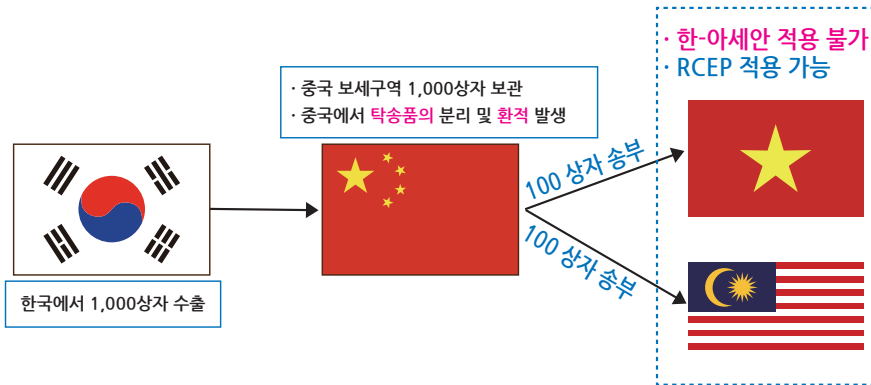
한-중 및 한-아세안 FTA는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간 경유국에서의 거래 및 소비를 금지하거나 통과선하증권의 제출 의무 등의 엄격한 운송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3국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다 수입당사국과 거래 후 분할 수출한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분할 수출 금지).

【협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서류】

	비당사국 경유 요건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공통(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필요공정)	전체운송 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중 국	○	지리 · 운송	거래 · 소비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일시보관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결합) 운송서류 등 (통관·환적 또는 보관·컨테이너 적출時)	관세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발행 서류 (보관·컨테이너 적출時)	
아세안	-	지리 · 운송	거래 · 소비	-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베트남	-	지리 · 운송	거래 · 소비	-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뉴질랜드	○	-	-	보관,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	-	-
호주	○	-	-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보관	-	-	-

자료 : 관세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 일부 발췌(2020.07)

주) 통과선하증권 : 물품이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여정을 담고 있는 모든 운송서류



RCEP은 수출당사국 및 수입당사국간 직접운송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간 경유 당사국 및 비당사국 영역에서 경유/환적 시 협정에서 정한 경유/환적 조건을 충족해야 운송요건이 지켜진 것으로 간주한다.

17) 최초 발급된 C/O를 근거로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재수출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RCEP 직접운송 규정은(제3.15조) 중간 경우 당사국 경유/환적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간단한 공정만 수행할 수 있으나, RCEP 연결원산지증명은(제3.19조) 역내 중간 경우 당사국에서 「탁송물의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 경우 당사자에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다가 수입당사국으로 분할 수출할 수 있으며(상품의 분할 가능), 수입당사국 요건에 맞는 「재포장」, 「재라벨링」을 수행할 수 있어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RCEP 경유/환적 시 중간 경우 당사자에서 허용되는 작업범위 비교】

RCEP 제3.15조 직접운송 조항의 역내 중간 경우 당사국 허용 작업 범위	RCEP 제3.19조 연결원산지증명 시 중간 경우 당사국 허용 작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 재선적, 보관, 상품 보존 및 운송관련 필요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상품 보존 및 운송관련 필요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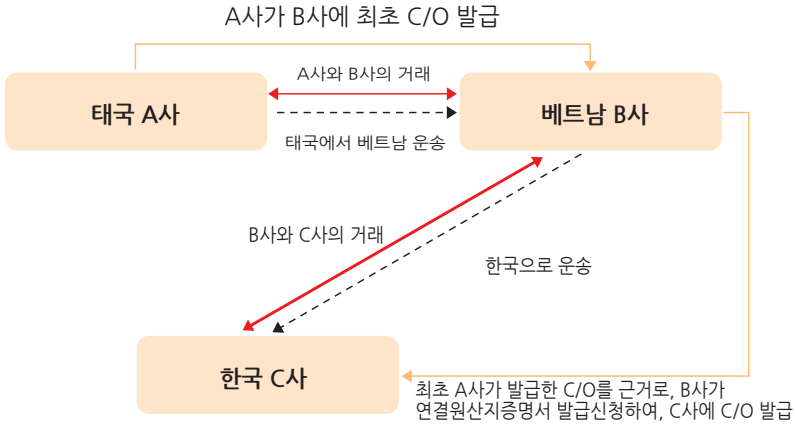
또한 RCEP 연결원산지증명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연결원산지증명 활용 시 중간 경우 당사국 수입자(아세안 역내)와 재수출자가 동일해야 연결원산지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¹⁸⁾

【한-아세안 및 RCEP 연결원산지증명 주요 차이점】

한-아세안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	RCEP 연결원산지 증명 규정
<p>제 7 조</p> <p>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p> <p>2. 중간 경우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p> <p>나. 중간 경우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우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p> <p>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p>	<p>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p> <p>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우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p> <p>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될 것</p> <p>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p> <p>다. 연결 원산지 증명서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p> <p>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우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p> <p>-- 이하 생략 --</p>

RCEP 연결원산지증명은 중간 경유국의 수입자와 재수출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중간 경유 당사국(베트남) 안에서 물품을 양수도하여 재수출자가 B사가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변경되어 연결원산지증명이 이루어져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다.

18) 그림(사례)에서 태국 물품을 베트남 B사가 수입하고, B사가 한국으로 재수출해야만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사점

RCEP은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해 기존 아시아 지역과 맺어진 협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분할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역내 경유 당사국 물품 보관 중 수입당사국에서 요구하는 재라벨링 및 재포장 등이 가능하므로 역내 물류 거점지역을 활용한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직접운송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4. 원산지검증 유의사항

- 검증사례 중심 -

FTA가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활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검증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원산지검증을 관할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을 통해 선량한 수출 기업의 피해 방지와 'Made in Korea'라는 국가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를 통한 전국가적 경제 이익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 장에서는 수출검증의 개념 및 FTA 특혜 요건별 검증 위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수출검증 개요

■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의 개념

원산지 검증은 수출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및 증빙서류 등의 사후 조사를 통해 특혜 요건의 적정성 확인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총괄하는 행정절차이다.

■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의 종류

① 검증 방식에 따른 종류

- 직접 검증 : 수입국 정부당국이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 질의·정보 요구·현장방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
 - 한국과 미국·칠레·싱가포르·캐나다·뉴질랜드·호주·페루·콜롬비아·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과의 총 9개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음
 - * 호주·페루·콜롬비아·중미는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모두 가능
- 간접 검증 : 수입국 정부당국이 수출국 정부당국에게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면 수출국 정부 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서면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 검증을 진행한 후 수입국 당국에게 결과를 송부하는 방식
 - 한국과 EU·EFTA·터키·아세안·베트남·중국·인도와의 총 7개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음
 - ☞ 한국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수행하는 수출검증은 간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 따른 것임

② 착수 사유에 따른 종류

- 계약상대국(수입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검증 요청을 한 경우
 -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여 착수하는 경우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 따른 것으로 한-EFTA, 한-EU,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한-터키, 한-중국 등 7개 협정이며, 일반특혜(APTA)를 포함하여 총 11개 협정
 -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공동조사를 요청한 경우로써, 한-미 FTA 제4장 제4.3조 (섬유 또는 의류산업에 대한 세관협력)에 근거한 섬유류 공동 현지검증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원산지 위반혐의를 인지 또는 외부인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
 - 관세청장의 지시 또는 세관장이 자체적으로 국내 수출자(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하여 검증 수행

[수출 원산지검증 절차]

현재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을 받아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FTA관세법에 의거 서면조사 우선원칙에 따라 서면검증 후 필요시 현지검증을 진행하며, 예외적인 경우 현지조사 우선 수행

〈 원산지 검증의 법적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 포함)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해당물품의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다)

2) 거래당사자원칙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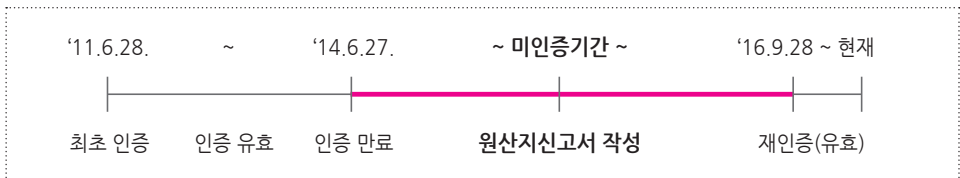
인증수출자 미갱신 기간 동안 발급된 부적정 원산지신고서

■ 상대국 요청 개요

해당협정	한-EU FTA
요청국	영국
한글품명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서 폭이 30센티미터 초과하는 것
영문품명	CIRCULAR KNITTED DYED FABRICS
세번분류	HS 6004.10
원산지기준	① 천연섬유 ② 인조스테이플섬유 ③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요청사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있음
요청사항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및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한 검증 요청

■ 원산지조사 결과

- 인증수출자 여부 : 수출자는 2011년 6월 최초 품목별 인증을 받았으나, 3년이 경과한 2014년 6월에 갱신하지 않았고, 2016년 9월에 갱신하여 적절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미인증 기간은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총 2년 3개월 동안임



- 발급의 적정성 :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2016년 13월 동안 발급되었으므로, 신고서 발행당시 미인증 수출자로서 발급권한이 없었으나, 담당자 퇴사 등의 사유로 사전 인지하지 못함

■ 위반 사항 검토

- 사실관계 : 2014년 3월 전임자가 업무의 인계인수 없이 퇴사하고 약 2개월 후 2014년 5월 29일 현담당자가 입사하였으나 2014년 6월 27일 인증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작성자는 원산지관리 경력이 全無한 자로 단순 무역서류 작성업무만 인수받아 유효한 인증수출자로 인지·작성한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별로 원산지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원산지 입증서류는 건별로 적정 보관

- 검토의견 : ① 담당자 공백 및 불완전한 업무인계인수 등 중소 수출기업의 열악한 업무환경(총직원 3명, 원산지관리업무전담자 없음)으로 기인한 오류이며, ② 수출물품인 폴리에스테르 편물(HS 6004)은 최초 인증당시부터 국내산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국내에서 편직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이므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인증수출자 지정 이후 전담자 부재 또는 잦은 퇴사 등의 사유로 갱신일이 도래하였으나 미갱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등의 오류 발급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인증시 교부받은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정통보서를 관할세관에 제출 및 수입자에게 오류내용을 통보하고, 인증수출자 자격을 갱신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소급 발급
* 한-EU 관세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수출 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소급 발급 가능

3)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재단공정이 없는 뜨개질 편물 제품의 한-EFTA 원산지기준 불충족

■ 상대국 요청 개요

해당협정	한-EFTA FTA
요청국	스위스
한글품명	장갑류(메리아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영문품명	COATED KNITTED GLOVES
세번분류	HS 6116.10
원산지기준	CC(2단위 류 변경)단, 계약상대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된것에 한정
요청사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있음
요청사항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및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한 검증 요청

■ 원산지조사 결과

- 원산지신고서 :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정확히 기재하여 서명하였으므로 형식요건 적정
- 원산지결정기준 : 합성필라멘트사(HS5402)와 고무사(5604.10) 등으로부터 생산되어 2단위 변경 조건은 충족하나, 원사로부터 편성 공정으로 거쳐 바로 장갑이 생산되므로 재단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불충족

■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 연방 스위스 관세청(Federal Customs Administration Swiss Customs)의 검토 의견
 - 재단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 봉제 또는 기타방법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양말과 같이 재단이 없는 품목은 원산지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회신 받음(2018년 6월)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뜨개질용 편물에 대해서는 협정별로 난해한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이 용이하지 않고, 일부 FTA에서는 충족이 어려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원산지신고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 판정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4) 직접운송원칙 위반

경유지에서 환적 및 컨테이너 재적입의 경우, 증빙서류 검토 필수

■ 상대국 요청 개요

해당협정	한-아세안 FTA
요청국	인도네시아
한글품명	라미네이터 코팅 머신
영문품명	Laminator Coating Machines
세번분류	HS 8479.89
원산지기준	①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② RVC 40 (역내부가가치가 40%이상)
요청사유	제3국(홍콩)을 경유하였으나 Through B/L이 미제시
요청사항	직접운송 충족 여부 검증 요청

■ 원산지조사 결과

- 원산지충족 여부 : 화주가 제출한 원재료명세서와 원산지소명서 확인 결과 수출물품인 라미네이 터 코팅머신은 총 289종의 원재료가 사용되었으며 완제품 세번인 HS 8479.89호와 동일한 세번이 없으므로 CTSH를 충족함
- 직접운송 여부 : 검증 대상물품은 홍콩을 경유한 뒤 싱가포르에서 하역·컨테이너 개장·물품 재분류 후 다른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환적되었으나, 수출자는 통과선하증권 및 비조작증명서 등 직접운 송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단순 경유 또는 단순 환적의 경우가 아닌, 경유지에서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물품 재분류 후 컨테이 너를 재작업하여 컨테이너 번호 및 씰(Seal)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
- 운송 항로상 주요 경유지인 싱가포르·홍콩의 경우, 관세당국의 비조작증명서 발급이 비교적 용이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신청하여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

5) 품목분류 오류 위반

상대 수입국에서 품목분류 오류 의심 관련 검증 요청

■ 상대국 요청 개요

해당협정	한-아세안 FTA
요청국	태국
한글품명	마스크 시트
영문품명	Mask Sheet
세번분류	HS 3304.99
원산지기준	①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② RVC 40 (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
요청사유	AK form 7번란에 기재된 세번관련하여, MASK SHEET(Item no. 42~64)의 세번은 3307.90 으로 분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04.99로 신고되었음
요청사항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 검증

■ 품목분류 검토

- 신고 세번 : 수출자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에 품목번호를 3304.99호로 표기하여 신고 및 발행
- 검토 의견 : 제33류 주4에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부직포를 분류하고, 제3307호의 해설서에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부직포를 예시하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HS 3307.90-9000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3307.90- 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고의성 여부 검토

- 태국의 수입 통관세율(2016년) 및 원산지 기준 확인 결과, HS 3304.99호의 특혜 세율은 3%로 일반 양허세율보다 높으며, 원산지 기준도 HS 3307.90호와 동일하여 원산지 기준도 충족됨에 따라 고의로 잘못된 세번으로 신고할 개연성은 없음
 - ☞ 원산지증명서를 HS 3307.90으로 수정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발송

수입 세번	세율		원산지 기준
	MFN	FTA	
3304.99-90	30%	3%	CTH or RVC 40%
3307.90-90	20%	0%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태국의 통관지 세관은 특혜신청 대상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수출 물품 품목분류에 유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음
- 對태국 수출기업의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를 선적서류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사전확인하여 수입국 통관 보류 및 검증요청을 사전 예방할 필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 3 8 0

FTA 콜센터 1380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협정별/업종별 FTA 전문가(관세사)가 직접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전화 상담 후 업체 맞춤형 컨설팅(찾아가는 1380 컨설팅, OK FTA 컨설팅,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컨설팅, 한중 FTA 특화 컨설팅 등) 연계 지원
- 17개 지역FTA센터 및 산단공 파견 관세사를 통한 밀착형 지원



정보제공

- FTA 활용 성공사례집, FTA 활용 가이드 북 등 각종 자료발간
- FTA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동향 등 관련 정보 제공
- 국내외 FTA관련 설명회/세미나 정보 제공

※ FTA1380홈페이지(hta1380.or.kr) 참조



FTA맞춤형 교육 안내

- FTA 활용 기업의 실정에 맞는 각종 맞춤형 교육 지원
-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중심 원산지 관리 교육, 원산지 시스템 관리 실습 교육, FTA School 등 각종 맞춤형 교육 관련 상담 및 안내



애로해소

-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건의
- 협정문 및 관련 법령 해석 지원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

- 1. RCEP 현지동향 88
-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 2. 국가별 RCEP 활용 전략 108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PART 3

RCEP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

1. RCEP 현지동향

1) 중국

■ RCEP 협정문 후속 논의 현황

중국 전문가들은 RCEP 발효로 상품무역의 90%이상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며, 원산지누적기준 활용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밀접한 연계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의 경우 RCEP에 따라 중국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며, 향후 협정 발효 6년 이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CEP 발효 이후 중국의 상업, 통신, 금융 서비스 부문별로 규제가 완화되어 시장이 개방되고 있으나, 6년 이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은 서비스 무역 관련 법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서비스 무역 개방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중국 국내 서비스 무역의 법률체제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RCEP 투자 부분을 살펴보면, 회원국 모두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제조업, 농업, 광업 등 분야의 투자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정책 투명성도 제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RCEP 발효로 중국은 역내 무역 및 투자 활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 무역 및 외국자본을 안정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동아시아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안정적 성장 및 취업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RCEP이 산업에 가져다주는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여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 14.5 계획기간 개혁개방 촉진, 고품질 발전 및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RCEP은 경쟁정책, 무역구제, 정부조달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새로운 개혁 및 경쟁중립성⁰¹⁾ 이행의 중요성이 커졌다. 또한, RCEP 발효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장벽 철폐, 통일된 경쟁정책 수립을 통해 중국 글로벌 기업들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전관찰(中国发展观察)⁰²⁾에 따르면 RCEP에 새롭게 도입된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 조항을 시행하려면 시장경제의 법칙을 강력히 수립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및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에 대한 입법 및 법 집행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⁰³⁾

■ RCEP 활용 제도 현황

① 바이어 발굴 지원제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RCEP 추진 방안(把握RCEP机遇 助推“两区”高水平发展行动方案)에 따르면, 무역의 안정적·고품질 발전을 위해 RCEP 회원국 간 온라인 상담회를 추진하고, 베이징 로컬 차(車) 브랜드의 완성차 및 중고차의 對아세안 안정적인 수출 활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⁰⁴⁾

②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활용 지원

각 지역별 해관에서는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하게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의 해관에서는 빠른 심사 및 처리를 통해 수출입기업에 편의성, 무역거래 비용 절감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⁰⁵⁾

베이징 해관에서는 RCEP 활용 기업을 위해 전문 서비스 통로 개설, 인증수출자 신청 건을 신속히 심사 및 등록 처리하는 한편, 지속적인 스마트심사(智能审核) 추진 및 RCEP 회원국과 AEO 상호인정제도를 운영하여 AEO 인증 지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⁰⁶⁾

③ 제도적 기반 집행 인프라 마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RCEP 발효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 근거를 규범화하기 위해 내부 법령 개정, 정책 보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사전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RCEP의 실질적인 업무 주관책임부처로서 협정 발효에 맞춰 통일된 관세행정 집행과 전면적인 실무적 절차 이행을 위해 <RCEP 원산지 관리방법⁰⁷⁾>과 <승인된 수출업자 관리조치⁰⁸⁾> 등 RCEP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01) 경쟁중립성(竞争中性, Competitive Neutrality): 정부가 정부소유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세금차등부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

02) 중국발전관찰(中国发展观察): 국무원 산하 종합 경제지(월간)

03) 중국발전관찰(中国发展观察), 2022.3.3, 聚焦RCEP生效实施③ | RCEP启程后为世界与中国带来的机遇与挑战

04) 뉴스: 귀연왕(国研网), '22.6.22', "北京市《把握RCEP机遇助推“两区”高水平发展行动方案》", 베이징시인민

05) 뉴스: 해관총서, '22.7.13', "RCEP半年报, 企业红利知多少?"

06) 뉴스: 귀연왕(国研网), '22.6.22', "北京市《把握RCEP机遇助推“两区”高水平发展行动方案》", 베이징시인민정부

07) 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 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

08) 中华人民共和国海关经核准出口商管理办法)

RCEP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

RCEP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서식 법제화 등 국내법령을 정비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각 지방정부 또한 RCEP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RCEP 이행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년 1월 26일에 기업들이 RCEP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 RCEP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무부 등 6개 부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이행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의견⁹⁾’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¹⁰⁾

베이징¹¹⁾을 포함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RCEP 기업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RCEP, AEO 등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¹²⁾ 알리바바 eWTP(전자세계무역플랫폼), 각 지역별 대외무역 관련 홈페이지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¹³⁾", 위챗 공중계정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RCEP 활용 관세혜택,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클릭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⁴⁾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에서는 ‘FTA서비스망¹⁵⁾’ 개선을 통해 FTA 개요, 일반현황, 활용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사이트에서는 회원국별 최적 세율, 관세인하 주 기, RCEP 활용에 관한 교육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시설 기반 집행 인프라 마련

베이징은 RCEP 회원국 항공화물의 원활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회원국 주요 도시간 운항 항공편을 확대하고, 신속한 화물처리를 통해 화물 인프라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⁶⁾

⑤ RCEP 활용 홍보활동

중국 상무부, 각 지역 정부, 해관에서는 RCEP 협정을 이해하고 관세양허, 원산지규정 등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 온·오프라인 교육 및 멘토링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관총서에서는 수출입기업에서 RCEP 관세절감 효과 및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각 지역 반기별 혜택 및 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발표한 바 있다.¹⁷⁾ 실제로 베이징 통계에 따르면 7.7억 위안에 해당하는 수출입 화물이 관세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그 중 6.87억 위안의 수출 화물이 수입국에서 0.07억 위안의 관세절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 중국 통관 현황

중국으로 RCEP 활용 통관을 위해서는 ①원산지 기준 충족, ②RCEP 당사자간 거래, ③직접운송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09) [关于高质量实施〈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的指导意见]

10) 자료출처: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 상무부 등신랑과기(“20.12.16), “国家发改委: 将清理与RCEP不符的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 중국신문망(국研网), “22.6.22), “北京市《把握RCEP机遇助推“两区”高水平发展行动方案》” 베이징시인민정부

11) 베이징의 경우 CBD관리위원회와 조양구해관에서 공동 설립함(지역별 설립 부처 상이)

12) 베이징일보(“22.4.1), “CBD成立创新服务中心, 进出口企业可享高级认证培育孵化等服务”

13) <https://new.singlewindow.cn/>

14) 중국경제망(“22.7.11), “eWTP上线RCEP关税查询工具”, 중국신문망시나핀인뉴스(“22.4.2), “海南RCEP关税查询服务平台正式上线” 등

15) 中贸促FTA, <http://www.ccpit-fta.com/index.html>

16) 北京市《把握RCEP机遇 助推“两区”高水平发展行动方案》

17) 뉴스1: 해관총서, “22.7.13), “RCEP半年报, 企业红利知多少?”

- ① (원산지 기준)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또는 △ 하나 이상의 당사자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기재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준	의미
역내가치포함비율	당사자에서 발생 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HS CODE 변경	역외산 원재료→완제품 간 HS CODE 변경(2단위,4단위, 6단위 변경)
완전생산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화학반응	화학반응이 당사자에서 발생한 경우, 그 화학반응의 산물인 모든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자료: 해관총서, 자문법인루츠 등, KOTRA베이징무역관 정리

- ② RCEP 당사자간 거래가 이뤄져야 함

- ③ 상품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접 운송되거나, 상품 수출입 당사자 이외 하나 이상의 당사자(중간 경유) 또는 비당사자를 통해 운송 될 경우, 그 상품은 1)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과 같은 물류 활동을 제외하고 중간 경유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들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말아야 하며, 2) 중간 경유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관세 당국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RCEP 적용 사전 검토 항목>

검토대상	조건
거래 당사자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자연인/법인)과 중간 당사자의 영역에 경유하여 재수출하는 인(자연인/법인)
품목 및 세율	HS CODE별로 국가별, 품목별로 RCEP 세율을 달리 정함(즉시 철폐, 연차적으로 인하, 양허 제외) 해당 물품이 RCEP 관세 적용 대상 여부 및 세율 확인 필요
원산지 결정기준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협정문 원산지 결정기준 참고, 또는 해관총서 상공회의소 등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 요망
원산지 증명서	발행 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서식 ·RCEP 협정 상 원산지증명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이외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10년 내 실시)도 포함 됨 ·다른 당사 영역을 경유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할 수 있음
운송	상품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직접 운송되거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상품이 하나 이상의 당사자를(중간 경유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를 통하여 운송될 수 있음
특혜 신청절차	수입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적절한 RCEP 특혜 절차를 준수해야 함 (중국해관 총서 공고 2021년제 106호)간주됨

자료: 해관총서, 자문법인루츠 등, KOTRA베이징무역관 정리

RCEP 적용 사전 항목 검토 완료 후 수입자는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¹⁸⁾를 통해 사전 RCEP 특혜관세 적용 신고, 증명서류 업로드 등 관련 절차를 등록해야 한다.(현재 중국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 진행) 세금납부 통보를 받은 후 수입자는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 심사를 통해 통관이 완료

18) 이트: www.singlewindow.cn, 中国国际贸易单一窗口

될 경우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며, 수동심사(人工審核)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검사¹⁹⁾를 받아야 한다.

■ 중국 통관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RCEP은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사후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입 후 특혜관세의 신청을 관련 조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각성 관할 해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 확인이 어려우므로 관할 해관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특혜관세 사후적용의 사전조건이 있다. 즉, 통관단계에서 ‘사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므로 이에 따라 해관에 수입신고 외에 원산지 자격에 관한 ‘보충신고’를 하고 보증금을 제공해야만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특혜관세 사후적용의 사전조건이 있다. 즉, 통관단계에서 ‘사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므로 이에 따라 해관에 수입신고 외에 원산지 자격에 관한 ‘보충신고’를 하고 보증금을 제공해야만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 의사표시를 통해 특혜관세를 사후 적용할 경우 우선 해당 화물을 보세구에 입고하고 원산지 증명서류를 확보한 후 통관 신청 때 RCEP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적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 절차 완료 전(가급적이면 세금을 납부하기 전) 해관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신고 취소 및 재신고 절차를 통해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업무 진행 사례에 따르면 사후적용의 경우 소요 시간이 길며, 절차 또한 복잡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재신고 절차를 신청할 경우 담당관세사의 업무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19) 일반적으로 해관에서 주요 검사대상, 특수 상황 발생 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수동 심사 결정

2) 베트남

■ RCEP 협정문 후속 논의 현황

① RCEP 관련 정부편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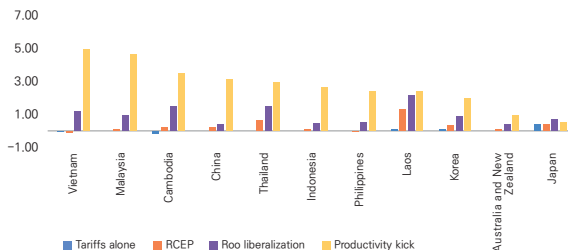
베트남 부총리 Pham Binh Minh은 RCEP의 이행을 위한 정부부처 역할을 할당하였는데²⁰⁾, 이에 따라 산업 무역부가 협정 1, 3, 7, 8, 13장을 담당하여,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서비스 무역 및 공정경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산업무역부가 협정상대국의 수출입절차 및 협정관세 적용 관련 사항을, 재무부는 베트남의 RCEP 수입 관세 관련 사항을, 농림부는 농산물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에 관해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베트남은 RCEP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정부제도를 마련해나가며, RCEP 시대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협정당사국 중 RCEP 체결의 결과로 가장 높은 무역규모 증가와 소득증가를 영위할 것으로 예상된다.²¹⁾

【RCEP 체결국 실질소득 증가도】



자료: World Bank, RCEP Report 참조

② 상품 관련 후속 논의 필요사항

아직 베트남은 RCEP 수입협정관세율의 실무 적용 전이므로, 상품무역 협정에 관한 후속 논의는 매우 더딘 편이다. 다만, 협정당사국 15개국이 이미 각 협정상대국과 개별 FTA가 체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RCEP으로 인한 관세양허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개별 산업군별로 RCEP으로 인한 효익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상품무역 관련하여 베트남 현지 산업계 중 농림축산업계의 기대감이 가장 큰 편인데, 호치민 시, 룡안

20) 베트남 총리령 결정문 328/QĐ-TTg

21) Carmen Estrades 외 (2022), Estimating the Economic and Distributional Impact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World Bank

성 등에 소재한 농산물 수출입유통 업체는 RCEP 이후 신선과일부터 케이크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의 對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베트남 농산물 유통업체인 Vinapro는 캐슈넛, 후추, 계피 등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더욱 증대시킬 기회가 온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²²⁾

반면 RCEP으로 인하여 중국의 저가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며, 베트남 제조업의 약화를 우려하는 사람도 많아 향후 공산품 관련 관세율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 Tran Thi Lan Anh 사무총장은 RCEP의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²³⁾

아직 RCEP 수입협정관세율이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고,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4월부터 시행되어 상품무역 관련 산업계의 건의는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 상황이다.

③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후속 논의 필요사항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에 의하면, RCEP 협정이 서비스 부문의 실질적인 개선을 강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어 RCEP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상품무역 외에도 서비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실효성 있는 규정이 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베트남 RCEP 적용 현황

베트남은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RCEP이 공식 발효되었음을 천명하였으나, 실제 실무적용 상황은 달랐다. 1월 1일부터 RCEP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것과는 달리 2022년 10월 현재까지 실제 적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수입물품에 RCEP 수입 협정관세율 적용이 불가하여,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RCEP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국가 간 협정은 내국법률과 효력이 동일하기에 베트남 정부는 발효 시점인 1월 1일부터 RCEP 협정관세율 혜택을 제공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관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RCEP 수입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국제 HS 협약이 2022년 개정되었으나 베트남은 개정 HS코드표를 내국법률로 반영하는 절차가 지연되어, HS코드 개정 반영과 함께 추후 RCEP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예정

22) Hua Xia (2022.3.26.), Feature: RCEP brings development opportunities to Vietnamese businesses, Xin Hua Net News

23) Uyen Huang (2022.7.13.), Hỗ trợ doanh nghiệp khai thác tối đa cơ hội từ Hiệp định RCEP, B News

-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사용하는 수입관세율표 상 RCEP 협정관세율 부호코드 등 시스템 업데이트가 지연되어 추후 정리되는 대로 적용할 예정

또한, 수출물품에 관련하여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2022년 4월 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이 전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실무발급이 불가하였다.

현재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RCEP 활용 제도 현황

① RCEP 활용 베트남 정부 세미나 개최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각 부처는 RCEP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RCEP 활용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이나 농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보제공 목적 세미나가 많다.

② 인증수출자 제도 미도입과 기관발급 고수

베트남은 FTA 목적의 인증수출자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RCEP 활용 수출물품에도 인증수출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RCEP 수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2022년 10월 현재 수입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실무적인 이슈는 제기된 바가 없다.

RCEP 협정문에 따르면 10년 내에 자율발급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므로, 향후 베트남 정부가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베트남 원산지증명 발급포털 내 RCEP 서류발급 기능 추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운영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포털(ECOSYS)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양식 Form RCEP의 발급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포털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전자제출이 가능하다.

■ 베트남 통관 현황

① 베트남 수출입 통관 개요

베트남은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이 수출입통관을 관리감독하며, 관세총국 산하 각 지방 성, 시 세관국

RCEP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

이 실제 통관서류 검토와 현품검사 등 실무를 담당한다.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한 후 세관수출입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며, 전자신고와 종이서류 신고 중 선택가능하다.

수출입신고 후 접수 결과는 3가지로 구분되며, ‘Green Flow’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되는 Paperless(P/L)대상이며, ‘Yellow Flow’는 전자서류, 종이서류를 심사하는 서류심사대상이며, ‘Red Flow’는 서류와 함께 현품을 검사하는 대상이다. 품목, 우범화물 위험도 등에 따라서 세관 시스템에서 분류 및 통보된다.

② 베트남 FTA 활용 개요

FTA 활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표기를 하여 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하지 않아 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후 협정관세 신고 대상임을 수입신고서에 필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산업무역부 ECOSYS 원산지증명서 발급 포털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 베트남 통관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① 수출국과 베트남의 FTA 활용 HS코드가 다른 경우 유의사항

수입국에서 통관용으로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상이한 경우 FTA 활용이 어려워진다. FTA가 HS코드를 기반으로 체결되기 때문인데, FTA는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제공하므로, 국가간 HS코드가 상이한 경우 수입국의 HS코드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은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신고서 상의 HS코드와 상이하더라도 관세청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입통관에 적용이 가능하나, 베트남은 HS코드가 상이한 수입물품의 FTA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국에서 베트남의 수입 HS코드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지만, 베트남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 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를 통해 FTA 사후적용을 신청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야만 한다.

③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불법적 수수료 징수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통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구비하고 일반 관세율과 협정관세율의 차액 상당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베트남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실무적용에 있어 애로 사항이 다수 발생한다.

FTA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FTA 사후적용 대상임을 기재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재가 없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되며, 기납부 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적용을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공무원들이 통상 환급액의 10%를 불법적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의 환급 건에 이 불법적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제기가 잦은 편이다.

3) 태국

■ RCEP 협정문 후속 논의 현황

2022년 1월 1일 RCEP 발효 후 태국은 협정문과 관련된 조항 개정이나 추가 건의사항은 없으며, 교역 확대를 위해 태국 상무부의 성명발표가 있었다. 2022년 7월 8일 부총리 겸 상무부장관인 Jurin Laksanawisit은 RCEP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12차 베이부만 경제협력회의”에서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발표의 주제는 “베이부만의 새 미래와 함께 육상-해상 운송 경로 건설 및 RCEP을 통한 새로운 기회 공유”로 중국 및 아세안 고위 관직들이 참여했다. 베이부만은 광둥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3개의 성으로 구성된 중국-아세안 간 해상 운송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태국 램차방항과 중국 친저우항의 항로처럼 태국에서 베이부만으로 향하는 항로 건설을 통해 농산물과 과일을 포함한 여러 제품의 수출이 용이해졌다. 램차방항 개발사업 3단계를 통해 중국 서부와 유럽으로의 항로 또한 확장이 가능하다.

이번 개발이 중국 서부 및 기타 지역을 향한 태국 시장의 확장을 광범위하게 만들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부만을 향한 이번 확장이 완료되면 향후 다른 국가와 연결되는 수상교통 및 물류 허브로 발전이 가능하며 제품 운송 능력이 향상되어 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CEP 활용 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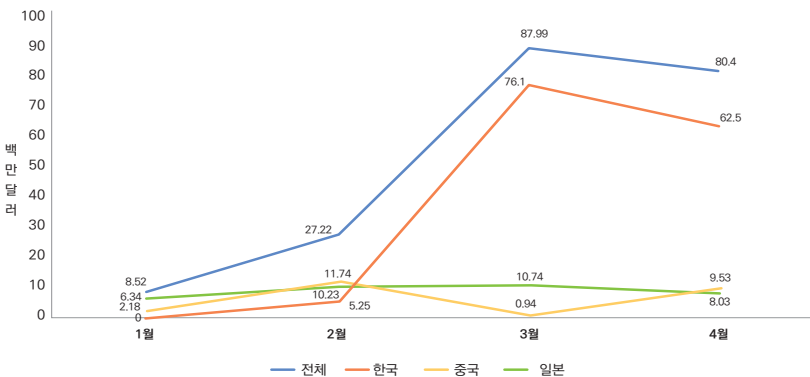
태국은 2022년 1월 1일 RCEP 발효 국가로 태국 기업들은 RCEP을 활용하고 있다. 협정 발효 후 5개월 간(1~5월) 태국의 RCEP 협정국으로의 수출은 총 630억 달러를 넘어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태국 정부는 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무역협상국은 태국의 여러 제품을 RCEP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RCEP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태국 기업들을 위해 태국 수출입은행(EXIM BANK)과 협력, 첫 해 연 2.75%의 낮은 이율로 인당 한도 5,000만 바트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억 바트 이상의 예산을 준비했다. 2022년 10월 현재 261명이 총 30억 5,300만 바트 이상의 대출 승인을 받았고 97명이 총 20억 바트 이상 승인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국 정부는 RCEP 집중 교육을 위해 태국 동북부 지역 나콘빠툼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부 치앙라이주로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향후 해당 정부 사업의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태국 통관 현황

2022년 4월 RCEP을 활용한 태국 전체 수출액은 총 8,040만 달러로 RCEP이 처음 발효된 1월 850만 달러 대비 약 844% 증가했다. 2022년 4월 RCEP 활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총 6,250만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수출액 중 약 78%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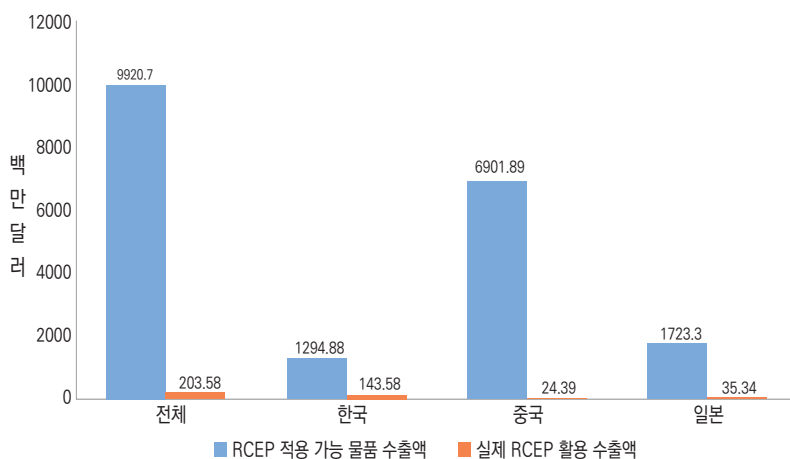
【태국의 RCEP 활용 수출 활용도(월별)】



자료 : 대외무역국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태국의 한국, 중국, 일본으로의 RCEP 협정 활용도는 전체 금액 99억 2,000만 달러 중 2억 400만 달러로 약 2.1%의 활용도를 보였다. 한국으로의 RCEP 수출 활용도는 전체 12억 9,500만 달러 중 1억 4400만 달러로 약 11.1%의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태국의 RCEP 활용 수출 활용도(2022년 1월~4월 누계)】



자료 : 대외무역국

■ 태국 통관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태국은 RCEP 원산지증명서 내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발행 연도가 2021년, 태국 수입 연도가 2022년이면 관세 혜택 등은 2021년 규정을 적용한다.

대리인(포워딩, 통관대행업체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HS Code나 원산지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출입업자와 서류 재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 태국은 다양한 FTA 협정이 체결²⁴⁾되어 있어 협정별로 관세 혜택 적용이 상이한 바, 통관 시 사용할 협정에 따른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수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기입, 적용할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행, 올바른 HS Code 등 통관 전 사본 송부를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이상 없이 발행되었는지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4) 캄보디아

■ RCEP 협정문 후속 논의 현황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RCEP 등 무역협정을 총괄하고 있다. 상무부에서는 무역 훈련연구소(Trade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를 운영하며, RCEP 내용 및 주요 특징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CEP 기업자문위원회는 민간에서 설립된 단체로, 협정 이행을 검토하고 혜택 극대화를 위해 RCEP 협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4) 태국은 현재 14개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RCEP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

상품교역 부분에서 캄보디아는 RCEP 발효 초기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 수출증대와 RCEP 체결국 중 실질 소득 및 수출 증가 3위를 예상하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기반으로 별도 후속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는 2021년 기준 수입 287억 달러, 수출 175억 달러로 약 11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보스턴 대학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더불어,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적이 있다.

【RCEP에 따른 각국 별 무역수지 영향예측】

Reporter	BOT Before RCEP in USD Million	Post RCEP BOT with 100 percent liberalisation in USD Million	Post RCEP BOT with limited liberalisation including SL and TRQs in USD Million	Change in BOT pre and post RCEP including SL and TRQs in USD Million	Percentage Change in BOT Pre and Post RCEP with SL and TRQ
Australia	93,453	96,388	94,429	976	1.0
Brunei	3,654	3,662	3,658	4	0.1
Cambodia	-13,360	-17,932	-15,678	-2,318	-17.3
China	-139,684	-141,061	-144,536	-4,851	-3.5
Indonesia	-9,628	-10,006	-9,781	-152	-1.6
Japan	12,162	28,944	24,157	11,995	98.6
Korea, Rep.	36,073	29,793	33,169	-2,904	-8.0
Lao PDR	-607	-361	-623	-16	-2.6
Malaysia	11,218	3,638	7,122	-4,095	-36.5
Myanmar	-1,728	-2,078	-2,206	-479	-27.7
New Zealand	4,726	5,416	4,989	263	5.6
Philippines	-23,359	-24,264	-23,623	-264	-1.1
Singapore	-50,987	-50,467	-51,067	-80	-0.2
Thailand	-2,983	-3,061	-3,654	-671	-22.5
Vietnam	-52,133	-56,433	-52,635	-502	-1.0
ASEAN	-139,912	-157,301	-148,487	-8,57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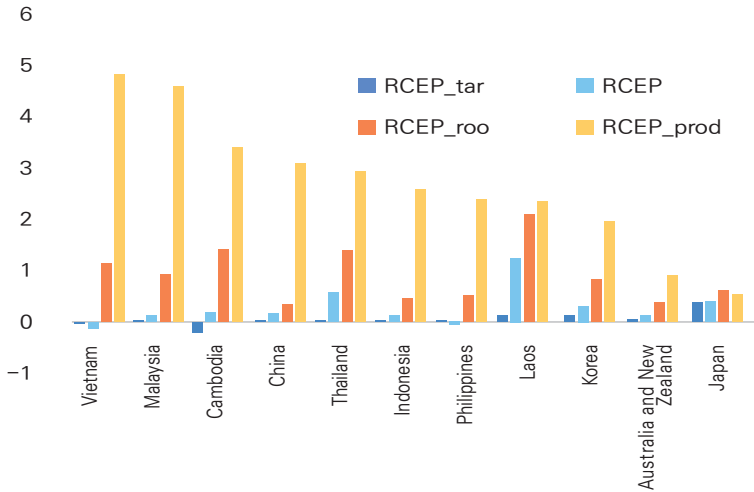
Source: UN COMTRADE, SMART Simulations, WITS (World Bank and UNCTAD), 2019.

자료: 보스턴대학교 RCEP: Goods Market Access Implications for ASEAN 2021

주: 2019년도 UN COMTRADE 데이터 기반

하지만, 캄보디아 상무부에서는 RCEP으로 수출이 연간 18% 증가할 것으로, 일자리도 6.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캄보디아의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9% 증가한 11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11.9% 증가한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에서 2022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CEP 체결국 중 캄보디아 실질소득 증가율이 상위권으로 예상된다.

【RCEP 체결국 간 시나리오별 실질소득 증가율 예측(2035)】



자료: 세계은행, Cambodia Economic Update 2022.6월

상품교역 외에 투자부문에서 전자상거래 활용확대, 신규투자법 하위규정 발행 및 RCEP 활용을 위한 교육과 기술훈련에 대한 기업 및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수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직접적인 협정문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 RCEP 활용 제도 현황

캄보디아 상무부에서는 RCEP 활용 세미나 개최 및 홍보책자 발간 등 RCEP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상무부는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와 함께 RCEP의 특징, 영향 등 일반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시에 워크숍을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RCEP에 대한 기본이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조항 활용 방안, 원산지 규정 적용 케이스 등 RCEP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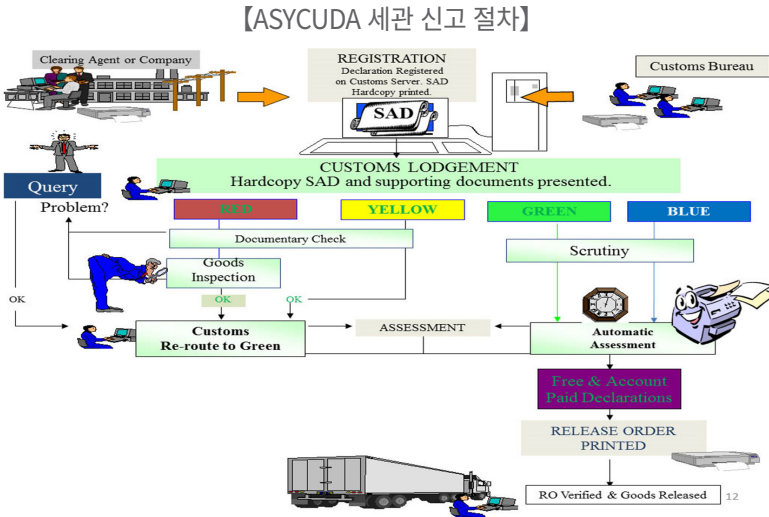
■ 캄보디아 통관 현황

캄보디아 통관은 재정부 산하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에서 담당하고 있다. 통관을 위해서는 상무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세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인 ASYCUDA에 등록된 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 수입 시에는 세관수입신고서, Commercial Invoice(송장), Packing List(물품명세서), Bill of Lading(선하증권),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세금납부서 등이 필요하다.

ASYCUDA에 세관신고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SAD(전자통관신고; Si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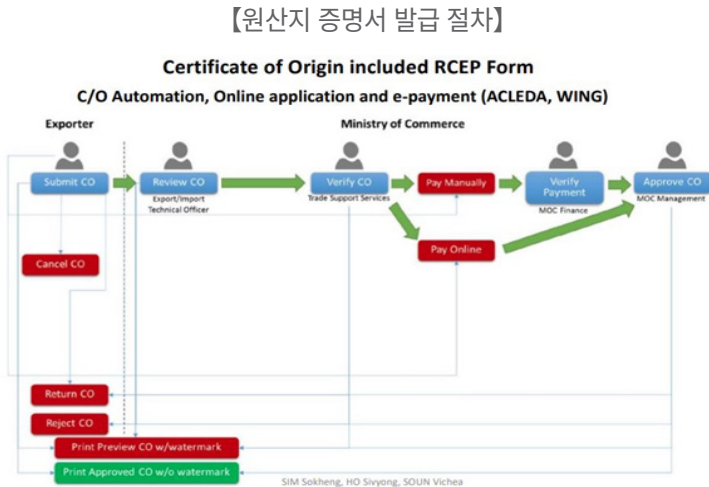
RCEP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

Administration Document) 2부를 출력하여 서명 후 관할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위험관리 기준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위험수준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컨테이너 스캔은 SAD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최종적으로 ASYCUDA에서 관세, 세금 및 수수료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 등 납부액이 확인되면, Cargo Release Note가 발행되어 화물반출이 가능하다.



자료: Cambodia GDCE

캄보디아 정부는 RCEP 발효 후, RCEP 양식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상무부에서 이를 검토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관련 비용을 온·오프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승인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료: Cambodia Ministry of Commerce

■ 캄보디아 통관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캄보디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통관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먼저, 무역협정 관세율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다.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RCEP 및 무역협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한국과는 HS Code가 다르게 적용되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선적 전에 캄보디아 수입업자와 캄보디아 HS Code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세청의 협정 이해도 부족 또는 불투명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업에서 개별적인 대응이 어렵다. KOTRA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캄보디아 관세청, 한국 세관 등과 협력하여 대응하므로, FTA 활용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캄보디아 통관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캄보디아 세관에서는 전자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상태나 철자 문제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적 후에는 서류 수정이 어려우므로, 선적지에서 수출되기 이전부터 초안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더불어 인증 수출자가 직접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캄보디아 세관 실무자에 따라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 통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지 세관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세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FTA 관세혜택에 대한 사후신청 절차가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신고 당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권장한다. 캄보디아 세관에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관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FTA 관세혜택 신청 절차】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후 수입통관 (일반적인 절차)



수입통관 후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사후신청 절차)



자료: KOTRA 프놈펜무역관

5) 호주

■ RCEP 협정문 후속 논의 현황

2022년 2월 17일 호주는 공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를 개최하여, RCEP 협정 내 노동권, 인권 및 환경 관련 조항이 포함되도록 자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것과 역내 국가들과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 권고에 따라 RCEP 협정 내 인권, 노동, 및 환경 관련 규범 관련 조항 추가를 위한 논의와 개선을 약속했다. 일부 RCEP 회원국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조항 포함에 대한 반대 기조에 있음에 따라, 호주 정부는 RCEP 협정의 특정 조항 추가에 대한 참여국과의 공동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호주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의 오랜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Decent Work Agenda) 및 더 나은 일자리(Better work) 프로그램의 주요 지지국으로 근로 조건 개선, 양성평등, 인권 증진 및 보호가 최우선 외교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소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 RCEP 활용 제도 현황

①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혜택

호주는 RCEP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혜택을 호주 공인 거래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19일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는 호주 공인 거래자(Australian Trusted Trader, ATT)²⁵ 대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혜택을 RCEP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RCEP 발효와 동시인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혜택이란, 호주 공인 거래 수입자가 RCEP 원산지 제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Declaration of Origin)를 제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단, 호주 공인 거래 수입자는 수입 상품 관련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해당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서류로는 제조 및 원재료 관련 생산지 증명, 비용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에, 호주 공인 거래자로 등록된 수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된 제품에 대해 RCEP 원산지 증명서임에도 관세를 납부한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초과 납부한 관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② RCEP 활용 정보 제공

호주 국경수비대는 원산지 및 통합화물 시스템 관련 RCEP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2022년 2월

25) 호주 공인 거래자(Australian Trusted Trader) 프로그램은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보안 기준에 충족하는 국제 비즈니스(기업)에 우대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로 관련 수출입 기업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자격(인증)을 제공

RCEP 통합화물 시스템을 통한 관세 우대 청구 가이드, 5월에 RCEP 원산지증명서 활용 가이드를 각각 발간했다. 또한 호주 FTA Portal 내에 RCEP 활용 정보도 추가되었다.

<FTA Portal 제공 정보>

- 자유무역협정 및 HS 코드에 대한 이해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FTA 관세 혜택 여부
- RCEP, MFN, FTA의 협정별 세율
- 품목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 수출하고자 하는 교역국의 해당 품목 수입 통계자료
-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양식 및 기재요령

■ 호주 통관 현황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부당한 지연 등 까다로운 절차²⁶⁾가 없으며, 통관 기간도 검역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10일 가량 소요된다.

주요 통관 절차로는 간소한 절차의 목록통관과 정식 수입통관인 일반통관으로 구분된다.

구분	내용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름
일반통관(정식수입신고)	호주로의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산업승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

① 호주의 전자식 통합 화물관리시스템

호주는 수입신고 시 통합 화물관리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 'ICS' 이하)을 이용해 전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ICS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고객 등록 양식인 B319 (Client Registration Form, Form B319)를 작성, ICS에 고객으로 등록해야 한다.

수입자가 호주 사업자등록번호인 ABN(Australian Business Register)을 가지고 있는 경우, ABN이 ICS의 고유 식별번호로 사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ICS가 고객에 고유 아이디를 부여한다.

수출입업자 및 면허를 보유한 관세 중개업자는 ICS를 통해 수출입 화물 상태 및 통관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26) 호주는 세관과 검역을 별도로 시행하여, 통관(세관)과 달리 검역은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로 관리된다.

② 호주 부가세 및 관련 기준

호주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모든 제품(일부 면세제품 제외)에는 10%의 부가세(Good Services Tax, 'GST' 이하)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기존 호주 시장에 대한 연매출 A\$75,000 미만인 기업에는 A\$1,000 이하의 상품에 대해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8년 7월 1일부 호주로 수입·유통·소비되는 A\$1,000 이하의 소액 수입 상품(Low Value Imported Goods, LVIG)에 대해서도 GST를 적용하게 된다. 호주 수출을 통한 연매출 A\$75,000 이상의 공급자는 호주 세무서에 GST 등록이 필요하며, 호주 구입자로부터 판매 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징수한 후 호주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를 보유한다. 이외 고급 자동차세 및 주류, 담배, 정유, 정유제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세금 등이 존재한다.

③ 관세법 법적 구속력

신리를 바탕으로 한 자율 신고제인 만큼 법규 위반 적발 시 이에 대한 패널티가 높은 편이다. 호주 국경수비대는 위반 고지 제도 가이드(Infringement Notice Scheme Guide)를 통해 관세법 위반 사례를 규제한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용 벌금이 상이하나 위반 고지 제도 가이드를 기준으로 2020~23년 기업대상 A\$4,995~A\$9,990, 개인대상 A\$444~A\$3,330의 벌금이 부과된다.

■ 호주 통관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기본적으로 수입상품은 The Commerce(Trade Description) Act 1905, The Commerce(Imports) Regulation 1940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 표기(Trade description)를 요구한다. 물품 표기란 수입되는 상품이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제조, 생산, 선정, 포장,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직간접적 설명을 의미하며, 하기 사항을 필히 포함해야 한다.

<물품표기 주요 사항>

- 눈에 띄고 읽기 쉽게 표기되어야 하며 영어로 작성
- 상품의 제조 및 생산 국가 명 포함
- 필요한 경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포함
(정확한 설명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의된 바 없으나, 상품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의미)

호주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할하는 관세법(Customs Acts), 검역법(Quarantine Acts)에 의거, 수입 통관이 일차적으로 진행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영어로 표기
- 상품 표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구입 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표기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전 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사전 수입 판매에 대한 문의 필요
- 저작권 소유자(또는 대행자)는 세관에 소유 상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음
- 음식물의 경우 호주 음식물 기준법에 따라(Food Standards Code) 필요한 라벨 작업 필요
- 호주 음식물 라벨에 표기되는 영양정보(Nutrition Information) 관련 유럽 방식을 사용
- 알러지 관련 유의사항 및 정보는 반드시 표기

2. 국가별 RCEP 활용 전략

1) 중국의 주요 양허 품목

■ 중국의 주요 양허 품목

양국은 기체결된 한-중 FTA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양허를 유지하였으나 일부 관심 품목에 대해 소폭 추가 양허하였다.(추가 양허 0.5% 수준)

- 선박용 부품(재질 및 용도에 따라 분류)
- 초음파 영상진단기, 전자 계측기, X선 기기 부품, 재료시험기,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등(90류)
- 음향기기 부품, 기타 컴퓨터 부품, TV 카메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84류, 85류)

■ 중국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의 관세 철폐 수준

중국은 RCEP을 적용함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 품목수 기준 86.0% (7,188개), 수입액 기준 83.2% (1,453.6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할 예정이며, 기체결된 한-중 FTA와 비교했을 때 품목수 기준 0.5%(41개), 수입액 기준 0.4%(7.5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20년 내로 추가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 양허 관세 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 달러)

구분	기체결 FTA (한-중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 철폐		최종 관세 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對한국	7,499 (90.6%)	149,336 (85.5%)	7,118 (86.0%)	145,359 (83.2%)	41 (0.5%)	747 (0.4%)	7,540 (91.1%)	150,083 (85.9%)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설명자료 참조

중국은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철강 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추가로 철폐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춰온 최혜국세율(MFN)과 발효된 지 8년째인 한-중 FTA 양허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RCEP을 통한 직접적인 관세 절감 혜택을 얻는 것보다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하거나 원산지 누적기준 및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의 활용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활용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2) 베트남의 주요 양허 품목

■ 베트남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

베트남은 기체결된 FTA²⁷⁾의 양허 품목수 대비 약 326개(3.4%)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기체결된 FTA와 RCEP을 통해 對한국 품목수 기준 약 8,824개(92.3%)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로 최종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 주류(22류)
- 합성수지, 기타 정밀화학원료, 비누 등(34류, 38류 등)
- 철 구조물, 철강선, 연결부품, 아연 강판 등(73류 등)
- 펌프, 전동기, 밸브, 경작 기계, 차단기, 공기조절기 등(84류, 85류)
- 철도 차량 부품, 자동차 부품 등(86류, 87류 등)

■ 베트남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의 관세 철폐 수준

베트남은 RCEP을 적용함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 품목수 기준 86.7%(8,284개), 수입액 기준 89.6%(162.2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로 철폐할 예정이다. 기체결된 FTA와 비교했을 때 품목수 기준 3.4%(326개), 수입액 기준 3.6%(6.5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로 추가 철폐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상품 양허 관세 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 달러)

구분	기체결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 철폐		최종 관세 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對한국	8,498 (88.9%)	16,446 (90.9%)	8,284 (86.7%)	16,218 (89.6%)	326 (3.4%)	651 (3.6%)	8,824 (92.3%)	17,098 (94.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설명자료 참조

베트남은 기체결된 FTA를 통해 많은 한국제품을 양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을 제외하고 공산품(324개)과 농산물(2개)에 대해 추가적으로 양허품목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기체결된 FTA 활용에 따른 실익이 크기 때문에 RCEP의 관세 활용 실익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의 저렴한 노동력에 역내 FTA 영역 확장에 따라 원산지 충족에 용이성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생산 기지화에 따른 자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실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7)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의미함.

3) 인도네시아의 주요 양허 품목

■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의 양허 품목수 대비 약 1,134개(11.3%)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가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기체결된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對한국 품목수 기준 약 9,368개(93.6%)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에 최종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 합성수지(39류)
- 완성 의류(61류, 62류), 가발(67류)
- 귀금속(71류)
- 철강 제품(73류)
- 기계류(84류)
- 자동차 부품(87류)

■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의 관세 철폐 수준

인도네시아는 RCEP을 적용함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 품목수 기준 89.5%(8,959개), 수입액 기준 80.3%(94.6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할 예정이며, 기체결된 FTA와 비교했을 때 품목수 기준 11.3%(1,134개), 수입액 기준 3.9%(4.6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20년 내로 추가 철폐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상품 양허 관세 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 달러)

구분	기체결 FTA (한-아세안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 철폐		최종 관세 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對한국	8,234 (82.2%)	10,106 (85.8%)	8,959 (89.5%)	9,460 (80.3%)	1,134 (11.3%)	458 (3.9%)	9,368 (93.6%)	10,563 (89.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설명자료 참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약 2억7400만 명)인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최근 K-제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출의 영향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한국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2022년 8월 30일 RCEP 비준을 완료했으므로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고 있어 타 국가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4) 필리핀의 주요 양허 품목

■ 필리핀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의 양허 품목수 대비 약 1,140개(11.6%)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기체결된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對한국 품목수 기준 약 9,023개(91.9%)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최종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 농수축산물(3류, 4류, 8류)
- 차·커피·마태의 조제품(21류)
- 기타 화학 물품(38류)
- 합성수지(39류)
- 차량(87류)

■ 필리핀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의 관세 철폐 수준

필리핀은 RCEP을 적용함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 품목수 기준 90.8%(8,918개), 수입액 기준 91.7%(44.9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할 예정이며, 기체결된 FTA와 비교했을 때 품목수 기준 11.6%(1,140개), 수입액 기준 33.4%(16.4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20년 내로 추가 철폐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상품 양허 관세 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 달러)

구분	기체결 FTA (한-아세안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 철폐		최종 관세 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對한국	7,883 (80.3%)	2,887 (59.0%)	8,918 (90.8%)	4,489 (91.7%)	1,140 (11.6%)	1,637 (33.4%)	9,023 (91.9%)	4,524 (92.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설명자료 참조

5) 호주의 주요 양허 품목

■ 호주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

호주는 한-호주 FTA에서 전 품목 관세 철폐를 한 바, RCEP에 따른 추가 관세 철폐는 없다. 다만, 한-호주 FTA 상 종량세율을 적용하는 포도주 및 시가 등 일부 품목이 RCEP에서 종가세율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호주의 對한국 주요 양허 품목의 관세 철폐 수준

호주는 기체결된 FTA에 따라 품목수 기준 100% 양허하고 있으므로 RCEP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 양허되는 품목은 부재하다. 다만, RCEP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 품목수 기준 98.3%(6,077개), 수입액 기준 98.6%(94.7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할 예정이다

【호주의 한국에 대한 상품 양허 관세 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 달러)

구분	기체결 FTA (한-호주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 철폐		최종 관세 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對한국	6,184 (100.0%)	9,603 (100.0%)	6,077 (98.3%)	9,465 (98.6%)	-	-	6,184 (100.0%)	9,603 (10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설명자료 참조

6) RCEP 활용 유의사항 - 관세차별 및 민감품목

■ 관세차별의 개념

관세차별이란 당사국이 각 회원국에 대한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며, RCEP 협정문 제2장 상품무역 제2.6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관세차별 대상은 수출국이 RCEP 회원국으로 수입 물품은 RCEP 협정 제3장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하며,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관세 양허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이다. 말레이시아는 해당 제도를 유보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현재 미발효 상태이다.

■ 관세차별 품목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

구분	정의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
민감품목	수입당사국이 협정 부속서 1 부록에 별도로 규정한 품목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요건(Domestic Value ad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이상의 부가가치(DV20)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미만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일반품목	수입당사국이 수출당사국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품목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제3.2조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상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협정 제3.2조 나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협정 제3.2조 나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된 경우: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민감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원재료가 RCEP 회원국 원산지인 원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의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아래의 최소 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이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 운송이나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RCEP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

- ㉔ 체질, 감별,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된 단순한 공정
- ㉕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 또는 인쇄
- ㉖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㉗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㉘ 동물의 도살
- ㉙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㉚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㉛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또는
- ㉜ ㄱ호부터 ㄷ 호까지 언급된 둘 이상 공정의 조합

상기 3)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분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 중 수입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해당 최고 세율을 적용하여 신청 가능 (원산지 국가명에 * 표시)
모든 RCEP 회원국 중 수입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해당 최고 세율을 적용하여 신청 가능 (원산지 국가명에 ** 표시)

■ 중국 민감품목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품목은 주로 제2류, 제39류, 제52류, 제68류, 제84류, 제85류, 제87류에 속하는 일부 품목이다. 민감품목에서 규정한 HS Code에 해당하는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인 DV 20%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소명서에 산출된 부가 가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국 민감품목의 HS Code, 품목명 및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RCEP 협정문 부속서 1의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민감품목 예시²⁸⁾】

HS 코드	품목명	기간
5205.22.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23.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계속
5205.24.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계속

2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RCEP 협정문 부속서 1,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중국

5205.26.00	--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27.00	--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28.00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3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 베트남 민감품목

베트남에서 정한 민감품목은 주로 제2류, 제9류, 제10류, 제16류, 제20류, 제22류, 제31류, 제38류, 제39류, 제68류, 제69류, 제70류, 제73류, 제84류, 제85류, 제87류에 속하는 일부 품목이다. 민감품목에서 규정한 HS Code에 해당하는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인 DV 20%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소명서에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베트남 민감품목의 HS Code, 품목명 및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RCEP 협정문 부속서 1의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민감품목 예시²⁹⁾】

HS 코드	품목명	기간
2205.10.20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1년차부터 계속
2205.90.10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2205.90.20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1년차부터 계속
2206.00.10	-- 사과술 또는 배술	1년차부터 계속
2206.00.30	-- 토디(toddy)	1년차부터 계속
2206.00.40	-- 샌디(shandy)	1년차부터 계속
2206.00.91	-- 그밖의 라이스 와인(rice wine) [약용 라이스 와인(rice wine)을 포함한다]	1년차부터 계속
2206.00.99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 태국 민감품목

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품목은 주로 제3류, 제5류, 제11류, 제20류, 제23류, 제35류, 제40류, 제48류, 제70류, 제72류, 제73류, 제84류, 제85류에 속하는 일부 품목이다. 민감품목에서 규정한 HS Code에 해당하는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인 DV 20% 기준을 충족하였

29)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RCEP 협정문 부속서 1,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베트남

RCEP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소명서에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태국 민감품목의 HS Code, 품목명 및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RCEP 협정문 부속서 1의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국 민감품목 예시³⁰⁾】

HS 코드	품목명	기간
7219.32.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1년차부터 계속
7219.33.00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년차부터 계속
7219.34.00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7219.35.00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1년차부터 계속
7219.90.0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7220.2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7220.20.9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7220.9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년차부터 계속

■ 일본 민감품목

일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품목은 주로 제8류, 제11류, 제18류, 제19류, 제20류, 제22류, 제41류, 제64류에 속하는 일부 품목이다. 민감품목에서 규정한 HS Code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인 DV 20%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소명서에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본 민감품목의 HS Code, 품목명 및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RCEP 협정문 부속서 1의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민감품목 예시³¹⁾】

HS 코드	품목명	기간
081190.110	(1) 파인애플	1년차부터 계속
081190.210	(1) 파인애플	1년차부터 계속
110423.101	1 콘플레이크 제조에 사용하는 것	1년차부터 계속
110423.090	2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RCEP 협정문 부속서 1,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태국

3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RCEP 협정문 부속서 1,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일본

110620.20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180632.220	(2) 기타	1년차부터 계속
190110.219	B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490.120	(2) 기타	1년차부터 계속
200490.211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1년차부터 계속
200560.101	1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개별 용기를 포함한 중량이 10킬로그램 이 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對일본 RCEP 활용전략

1. 일본의 수출입 현황	120
2.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122
- RCEP 활용 수출 유망산업	
- 다국누적 활용전략	
- 일본 중계무역 활용 전략	
3. 일본 현지 RCEP 활용 전략	147
- 최저세율 활용, 1국 다협정 전략	
- 지원제도 및 정책 정보 활용	
- 현지 RCEP(EPA) 활용 방법	

PART 4

對일본 RCEP 활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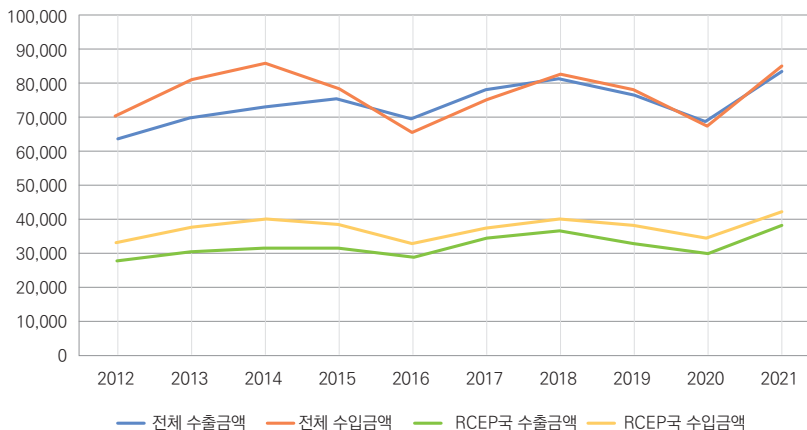
1. 일본의 수출입 현황

■ 일본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일본은 2021년 기준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번째 교역국이다. 일본의 대외무역은 2021년도 기준 수출은 8조3,092억 엔, 수입은 8조4,568억 엔이다. 일본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중국, 미국, 대만, 한국, 홍콩 등이며, 주요 수입상대국은 중국, 미국, 호주, 대만, 한국 등이다. 전체 수출입 대비 RCEP 국가에 대한 수출은 46.0%, 수입은 50.0%로 RCEP 회원국들과의 교역이 한국에 비해 활발한 편이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은 6.9%, 수입은 4.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본의 수출입 금액 추이】

(단위: 십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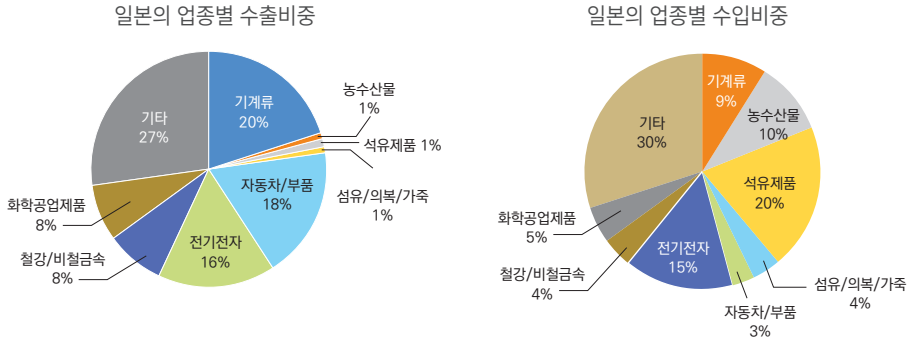


자료: K-stat, 해외무역통계 (검색일 : 2022.08.11.)

일본의 주요 수출 산업은 2021년도 기준 기계류,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순이며 이들이 일본 전체 수출금액의 69.1%를 차지한다. 주요 수입 산업은 동일연도 기준으로 석유제품, 전기전자, 농수산물, 기계류, 화학공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 수입금액의 58.8%를 차지한다.

【2021년 일본의 對세계 업종별 수출입】

(단위: %)



출처 : K-stat, 해외무역통계 (검색일 : 2022.09.13.)

■ 일본의 대외 무역의존도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12.7%, 수입 12.6%로 한국 31.2%, 28.4%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⁰¹⁾ LNG 등 천연자원을 포함한 1차 상품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021년 일본의 對세계 가공단계별 수출입】

(단위: 십억 엔, %)

	1차상품		중간재		최종재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1,067	16,907	42,575	34,126	33,023	30,167	76,666	81,199
비중	1.4%	20.8%	55.5%	42.0%	43.1%	37.2%	100%	100%

01) 한국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년 기준)

2. 對일본 RCEP 활용전략

1) RCEP 활용 수출 유망산업

■ 한국의 對일본 RCEP 활용 혜택 품목 현황

한국의 對일본 RCEP 활용 혜택 품목수는 2021년 기준 일본 전체 품목수 9,672개 기준 40.0%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의 첫 FTA인 만큼, 품목수 기준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RCEP 협정세율 혜택을 있는 품목의 일본 기준 對한국 수입액은 약 6,213억엔으로 일본의 對한국 전체 수입액의 18.9%로 실제 한국의 수출액이 높지는 않다. 다만, 협정 발효 이후인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품목수는 4.0%, 수출금액은 21.1%가 증가해 향후 활용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가 있는 품목 중 상반기 기준 수출금액이 증가했거나, 증가율이 큰 산업 위주로 주목해야할 산업과 품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對일본 주요 관세별 혜택 품목 수】

(단위: 백만 ¥, 품목수)

산업구분	2021 수출실적	관세실익 적용 대상 품목수				
		RCEP 협정세율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비교불가	총합계
섬유/의복/가죽	45,636	1,707	18	105	5	1,835
화학공업제품	290,956	740	27	321	-	1,088
농수산물	272,753	675	562	1,089	129	2,455
플라스틱/고무	199,370	187	35	307	5	534
철강/비철금속	482,342	135	3	529	12	679
종이/목재	30,474	85	30	402	7	524
비금속제품	31,542	67	11	98	-	176
유리/도자제품	31,818	62	-	110	-	172
석유제품	538,529	38	46	52	-	136
귀금속	213,009	22	-	55	-	77
신발/모자류	3,021	22	26	79	-	127
생활용품	10,277	20	3	97	-	120

화 장 품	64,181	17	-	29	-	46
토 석 류 / 소 금	3,796	8	2	62	-	72
전 기 전 자	466,863	7	25	328	-	360
의료/정밀기기	76,590	6	2	172	-	180
의 료 용 품	73,197	6	7	49	-	62
자 동 차 / 부 품	50,533	1	-	113	-	114
광 / 슬 랙	14,973	-	-	40	-	40
기 계 류	372,573	-	-	614	-	614
선 박	6,320	-	-	26	-	26
철 도 / 부 품	875	-	-	23	-	23
항공기 / 부품	11	-	-	28	-	28
기 타	6,505	67	11	106	-	184
총 합 계	3,286,143	3,872	808	4,834	158	9,672

주1: RCEP 협정세율은 발효 2년차 세율 적용

주2: 비교불가 품목은 중량과 가격에 대한 세율이 병기되어 있는 등 단순비교가 어려워 제외

주3: 잠정세율은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관세율로 간주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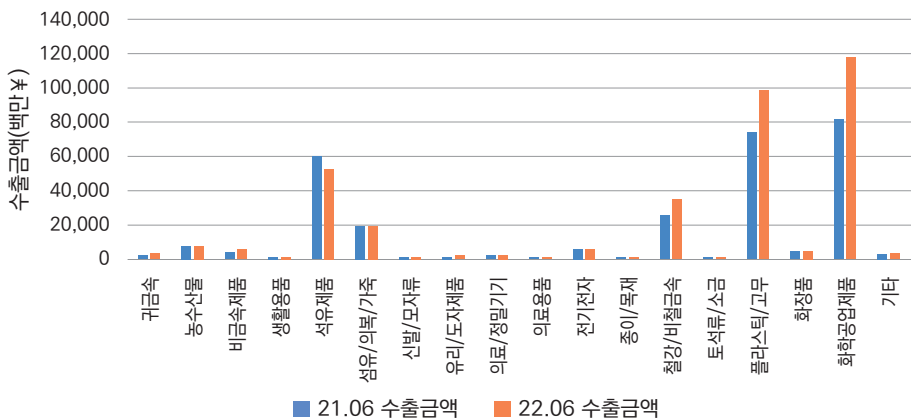
출처: 일본관세청 관세율표(2022년 4월 1일자 기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검색일:2022.09.22.)

■ 對일본 RCEP 활용 유망산업

한국의 對일본 RCEP 활용 유망산업은 수출실적 증감 및 신규 수출품목 여부를 감안하여 농수산물, 섬유/의복/가죽, 플라스틱/고무, 화학공업 산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산업은 RCEP 관세혜택이 있는 동시에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으로, 실제 RCEP 활용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것으로 보인다.

【RCEP 활용 유망 산업 수출실적('22.上)】

(단위: 백만 ¥)



주: RCEP 협정세율은 발효 2년차 세율 적용

출처: 일본관세청 관세율표(2022년 4월 1일자 기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검색일:2022.09.22.)

① 수출실적 기준

2021년 기준 수출실적이 있던 1,292개 품목 중에서 관세혜택이 있으면서, 활용 품목수가 다양한 산업 위주로 유망 산업을 선정했다.

【유망산업】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철강/비철금속, 섬유/의복/가죽, 농수산물, 석유제품

일본 HS Code 9자리 기준 섬유/의복/가죽 523개 품목, 화학공업제품 289개 품목, 플라스틱/고무 137개 품목, 철강/비철금속 87개 품목, 농수산물 56개 품목으로 활용 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수출실적 기준으로 화학공업제품 1,822억엔, 플라스틱/고무 1,572억엔, 석유제품 1,304억엔, 철강/비철금속 561억엔, 섬유/의복/가죽 411억엔 순으로 많았다. 상위 5개 업종은 한국의 對일본 RCEP 협정 실익 품목 대상 전체 수출금액 중 9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증감률 측면에서, 2022년도 6월 수출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의류용품은 350.00%, 화학공업제품은 39.33%, 철강/비철금속은 36.86%, 생활용품은 32.25%, 플라스틱/고무는 27.38% 증가했다. RCEP 협정은 발효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수출실적 등의 증감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RCEP 협정 발효 이후 일본의 對한국 수입실적(=한국의 對일본 수출)과 협정 실익이 있는 품목의 수출실적 등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RCEP이 일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② 신규수출 기준

2021년 기준 수출실적이 없었던 품목들 중에서 2022년도 6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출실적이 신규로 발생한 품목을 유망 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산업의 품목들은 RCEP으로 인한 관세혜택이 존재하는 동시에 신규수출이 발생한 품목으로 무역창출 효과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유망산업】

섬유/의복/가죽,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농수산물

품목 수 기준으로 섬유/의복/가죽 73개, 화학공업제품 21개, 농수산물 10개, 플라스틱/고무 3개 등으로 신규 수출이 많았다. 수출실적 기준으로는 플라스틱/고무 32억엔, 화학공업제품 8억엔, 섬유/의복/가죽 3.9억엔, 생활용품 0.77억엔, 농수산물 0.75억엔 순으로 많았다.

02) 일본관세청 통계에서 1,000엔 이하의 수출입 품목은 별도 통계값이 존재하지 않음

【한국의 對일본 RCEP 활용 유망 수출 품목】

(단위: 백만 ¥, 품목수, %)

업종	수출실적 기준					신규수출	
	품목수 (21.12)	수출실적 (21.12)	수출실적 (21.06)	수출실적 (22.06)	전년동기 대비증감율	품목수 (22.06)	수출실적 (22.06)
귀금속	17	4,309	2,179	2,459	12.85	3	2
농수산물	56	11,333	4,688	4,991	6.46	10	75
비금속제품	38	7,661	3,810	4,752	24.72	3	48
생활용품	13	1,341	741	980	32.25	2	77
석유제품	12	130,394	60,633	51,604	-14.89	-	-
섬유/의복/가죽	523	41,119	21,308	20,900	-1.92	73	395
신발/모자류	11	573	284	308	8.45	2	1
유리/도자제품	40	2,868	1,477	1,648	11.58	2	5
의료/정밀기기	6	3,136	1,732	1,628	-6	-	-
의료용품	1	11	2	9	350	-	-
전기전자	6	8,575	4,218	4,757	12.78	-	-
종이/목재	12	119	43	26	-39.53	1	3
철강/비철금속	87	56,133	25,516	34,922	36.86	2	4
토석류/소금	6	451	211	215	1.9	-	-
플라스틱/고무	137	157,174	74,971	95,872	27.88	3	3,205
화장품	6	8,613	4,287	4,775	11.38	1	1
화학공업제품	289	182,224	83,092	115,771	39.33	21	834
기타	32	5,227	2,593	3,030	16.85	2	1
총합계	1,292	621,260	291,784	348,646	19.49	125	4,650

출처: 일본 관세청 관세율표(2022년 4월 1일자 기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검색일:2022.09.22.)

주1: RCEP협정세율은 발효 2년차 세율 적용

주2: 신규수출은 `21.12월 기준 일본의 대한민국 수입액이 0에서 `22.6월 양수로 증가한 품목을 추출

주3: 협정실의품목 대상 기계류, 선박,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등은 수출실적 없음

③ 관세 혜택 기준

【유망산업】

섬유/의복/가죽, 화학공업제품, 농수산물, 철강/비철금속, 종이/목재

RCEP 관세혜택 품목 중 일본의 WTO 협정세율 및 일반관세 중 낮은 관세와 비교시 관세 혜택 품목이 많은 산업은 섬유/의복/가죽, 화학공업 제품, 농수산물, 철강/비철금속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MFN 대비 RCEP 활용시 관세 혜택 현황】

(단위:개수)

	섬유/의복/가죽	화학공업제품	농수산물	철강/비철금속	종이/목재	플라스틱/고무	기타	합계
10%p 이상	25	-	17	-	1	-	-	43
5~10%p 미만	788	28	65	7	25	-	45	958
1~5%p 미만	492	482	435	77	49	7	173	1,715
0~1%p 미만	384	222	123	49	10	175	116	1,079
총합계	1,689	732	640	133	85	182	334	3,795

출처: 일본관세청 관세율표(2022년 4월 1일자 기준, RCEP 2년차 관세율 기준 비교)

주: 관세를 형태로 비교 가능한 품목만 세율 차이 계산(MFN 관세율 - RCEP 관세율)

혜택 구간별로는 MFN 관세 대비 10%p 이상 관세혜택의 경우 섬유/의복/가죽, 농수산물이 순으로 많았으며, 5~10%p 혜택 구간은 섬유/의복/가죽, 농수산물, 화학공업 순으로 많았다. 품목수 기준 가장 많은 품목들은 1~5%p 구간에 총 1,715개 품목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발효 연차가 높아져 관세 혜택이 커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RCEP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유망산업인 ①농수산물, ②섬유/의복/가죽, ③화학공업, ④플라스틱/고무 산업 중 예시로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품목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품목은 부록 5 참고

■ 농수산 가공식품 제품 예시 : HS 2208.90.129 증류주(Spirits)

① 트렌디한 과일향이 첨가된 알코올 음료와 희석식 소주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회식 등 음주 문화가 줄어든 것에 더해,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상을 신조어로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라고 한다.

최근 알코올을 대체할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주류시장에서는 저알코올·무알코올 음료가 인기를 얻으며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주류업계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알코올·저알코올 음료, 과일향이 가미된 알코올 음료 등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종(酒種)인 증류주는 희석식 소주이다. 희석식 소주는 카사바, 감자 등의 곡물을 발효시킨 후 연속 증류하여 얻어진 95%이상 고순도 에탄올인 주정을 원료로 하며, 이러한 주정에 물, 그리고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하여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한 희석식 소주의 기본 도

수는 16도에서 25도까지로 다소 높으나 무알코올·저알코올 음료가 인기를 얻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도수를 대폭 낮추고, 과일향과 탄산을 첨가하여 저도의 과일향 소주를 즐기는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아울러 일본 내 한류열풍이 다시 살아나면서 일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소주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별 하이틴진로 소주 수출실적】

(단위:만 달러)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성장률 (전년대비)
일본, 대양주	1,572	2,053	2,672	30.1%
동남아시아	1,733	2,150	2,688	25.0%
미주	1,299	1,320	1,944	47.3%
중화아시아	1,038	1,733	2,558	47.6%
유럽, 아프리카	219	231	340	46.9%
합계	5,862	7,486	10,200	36.3%

출처: 하이틴진로

한국의 對일본 수출실적 중 상위품목인 HS 2208.90.129(일본 현지 HS 최종단위 기준)에는 에틸 알코올에 과당, 향료, 물 등을 혼합해, 탄산가스를 첨가한 증류주가 품목분류⁰³⁾되며, 우리나라의 희석식의 소주 또한 해당 HS Code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일본의 증류주 HS CODE 유권해석사례】

기준연도	2020
참조번호	120003933
시행일자	2020-12-25
결정세번	2208.90.129
품명	Spirit
물품설명	A mixture of ethyl alcohol with fructose, fragrance, water, etc. and carbon dioxide gas added Manufacturing method: Mixing raw materials / syrup preparation → filtration → filling storage tank → filling / stirring (stirring) in mixer → carbon dioxide gas addition / penetration → Filtration → Filling into cans → Weighing → Heat sterilization → Weighing → Packaging Raw materials: Ethyl alcohol, fructose, glycerin, carbon dioxide, fragrance, water, etc. Properties: Alcohol content 4% by volume, extract content 2% or more and less than 5%, carbon dioxide gas pressure 49 kPa or more Use: Drinking packaging: 330 ml / can x 24 / carton
분류사유	This product is distilled liquor and is classified as described abov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2.08 of the tariff rate table. Regarding the liquor tax, 80,000 yen / KL is applied as other sparkling wines (liqueurs) among the sparkling wines. * Tariff rates other than the basic tax rates stated in this response are applicable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 Margins below ---
세관	Yokohama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품목분류 외국사례(일본) 영문번역

03) 수입국 최종단위 HS CODE는 현지 최종적인 확인 필요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전세계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관련 일본시장 진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희석식의 소주가 분류 될 것으로 판단되는 HS 2208.90.129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4개년 對일본 수출액 및 수출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對일본 HS 2208.90.129 수출액 및 수출추이】

(단위: 1,000円)

HS Code	수출 및 증감	2019	2020	2021	2022.上
2208.90.129	수출금액	5,252,482	4,283,894	4,286,475	2,041,750
	증감율	-4.16	-18.44%	0.06%	-3.55% *전년도 동기대비

출처 : 일본재무성무역통계 (검색일 : 2022.10.19.)

최근 4개년 상반기 기준 對일본 수출 추이는 2019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군 하락에 비해서 그 감소율은 낮은 편이다. 향후 코로나19로 변화된 무알코올, 저알코올 소비 트렌드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완화로 음주 소비가 증가한다면, 희석식 소주의 시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② 한국의 對일본 수출 시 희석식 소주의 관세 실익 검토

추가로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최초의 FTA가 RCEP으로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활용실익을 확인하기 위해 HS Code 2208.90.129의 일본 수입 관세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WTO협정세율 16%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실행관세율)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희석식 소주에 대한 RCEP 협정세율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14.5%이므로 1.5%의 활용실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과 체결된 FTA는 현재 RCEP 하나밖에 없고 일본의 RCEP 양허표 상 스케줄에 따라 HS 2208.90.129에 대해서는 발효 21년차부터 0%의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16%의 활용실익이 있다. 따라서 희석식 소주를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장기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RCEP 활용을 위한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對한국 HS 2208.90.129 RCEP 양허표】

HS Code	기준세율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	발효 21년차
2208.90.129	16.0%	15.2%	14.5%	13.7%	...	Free

■ 섬유산업 제품 예시 : HS 5603.94.220 부직포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150g/m² 이상)

① 자동차부터 마스크까지, 산업 전 방위 핵심 소재 부직포

부직포는 열과 수지를 이용하여 직포공정을 거치지 않고 평행 또는 부정방향으로 배열하고 결합하여 펠트모양으로 만든 섬유이다. 초기에는 솜, 비스코스레이온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1950년대부터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부직포는 섬유가 서로 얽히도록 기계적인 처리를 하여 만든 원단이기 때문에 공업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⁰⁴⁾

04) texeye.net

세계 부직포 소재 시장은 2020년 약 480억 달러 규모로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7.3%로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부직포 소재의 주요 용도는 자동차, 필터, 위생, 실내장식품, 와이퍼, 건설, 직물, 헬스케어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분야(수송,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토목/건축 등)의 핵심 부품·소재에 부직포가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적용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산업 핵심 소재로서의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⁰⁵⁾

【표4_부직포 세계시장점유율 국제비교】

(단위: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규모			세계시장점유율			연평균증가율 (2010~2019)
		2010	2015	2019	2010	2015	2019	
1	중국	1,085	2,487	3,114	9.2	17.1	18.6	12.4
2	독일	1,836	1,904	2,180	15.2	13.1	13.0	1.9
3	미국	1,589	1,806	1,863	13.5	12.4	11.1	1.8
4	이탈리아	987	1,075	1,232	8.4	7.4	7.4	2.5
10	대만	184	378	388	1.6	2.6	2.3	8.7
13	한국	415	401	370	3.5	2.8	2.2	-1.3
세계		11,798	14,504	16,722	100.0	100.0	100.0	4.0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필터 역할을 하는 멜트 블로운 부직포와 같은 특수한 기능의 부직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또 원료 선택의 무제한성, 공정의 고속화 및 생략 가능성, 섬유 간의 집합과 복합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부직포 소재 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분야라고 할 수 있다.⁰⁶⁾

【한국의 對일본 HS 5603.94.220 수출액 추이】

(단위: 1,000円)

HS Code	수출 및 증감	2019	2020	2021	2022.上
5603.94.220	수출금액	61,660	42,788	27,196	78,367
	증감율	-31.16	-30.61	-36.44	5.39 *전년도 동기대비

출처 : 일본재무성무역통계 (검색일 : 2022.10.19.)

부직포 HS 5603.94.220에 대한 최근 4개년 對일본 수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직포 수출 규제 등의 영향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RCEP의 발효 시점인 2022년 상반기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직포의 다양한 용도를 반영하여 한국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고성능 용융방사형 부직포 등의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체 지원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부직포 산업계의 현실이다.

05) 한국 산업기술 평가 관리원 (2020년)

06) KIE 산업경제분석 (2020) 국내부직포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② 한국의 對일본 수출 시 부직포의 관세 실익 검토

HS 5603.94.220 의 일본 내 수입 시 적용 관세율은 WTO 협정세율 4.3%이며 2022년 10월 기준으로 RCEP 협정세율 0%로 4.3%의 활용실익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對한국 HS 5603.94.220 RCEP 양허표】

HS Code	기준세율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
5603.94.220	4.3%	0%	0%	0%	...

동일한 제5603.94호의 부직포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미 FTA를 적용하여 한국산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직포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증빙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활용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과의 RCEP에서는 원재료의 2단위 세번변경 기준만 충족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對일본 수출 시 관세율의 실익을 보다 쉽게 일본 수입자에게 어필할 수 있게 되었다.

■ 화학공업 제품 예시 : HS 2841.90.090 양극재(Cathode Material)

① 이차전지 시장 성장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 이차전지는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핵심 소재로,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차전지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도 이 분야 선두국가로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단위:GWh)

순위	제조사명	2021. 1~7	2022. 1~7	성장률	2021 점유율	2022 점유율
1	CATL	39.7	83.6	110.6	29.0%	34.7%
2	LG에너지솔루션	31.5	34.3	9.0	23.0%	14.2%
3	BYD	10.0	30.3	204.7	7.3%	12.6%
4	파나소닉	19.9	20.8	4.9	14.5%	8.7%
5	SK 온	7.6	15.8	107.8	5.5%	6.6%
6	삼성SDI	7.8	12.2	56.3	5.7%	5.1%
7	CALB	4.1	10.0	146.8	3.0%	4.2%
8	Guoxuan	2.7	7.0	163.4	2.0%	2.9%
9	Sunwoda	0.5	3.9	631.1	0.4%	1.6%
10	SVOLT	1.2	3.2	159.0	0.9%	1.3%
	기타	12.0	19.6	64.4	8.7%	8.2%

합계	136.8	240.8	76.0	100.0%	100.0%
----	-------	-------	------	--------	--------

* 판매량이 집계되지 않은 일부 국가가 있으며, 2021년 자료는 집계되지 않은 국가 자료를 제외함.
출처 : 2022년 8월 Global EVs and Battery Monthly Tracker, SNE리서치

이차전지는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일차전지와는 다르게 충전 과정을 통해 다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이러한 이차전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지를 리튬이온배터리라고 부른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양극재(Cathode Material)와 음극재(Anode Materials)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주요 원재료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양극과 음극사이에서 리튬이온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전해질,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해주는 분리막을 포함하여 4대 구성요소가 있다.

한국의 對일본 수출실적 중 상위품목인 HS 2841.90.090(일본 현지 HS 최종단위 기준)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재가 품목분류⁷⁾되며, 양극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로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양극재의 기본형은 리튬·코발트·옥사이드(LCO)인데 이는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장착되는 소형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 하지만 주로 전기자동차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에 장착되는 중·대형 배터리에 활용되는 양극재는 기본형인 리튬·코발트·옥사이드(LCO)에 니켈·코발트·망간(NCM)이 추가된 LNCMO이다.

【참고. 일본의 양극재 HS CODE 유권해석사례】

기준연도	2017
참조번호	117000566
시행일자	2017-02-13
결정세번	2841.90.090
품명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composite oxide
물품설명	Production method of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composite oxide: Mixture of lithium raw material and nickel cobalt manganese raw material and firing Property: Black powder Application: Cathode material for lithium ion battery Packing: 450 kg / aluminum bag and plastic bag Double structure
분류사유	This product is a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composite oxide, and as a chemically single oxometallate, it is used as a single oxometallate in the tariff schedule of item 28 clause 1 (a), item 28.41 of the same table and the table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paragraph 28.41, it is classified as above. * The tariff rates of the agreements and preferences stated in this response are applicable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세관	Yokohama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품목분류 외국사례(일본) 영문번역

전세계 양극재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하기는 하나, 한국 또한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양극재 생산 업체인 에코프로비엠·LG화학·포스코케미칼·엘엔에프 등의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있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07) 수입국 최종단위 HS CODE는 현지 최종적인 확인 필요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전세계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양극재가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HS 2841.90.090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4개년 對일본 수출액 및 수출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對일본 HS 2841.90.090 수출액 및 수출추이】

(단위: 1,000円)

HS Code	수출 및 증감	2019	2020	2021	2022.上
2841.90.090	수출금액	41,347,464	22,799,018	21,769,528	19,549,365
	증감율	-32.15	-44.86	-4.52	100.67 *전년도 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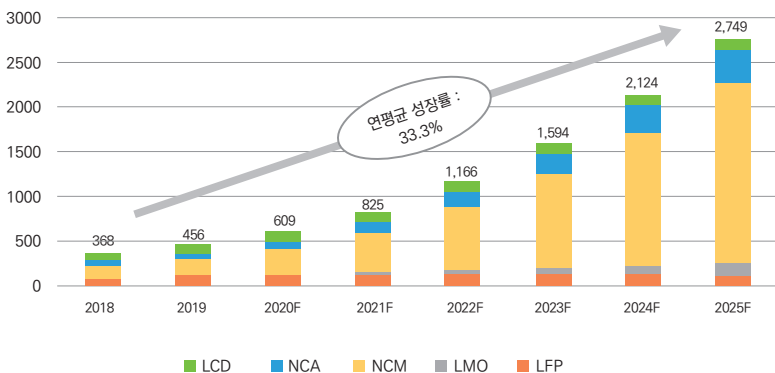
출처 : 일본재무성무역통계 (검색일 : 2022.10.19.)

상기 표와 같이 HS 2841.90.090에 대한 최근 4개년 對일본 추이를 살펴보니 2019년 대비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력 감소 및 RCEP의 체결로 인해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형 배터리에 대한 에너지 밀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대형 배터리가 장착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장착되는 대형 배터리에 저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 리튬이온배터리 시장뿐만 아니라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인 양극재 시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재 시장 수요 전망】

(단위:k Ton)



출처 : 2020년 리튬이온 이차전지 양극재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보고서, SNE리서치

② 한국의 對일본 수출 시 양극재 관세 실익 검토

對일본 수출에서 RCEP 활용실익을 확인하기 위해 HS 2841.90.090의 일본 수입 관세율을 살펴보고

자 한다. WTO협정세율 3.3%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실행관세율)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양극재에 대한 RCEP 협정세율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7%이므로 0.6%의 활용실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과 체결된 FTA는 현재 RCEP 하나밖에 없고, 일본의 RCEP 양허표 상 스케줄에 따라 HS 2841.90.090에 대해서는 발효 11년차부터 0%의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3.3%의 활용실익이 있다. 따라서 양극재를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장기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RCEP 활용을 위한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對한국 HS 2841.90.090 RCEP 양허표】

HS Code	기준세율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	발효 11년차
2841.90.090	3.3%	3.0%	2.7%	2.4%	...	Free

■ 플라스틱 산업 제품 예시 : HS 3911.10.010 석유수지, 쿠마론, 인덴, 쿠마론-인덴수지, 폴리테르펜(일차제품 형태)

① 석유화학 생산강국 한국, 친환경 합성수지 제품까지 수출

석유화학은 자동차, 섬유, 가전, 건설 등 수요산업의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사업이다. 이러한 석유화학의 3대 품목군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로 대표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의 규모를 통상적으로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틸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생산능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중국, 사우디를 잇는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 강국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⁰⁸⁾

【주요국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천톤)】

순위		2018		2019		2020		2021				
0	세 계	177,598	(100)	세 계	183,555	(100)	세 계	195,088	(100)	세 계	204,262	(100)
1	미 국	34,067	(19.2)	미 국	37,400	(2.4)	미 국	40,933	(21)	미 국	42,183	(20.7)
2	중 국	25,638	(14.4)	중 국	26,908	(14.7)	중 국	32,179	(16.5)	중 국	37,143	(18.2)
3	사우디	17,685	(10.0)	사우디	17,685	(9.6)	사우디	17,685	(9.1)	사우디	17,685	(8.7)
4	한 국	9,255	(5.2)	한 국	9,816	(5.3)	한 국	10,151	(5.2)	한 국	12,750	(6.2)
5	인 도	7,470	(4.2)	인 도	7,470	(4.1)	인 도	7,470	(3.8)	인 도	7,797	(3.8)
6	이 란	7,339	(4.1)	이 란	7,339	(4.0)	이 란	7,339	(3.8)	이 란	7,770	(3.8)
7	일 본	6,503	(3.7)	일 본	6,505	(3.5)	일 본	6,505	(3.3)	일 본	6,505	(3.2)
8	독 일	5,723	(3.2)	독 일	5,723	(3.1)	독 일	5,723	(2.9)	독 일	5,762	(2.8)
9	캐나다	5,345	(3.0)	캐나다	5,345	(2.9)	캐나다	5,345	(2.7)	캐나다	5,723	(2.8)
10	태 국	4,611	(2.6)	태 국	4,611	(2.5)	태 국	4,611	(2.4)	태 국	5,447	(2.7)

**자료출처 : 한국 석유화학협회 (KPIA), 한국무역협회(KITA)

2021년에는 합성수지산업에서 국내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출여력 증대 및 석탄난 등에 따

08) [e-나라지표] 석유화학산업 동향(기본통계표 : 석유화학산업 동향 (연,1989~2021))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른 해외 설비가동 차질 수혜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973만 톤을 기록하여 여전히 석유화학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합성수지산업의 중요 수출 품목인 석유수지는 도로 마킹, 포장테이프, 도료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이다. 석유수지는 안정적인 점착력과 접착성질, 적당한 내열성을 지니고 있어 천연수지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타이어, 호스 등 고무제품과 페인트, 인쇄용 잉크, 도로용 페인트, 열융용 접착제, 감압 접착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생용, 식품용 접착제, 내열, 내광, 냄새, 독성이 해결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는 민감한 용도의 경우 고품질과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수소를 첨가하여 안정화 처리가 요구되며, 이를 수소첨가 석유수지라고 한다.⁰⁹⁾ 이러한 첨단 기술의 합성수지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對일본 수출 상위 품목(HS3910.11.010 일본 현지 HS 최종 단위 기준)의 수출 확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2월 1일 일본과의 RCEP 체결 이후 일본시장으로의 진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HS 3911.10.010 석유수지, 쿠마론, 인덴, 쿠마론-인덴수지, 폴리테르펜(일차제품 형태 primary form)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 4개년 對일본 수출액 및 수출추이를 중국의 對일본 수출액과 비교하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과 중국의 對일본 HS 3911.10.010 수출액 추이】

(단위: 1,000円)

HS Code	국가	수출 및 증감	2019	2020	2021	2022.上
3911.10.010	한국	수출금액	598,175	481,267	583,317	760,551
		증감율	-40.57	-19.54	21.20%	366.85%
	중국	수출금액	827,016	759,343	980,997	586,243
		증감율	-8.45	-8.18	29.19%	27.18%
중국 대비 한국의 對일본 수출액			-228,841	-278,076	-397,680	174,308

주 : 2022.上 수출금액 증감율은 전년도 동기대비 증감율

출처 : 일본재무성무역통계 (검색일 : 2022.10.19.)

HS 3911.10.010에 대한 최근 4개년 對일본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RCEP의 발효 시점인 2022년 상반기를 이후 가파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한국의 對일본 수출 시 석유수지 제품 관세 실익 검토

對일본 수출에서 HS Code 3911.10.010의 기준 관세율은 WTO 협정세율 2.8%, RCEP 발효 2년차 기준 2.3%로 0.5%의 활용실익을 얻게 되며 매년 0.3%씩 추가하여 활용실익을 얻게 된다.

HS3911.10호는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는 세계 수출 1위 상품이었던 품목이었으나 2018년 이후 중

09) [기술과 혁신] 2022년 5/6월호 VOL.453 수첨석유수지 시장 <http://webzine.koita.or.kr>

국에 추월당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국 16.7%, 중국 18.1%로 역전되었고, 2020년도까지 세계수출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1위 품목 77개 중 화학제품이 29개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석유수지 제품인 HS3911.10호의 일본 수출증가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¹⁰⁾¹¹⁾

여기에 더하여 중국도 일본으로 수출 시 한국과 동일한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음에도 최근 對일본 수출 현황에서 한국의 수출액이 중국 수출액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RCEP 협정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석유수지 제품의 일본 수출 시장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일본의 對한국 및 중국의 HS 3911.10.010 RCEP 양허표】

HS Code	기준세율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	발효 11년차
3911.10.010	2.8%	2.5%	2.3%	2.0%	...	Free

2) 다국누적 활용전략

RCEP 누적 활용 모델은 개별기업의 생산 구조, 거래 상황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

■ 양자 및 다자누적 활용 전략

① 양자 누적

원재료 투입 내역(이하 ‘BOM’)이 비교적 단순하고 주요 원소재의 수입가격, 품질, 조달 용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제품 수입당사국인 일본으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재료 수입이 가능하다면 재료의 수입 단계에서부터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재료 누적과 함께 충분한 생산공정을 충족하는 경우 RCEP 원산지증명이 가능할 것이며, RCEP을 활용함으로써 일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양자 누적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로서 기존 일본과 해외임가공 거래를 해오던 우리나라 임가공업체 및 일본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생산업체 등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모델이기도 하다.

10) KITA 국제통상연구원 2020년 14호 세계수출시장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 강성은연구원

11) KITA국제통상연구원 2022년 3호 세계수출시장1위 품목으로 본 우리수출의 경쟁력 현황(2020년 기준): 김이린 연구원 경혜선 수석연구원

【[예시 그림1] 양자 누적 활용예시】



② 다자 누적

RCEP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협정이므로 발효 요건과 원산지 규정 충족요건 등을 갖추었다면 기본적으로 다자 누적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 현재 기준으로 15개 회원국 전부가 발효되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주기적으로 회원국의 RCEP 발효 현황을 최신화하여 원재료 조달이 가능한 회원국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관세차별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이므로 같은 물품이라도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다. 따라서, 원재료 수입 시 소싱처가 다양한 경우 관세절감 폭이 높은 국가의 원재료를 활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그림2] 다자 누적 활용예시】



■ RCEP 누적 활용 사례

RCEP 다자 누적이 대표적 효과로서 역내 확장을 통한 원산지물품 전환 및 RCEP 대표적 제한사항인 관세차별 리스크를 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사례화

① CASE 1. 다자누적으로 역내 확장을 통한 원산지물품 전환

가) 거래구조 및 BOM 분석

수출물품은 단열벽지(HS CODE 제3921.19호)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종 생산 후 일본으로 수출하며 일본 현지세율은 WTO 협정세율 4.5%, 한국산 물품인 경우 RCEP 특혜세율 3.7%¹²⁾가 적용된다.

단열벽지의 경우 폴리 에틸렌폼을 중국에서 수입하며, 수입 시 RCEP 원산지증명서(C/O)를 수취하였다. 국내에서 이형지, 은박시트, 인쇄벽지를 매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충분한 가공 이상의 가공을 수행한 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단열벽지의 RCEP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선택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RVC 40%)'이다.

[CASE 1.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입관세율]

HS CODE(HSK 2012)	제3921.19호 (단열벽지)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40%)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②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일본 수입관세율 (제3921.19호)	■ WTO협정세율 : 4.5% ■ RCEP : 3.7%

【CASE 1. BOM 분석 - 완제품 : 단열벽지 (HS 3921.19호)】

원재료	HS CODE	원산지	입증	가치
이형지	392049	미상	거래명세서	6
인쇄벽지	392049	미상	거래명세서	14
은박PET시트	760612	미상	거래명세서	8
폴리에틸렌폼	392119	중국(역내산)	RCEP C/O(누적)	35
우리나라 수행 공정 : 개별 구성 부품 결합 등 충분한 공정			FOB 금액	100

나) RCEP 원산지 판정

세번변경기준(CTH)으로 원산지를 판정 시, 완제품과 HS CODE가 동일한 원자재인 폴리에틸렌폼(제 3921.19호)에 대하여 RCEP C/O를 수취하였으므로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원산지 판정 시 폴리에틸렌폼을 RCEP CO로 누적하여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RVC 72%)

12) RCEP 특혜관세율은 2022년 발효 2년차 기준이며, 발효 11년차에는 무관세(0%)가 적용된다.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판정 시(RVC 72%)】

부가가치기준 계산공식(RVC)	누적기준을 적용한 경우 (RVC 72%)	누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RVC 37%)
$RVC(\%) = \frac{FOB - \text{비원산지가격}}{FOB}$	$RVC72\% = \frac{100 - 28}{100}$	$RVC37\% = \frac{100 - 63}{100}$

다) 시사점

RCEP 협정을 활용함에 따라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에 대하여 다국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었다.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 물품 수입 시 RCEP C/O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자료 근거마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CASE 2. 누적을 통해 관세차별물품을 유리한 원산지로 전환

가) 거래구조 및 BOM 분석

수출물품은 남성용신발(HS 제6403.99호)로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제작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며, 한국에서는 제품라벨 작업 및 포장장을 거쳐 일본으로 최종 판매된다. 일본 현지 WTO 협정세율은 30% 또는 4,300yen/pair(2개의 세율 중 높은 관세를 부과)이며, RCEP 특혜세율 (중국 21.7%, 한국 적용제)이 적용된다. 일본은 관세차별국가로서 수출국별 관세율이 상이하며, 해당물품은 민감품목¹³⁾이다.

【CASE 2.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입관세율】

HS CODE	WTO 협정관세	RCEP(한국)	RCEP(중국)
제6403.99호 일본 수입 관세율	30% 또는 4,300 yen/pair, whichever is the greater	적용제외	19.5%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40)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②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CASE 2. BOM 분석】 남성용 신발(제6403.99호)

※ 중국 제조물품 BOM :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수입 시 RCEP C/O 발급

원재료	HS CODE	원산지	가치
소가죽 스플릿	410799	중국	40
밀창	640610	중국	10
중창	560394	베트남	5
컵인솔	640690	인도네시아	5
직조테이프	630790	베트남	2
왁스신발끈	630790	미얀마	2
FOB 금액			100

13) 협정 부속서1 제2.6조(관세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 한국 가공공정 시 발생하는 BOM 및 제조공정

원재료	HS CODE	원산지	입증	가치
남성용 신발	640399	중국(역내산)	RCEP C/O(누적)	100
라벨지	630790	베트남	거래명세서	1
골판지 박스	481910	인도네시아	거래명세서	4
우리나라 수행 공정(단순공정): 제품 입고 → 라벨공정 수행 → 완제품 포장			FOB 금액	120

나) RCEP 원산지 판정

수입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종제품을 생산한(라벨공정) 국가의 원산지물품을 기준으로 일정이상의 부가가치(DV 20%)가 발생하여야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남성용신발’의 경우 최종제품을 생산한(라벨공정) 한국에서 DV 20%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원산지 최고가치 기여국’인 ‘중국’이 된다.

다) 시사점

RCEP 협정의 경우 국가마다 개별 양허표를 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민감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누적기준 활용과 관계없이 추가요건(DV20%)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 국가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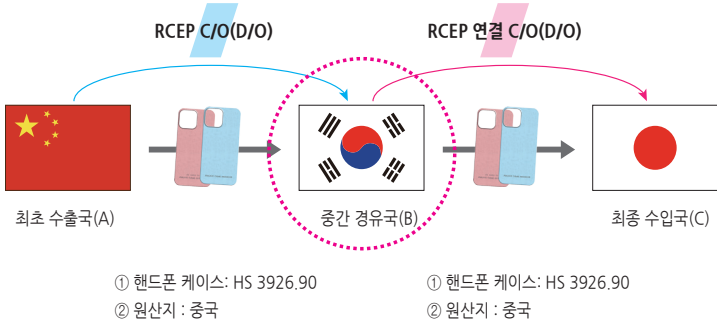
3) 일본 중계무역 활용전략

■ RCEP 협정에서의 연결 원산지 증명

① 연결 원산지 증명(Back to back)의 일반적인 이해

연결 원산지 증명(Back to back)이란 동일한 FTA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 중계무역의 거래형태에서 적용되는 FTA 원산지 증명 방식이다. 최초 수출국(회원국 A)에서 중간 경유국(회원국 B)을 경유하여 최종 수입국(회원국 C)으로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중간 경유국(회원국 B)에서 최초 수출국(회원국 A)으로부터 발급된 원본 FTA 원산지 증명을 기초로 최초 수출국(회원국 A)의 원산지를 연결하여 발급하는 FTA 원산지 증명 서류를 말한다.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예시】



FTA 협정은 일반적으로 RTA 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에서 대표되기 시작하여 한-중 FTA, 한-미 FTA, 한-베트남 FTA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양자 간에 체결된 경우가 다수이므로, 원상태로 회원국이 아닌 제3국(非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최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하여 최종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의 경우 동일한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 중계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위 그림과 같이 최초 수출국(회원국 A)에서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 채 최종 수입국(회원국 C)으로 재수출되므로 회원국 간 원산지가 승계될 수 있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아래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한 자,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수도한 자는 FTA관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RCEP 제3.24조 및 FTA관세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동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연결 원산지 증명과 직접운송원칙 및 충분가공원칙과의 관계

연결 원산지 증명을 활용하기 전에,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반기준(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충분가공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네 가지 기본원칙 중 연결 원산지 증명과 직접적으로 배치(背馳) 될 수 있는 기본원칙은 직접운송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이므로 이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직접운송원칙이란 ‘수출국(회원국)에서 원산지가 결정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제3국(非회원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국(회원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입국에 도착한 물품의 원산지가 물품의 운송과정 중에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그러나 제3국이 필연적으로 非회원국일 수 밖에 없는 양자 FTA 협정과는 다르게, RCEP은 15개의 복수국과 체결된 협정이므로 최초 수출국(회원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해당 경유국이 RCEP 회원국이라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며, 경유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행하여 최초 수출국(회원국)의 원산지 지위가 승계되어 최종 수입국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충분가공원칙이란 ‘역내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는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 해당 가공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문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최소 가공’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 경유국에 수입된 물품은 재수출을 위해 운송 상 필요한 공정을 제외하고 물품에 추가 가공을 수행하지 않는데,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중간 경유국에서 재포장, 소분 등의 단순 공정만을 진행한 후 원상태 그대로 최종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간 경유국에서의 공정은 RCEP 협정문 제3.6조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하지 않은 최소 가공’에 해당되어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간 경유국의 원산지로 결정될 수 없어 물품의 수입 당시 최초 수출국에서의 원산지 지위를 계속 유지한 채, 최종 수입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를 보인다.

③ RCEP 연결 원산지 증명과 제2.6조 관세차별 조항의 관계

RCEP 협정문 제2장 상품무역 제2.6조에 규정된 관세차별 조항은 우리나라와 기체결된 다른 FTA 협정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당사국이 각각의 체약상대국가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HS Code가 동일한 물품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관세차별 조항을 적용하는 회원국가들은 ‘제2.6조 제3항에 관한 부록’에 민감품목을 지정해 놓고 추가요건(DV20)¹⁴⁾을 규정하고 있다. DV 20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수출국 이외의 다른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재료는 해당 상품 및 재료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비원산지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세차별 조항은 RCEP 총 15개의 회원국 중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해당(말레이시아의 경우, RCEP 협정에 인도 가입 시까지 유보)된다.

연결 원산지 증명의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차별 민감품목인 경우, 중간 경유국의 수출자는 관세차별 조항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결정된 원산지 국가를 연결 원산지 증명 상의 ‘RCEP Country of Origin’란에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 원산지 증명과 원본 원산지 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가 상이할 수 있고, 중간 경유국의 수출자에게 RCEP 원산지 국가에 대한 증명 의무를 부여한다.

■ 對일본 무역에서의 연결 원산지 증명의 활용

①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입 현황

연결 원산지 증명이란 1) 최초 수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재수출되거나, 2)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RCEP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입 현황을 확인하고자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HS Code 6단위 별로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14)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계산된 그 원산지 상품 총 가액의 20퍼센트 이상이 추가된 당사자 일 것

【우리나라의 對일본 HS CODE별 수출입 현황(2022.01.-08. 누계)】

	HS 6단위	한->일 수출금액 (*증감률)	HS 6단위	일->한 수입금액 (*증감률)
1	2710.19	1,732,869 (▲17.4%)	8542.31	2,578,413 (▲66.4%)
2	2710.12	1,644,273 (▲23.2%)	8486.2	2,331,650 (▽15.8%)
3	7106.91	625,674 (▽31.0%)	7204.49	1,059,934 (▲12.6%)
4	3304.99	380,014 (▲0.6%)	8541.49	773,013 (신규수입)
5	7210.49	335,104 (▲21.3%)	7208.51	738,135 (▲152.7%)
6	8542.31	321,091 (▲29.0%)	3818	634,738 (▲6.4%)
7	8542.32	287,579 (▽17.8%)	8486.9	603,176 (▽4.2%)
8	3822.19	251,252 (신규수출)	7208.39	549,320 (▲11.1%)
9	2841.90	235,360 (▲84.2%)	8534	434,211 (▲30.4%)
10	8523.51	233,328 (▲36.2%)	3824.99	386,577 (▽20.5%)

주 : HS Code 6단위 기준

출처 : K-stat, 국내통계, 국가 품목별 수출입 (검색일 : 2022.10.)

증감률 : HS 6단위별 전년도 동월 누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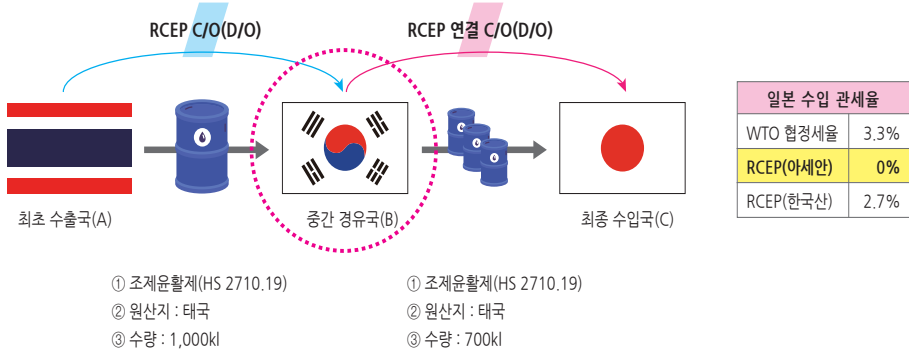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위 물품은 석유조제품(HS 2710.19, HS 2710.12), 은(HS 7106.91), 화장품(HS 3304.99), 철판(HS 7210.49) 등이며,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위 물품은 전자집적회로(HS 8542.31), 반도체 제조용 기계(HS 8486.20), 철 웨이스트(HS 7204.49), 반도체 디바이스(HS 8541.49), 철판(HS 7208.51) 등으로 확인된다.

RCEP 발효 외에도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부분, 한-일 수출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이 전년도 대비 수출입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로 수출입 되는 물품들도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상기 표의 물품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가장 수출입 규모가 큰 물품을 하나씩 선정하여, 1) RCEP 회원국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 2) 일본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RCEP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각각의 케이스별로 연결 원산지 증명 발행을 통한 RCEP 협정세율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② RCEP 회원국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

【<모델 1> 수출입 거래 구조】



첫 번째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태국산 조제윤활제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태이다. 조제윤활제를 제조하여 최초로 수출한 국가인 태국,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 최종 수입국인 일본 모두 RCEP 회원국이다. 최종 수입국인 일본은 제2.6조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고, 부록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고 있어 추가요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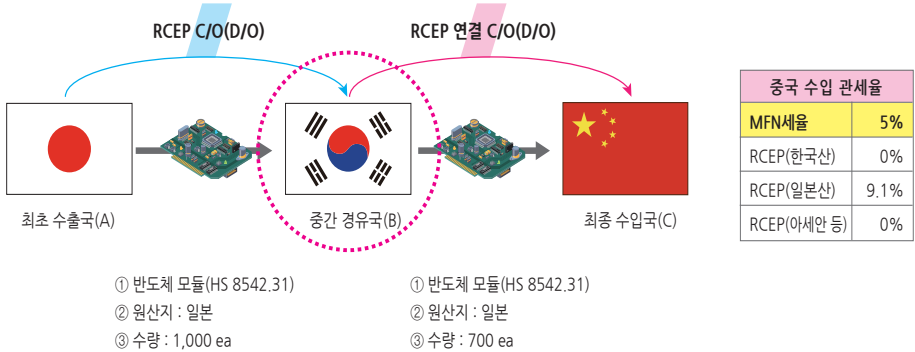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물품의 거래구조에서 중간 경유국이며, 최초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RCEP 원산지 증명을 바탕으로 RCEP 협정문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및 집행 지침을 참조하여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류(원산지: 태국)를 발급·작성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는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상기 <모델 1> 사례를 참고해보면 최종 수입국인 일본 현지에서 조제윤활제(HS 2710.19) 수입 시 WTO 협정세율(실행관세율)은 3.3%이나,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RCEP(한국산) 2.7%, RCEP(아세안) 0%로 실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조제윤활제(HS 2710.19)는 일본에서 민감품목¹⁵⁾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추가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추가 가공 없이 단순 경유하는 경우 일반기준인 총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최초 수출국가의 원산지 지위(원산지: 태국)를 유지한 채 일본으로 수입되어 RCEP(아세안) 0%의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15)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일본)

③ 일본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RCEP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모델 2> 수출입 거래 구조】



두 번째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반도체 모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태이다. 반도체 모듈을 제조하여 최초로 수출한 국가인 일본,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 최종 수입국인 중국 모두 RCEP 회원국이다. 최종 수입국인 중국 또한 제2.6조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고, 부록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고 있어 추가요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거래구조에서 중간 경유국이며, 최초 수출국인 일본의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RCEP 원산지 증명을 바탕으로 RCEP 협정문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및 집행 지침을 참조하여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류(원산지: 일본)를 발급·작성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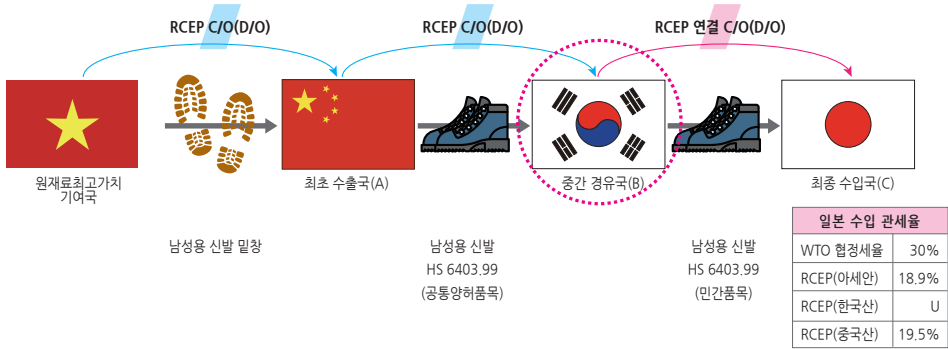
상기 <모델 2> 사례를 참고해보면 최종 수입국인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모듈(HS 8542.31) 수입 시 MFN 세율(실행관세율)은 5%이고,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RCEP(한국산, 아세안 등)은 0%로 실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RCEP(일본산)은 9.1%로 MFN 세율(실행관세율)보다 높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반도체 모듈(HS 8542.31)은 중국에서 민감품목¹⁶⁾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추가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추가 가공 없이 단순 경유하는 경우 일반기준인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고, 최초 수출국가의 원산지 지위(원산지: 일본)를 유지한 채 중국으로 수입되므로 RCEP(일본산) 9.1%가 적용되어 MFN 세율보다 높아, 이 경우 RCEP 협정을 활용할 실익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도체 모듈(HS 8542.31)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중간 경유 당사자는 일본 외 다른 RCEP 회원국가로부터 물품을 소싱하여 수출하는 것이 RCEP 협정 활용 실익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까지 상세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16)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중국)

④ 일본으로 수입 시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델 3> 수출입 거래 구조



나아가 최종 수입국에서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남성용 신발을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계 무역 형태이다. 남성용 신발을 제조하여 최초로 수출한 국가인 중국, 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인 베트남,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 최종 수입국인 일본 모두 RCEP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거래구조에서 중간 경유국이므로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작성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는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일본은 제2.6 조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 <모델 3> 사례를 참고해보면 최종 수입국인 일본 현지에서 남성용 신발(HS 6403.99) 수입 시 WTO 협정세율(실행관세율)은 30%이나,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RCEP(아세안) 18.9%, RCEP(중국산) 19.5%로 실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산인 경우 양허 제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남성용 신발(HS 6403.99)은 일본에서 민감품목¹⁷⁾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DV 20이라는 추가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최초 수출국인 중국에서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로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에서 남성용 신발(HS 6403.99)은 민감품목¹⁸⁾이 아니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원산지 증명서 상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결정되지만, 동 물품이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 민감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발급하는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는 민감품목 추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DV 20 요건에 따른 수출국 부가가치 계산이 필요하다.

17)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일본)
 18)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한국)

▪ 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대상품목: 남성용 신발(HS Code 6403.99)
- 제조 및 수출국: 중국 // 수입국: 일본
- 일본 관세율: (MFN 30%, 베트남산 18.9%, 중국산 19.5%, 한국산 양허제외)

투입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가격
밑창	6406.20	베트남	\$90
갑피	6406.10	인도네시아	\$65
안창	6406.90	말레이시아	\$10
신발끈	6307.90	중국	\$5
남성용 신발 상품가격			\$200

▪ 원산지 판정 결과 : 베트남산으로 RCEP(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 원산지 지위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되었으므로 RCEP 원산지 상품
- 원산지 국가 : 수출국의 부가가치가 20% 미만 $[(200-165)/200=17.5\%]$ 으로 산출되어 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 기여국인 베트남산으로 판정

상기 계산결과에 따라 최초 수출국인 중국에서 DV 20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결 원산지증명 서상의 원산지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하게 원재료 최고가치기여국인 ‘베트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의 RCEP 협정세율은 RCEP(아세안) 18.9%가 적용된다.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대상물품이 상기 사례와 같이 최종 수입국에서 민감품목인 경우, 중간 경유국의 당사자는 관세차별 조항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결정된 원산지 국가를 연결 원산지증명서 상의 ‘RCEP Country of Origin’란에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RCEP 원산지 국가는 상이할 수 있고, 중간 경유국의 당사자에게 RCEP 원산지 국가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여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일본 현지 RCEP 활용전략

1) 최저세율활용, 1국 다(多)협정 전략

일본의 경우도 RCEP이 발효된 회원국 중 기체결된 EPA(경제제휴협정)가 있는 회원국이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적용대상이 되는 협정이 여러 개인 '1국 다(多)협정'이 증가하였다.

【일본의 RCEP 상대국의 1국 다(多)협정 현황】

RCEP 체결국	발효된 협정 (기준 : 2022년 7월)	협정수
베 트 남	일-베트남EPA, 일-ASEAN EPA, CPTPP, RCEP	4
브 루 나 이	일-브루나이EPA, 일-ASEAN EPA, RCEP	3
싱 가 포 르	일-싱가포르EPA, 일-ASEAN EPA, RCEP	3
태 국	일-태국EPA, 일-ASEAN EPA, RCEP	3
말레이시아	일-말레이시아EPA, 일-ASEAN EPA, RCEP	3
호 주	일-호주EPA, CPTPP, RCEP	3
뉴 질 랜 드	CPTPP, RCEP	2
캄 보 디 아	일-ASEAN EPA, RCEP	2
라 오 스	일-ASEAN EPA, RCEP	2
인도네시아	일-인도네시아EPA, 일-ASEAN EPA	2
필 리 핀	일-필리핀EPA, 일-ASEAN EPA	2
중 국	RCEP	1
한 국	RCEP	1
미 얀 마	일-ASEAN EPA	1

출처 : 일본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위 일본의 RCEP 회원국의 1국 다(多)협정 현황은 2022년 7월 발효된 협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RCEP 체결을 한 14개 회원국 중 베트남과는 4개의 협정을,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와는 3개의 협정을, 뉴질랜드,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는 2개 협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 1국 다(多)협정 활용 모델

일본의 수출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RCEP 상대국에 EPA를 활용할 경우 EPA 중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EPA를 파악하여 양허세율 차이를 활용할 수출 확대 전략이 가능하다. 이는 수입자가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원산지 인정기준보다는 수출자에게 용이한 원산지 기준에 해당하는 협정을 활용함으로써 원산지관리에 대한 수출자의 FTA 활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례를 통하여 일본의 수출 상대국 중 다(多)협정이 적용되는 RCEP 회원국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의 1국 다(多)협정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양허세율 차이를 통한 1국 다(多)협정 활용 모델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은 일본의 2022년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HS 8708.40에 분류된다. 일본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상대국의 품목분류는 기어박스의 기타 부분품¹⁹⁾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상대국의 EPA 양허세율은 <사례 1>과 같다.

다만,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경우 HS 8708.40에 대한 싱가포르의 양허세율이 모두 0%로 비교 실익이 없으므로 <사례 1>의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사례 1> 기어박스의 기타 부분품의 RCEP 상대국별 對일본 양허세율】

수출국	수입국	NO.	협정	2022년 EPA양허세율
일본	베트남	1	일본-베트남 EPA	0%
		2	일본-ASEAN EPA	0%
		3	CPTPP	0.5% (CPTPP 4년차 세율, 5년차에 0%까지 관세철폐)
		4	RCEP	9.1% (RCEP 1년차 세율, 11년차에 0%까지 관세철폐)
	태국	1	일본-태국 EPA	30%
		2	일본-ASEAN EPA	30%
		3	RCEP	10% (RCEP 1년차 세율, 20년차에 8.5%까지 관세인하)
	말레이시아	1	일본-말레이시아 EPA	0%
		2	일본-ASEAN EPA	0%
		3	RCEP	25% (RCEP 1년차 세율, 15년차에 0%까지 관세철폐)

19) 수출상대국의 품목분류는 양허세를 확인의 목적상 참고를 위하여 기타 또는 최종호로 분류하였음.

일본	호주	1	일본-호주 EPA	0%
		2	CPTPP	0%
		3	RCEP	5% (RCEP 1년차 세율, 20년차에 0%까지 관세철폐)

일본에서 기어박스의 부분품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사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RCEP보다는 기존의 EPA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태국의 경우는 일본-태국 EPA와 일본-ASEAN EPA가 각각 30%이고, RCEP 양허세율이 10%이므로 태국으로 수출한다면 RCEP 협정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시 상대국에서 적용되는 가장 낮은 양허세율을 찾아냄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거래상대방과의 계약협상에서 수출자는 양허세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통한 1국 다(多)협정 활용모델

HS 8479.89에 분류되는 Eyeletting machine을 일본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에 수출하는 경우 Eyeletting machine의 품목별 원산지기준(Product-Specific Rule)을 확인하면 <사례 2>와 같다.

【<사례 2> Eyeletting machine의 협정별 PSR】

수출국	수입국	NO.	협정	원산지기준(PSR)
일본	베트남	1	일본-베트남 EPA	LVC40% ²⁰⁾ or CTSH
		2	일본-ASEAN EPA	RVC 40%
		3	CPTPP	A change to a good of subheading 8479.10 through 8479.89 from any other subheading.
		4	RCEP	CTH or RVC 40%
	태국	1	일본-태국 EPA	CTSH or QVC40 ²¹⁾
		2	일본-ASEAN EPA	RVC 40%
3		RCEP	CTH or RVC 40%	

20) "LVC 40%" means that the good has a local value content,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set out in Article 27, of not less than 40 percent, and the final process of production has been performed in a Party (참고 : 일본-베트남 EPA 협정문)

21) the term "QVC 40" means that the good has a qualifying value content,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set out in paragraph 4 of Article 28, of not less than 40 percent, and the final process of production has been performed in a Party (참고 : 일본-태국 EPA 협정문)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일본	말레이시아	1	일본-말레이시아 EPA	A change to subheading 8401.10 through 8485.90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No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to subheading 8401.10 through 8485.90, provided there is a qualifying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cent.
		2	일본-ASEAN EPA	RVC 40%
		3	RCEP	CTH or RVC 40%
	싱가포르	1	일본-싱가포르 EPA	A change to subheading 8473.40 through 8485.90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No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to subheading 8473.40 through 8485.90, provided that there is a qualifying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cent.
		2	일본-ASEAN EPA	RVC 40%
		3	RCEP	CTH or RVC 40%
	호주	1	일본-호주 EPA	CTSH or QVC40 ²²⁾
		2	CPTPP	A change to a good of subheading 8479.10 through 8479.89 from any other subheading.
		3	RCEP	CTH or RVC 40%

수출자는 원산지기준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면 부가가치기준 충족 입증을 위한 원가자료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이 용이하다.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는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적용하는 것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사례 2>의 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베트남 FTA와 CPTPP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태국 EP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말레이시아 EP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싱가포르 EP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호주 EPA와 CPTPP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자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충족하면 역내산임을 증명하는 각 협정별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하면서도 동일한 원산지기준만 관리하게 되므로 원산지관리가 간소화되어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활용 업무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2) "QVC 40" means that the good has a qualifying value content,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set out in Article 3.5 (Rules of Origin - Calculation of Qualifying Value Content), not less than 40 percent, and the last process of production the good has been performed in exporting Party (참고 : 일본-호주 EPA 협정문)

■ 양허세율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동시 활용모델

HS 4205.00에는 가죽제의 부츠(신발) 끈이 분류된다. 일본에서 가죽제의 부츠 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양허세율과 원산지기준(PSR)을 모두 활용하여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정을 파악할 수 있다.

【<사례 3> 가죽제 부츠(신발) 끈의 베트남 對일본 EPA 양허세율 및 PSR】

수출국	수입국	NO.	협정	2022년 EPA양허세율	PSR
일본	베트남	1	일본-베트남 EPA	2.50%	CC
		2	일본-ASEAN EPA	1%	CC
		3	CPTPP	0%	CC
		4	RCEP	0%	CC or RVC 40

<사례 3>을 보면 베트남에서 부츠 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자에게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CPTPP와 RCEP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것이다. 이 경우 수출자는 원가자료에 대한 관리가 부담이 되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관리가 용이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것인데, CPTPP와 RCEP 협정 모두 CC(2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CPTPP와 RCEP 중에서 어떤 협정이 수출자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비교분석의 실익은 없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으로는 원산지기준을(PSR)을 충족할 수 없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 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기준이 적용 가능한 RCEP을 선택하는 것이 수출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 1국 다(多)협정 활용모델 시사점

일본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RCEP 상대국이 1국 다(多)협정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수입자가 요구하는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수출자에게 유리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허세율 차이에 의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원산지기준(PSR) 충족이 수출자에게 유리하여 FTA관리의 부담이 낮은 협정이 무엇인지를 통상 환경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해야 한다.

2) 현지 지원제도 및 정책 정보 활용

■ RCEP 협정문 후속 논의 현황

일본은 2022년 9월 17일 제1회 RCEP 각료 회의에 참여해 공동 성명²³⁾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 성명에는 “RCEP이 강인한 공급망 창출에 공헌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 경제산업대신 니시무라 야스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의 실현을 위해 협정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ASEAN 국가에 의한 RCEP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향후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RCEP 활용 제도 현황

JETRO(일본무역진흥회), 일본 경제 산업성, 일본 세관에서는 현지 기업들의 RCEP 활용 제고를 위해 웨비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정 정보, 품목별 원산지 규칙, 품목 분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⁴⁾ 특히 일본 경제 산업성은 위탁 사업의 일부로 EPA 상담 데스크를 두었으며, RCEP에 특화된 서면 및 대면 상담을 지원한다. 주로 한국, 중국과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EABC(동아시아 비즈니스 평의회)는 RCEP의 우호적인 활용 방법을 기업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전자책(eBook)을 발행할 계획이다.

■ 일본 통관 현황

① 통관 수속 간소화 시스템 운영

일본 세관에서는 통관 수속의 간소화 및 효율화, 이용자 편리 향상을 위해 수출입 관련 업무 및 이와 관련된 화물관리 등의 민간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수출입, 항만관련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세관의 수출입 신고의 약 98%를 전자 문서로 처리하고 있다.

수속 간소화뿐만 아니라 NACCS에 입력된 정보는 불법 수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화물과 낮은 화물을 명확하게 구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② 신속 통관 지원제도

일본 세관은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입 하는 수출입 업자들의 편리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3)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2/09/Inaugural-RCEP-MM-Joint-Media-Statement-17-September-2022.pdf>

24) 일본 JETRO 홈페이지 'https://www.jetro.go.jp/events/ora/f4189385bce19567.html'

구분		의미
1	사전교시제도 (품목분류)	수입 물품의 세율에 대해 알고 싶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물품의 세번과 관세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사전교시제도 (관세평가)	수입 물품의 관세 평가상의 취급(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물품의 관세 평가 상의 취급(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3	사전교시제도 (원산지)	수입 물품의 원산지(관련 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관련 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4	사전교시제도 (감면세)	수입 물품의 감면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물품의 감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5	예비심사제도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또는 수입 승인 또는 수입 관련 절차의 종료 이전에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 심사·검사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는 제도
6	납부기한 연장제도	수입자가 외국에서 국내(일본)로 도착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관세, 내국소비세, 지방세 등의 제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제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
7	특례 수입자 제도 (AEO 제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례 수입자에 한해 수입 신고와 납세 신고를 분리해 소득 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8	특정 수출자 제도 (AEO 제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 수출자가 화물이 놓여있는 장소 또는 화물의 선적(적재)을 예정하고 있는 항구(공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보세 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9	세관 상담 제도	일본 수출입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돕고, 이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시정조치를 강구하여 적절한 세관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출처 : 일본 관세청(<https://www.customs.go.jp/>), 관세청

3) 현지 RCEP(EPA) 활용 방법

일본의 현지 RCEP 활용은 한국무역협회가 일본 현지 통관사(Tokyo Kyodo Trade Compliance Co.,Ltd.)에 의뢰한 ‘일본의 RCEP 활용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의 원산지 제도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 일본의 FTA(EPA) 활용 절차

일본의 FTA(EPA)²⁵⁾ 활용 절차는 크게 ①수출 대상 품목의 HS Code 및 협정실익 확인, ②원산지결정 기준 (RCEP의 경우 원산지국가 결정기준 확인 포함) 확인 및 증빙서류 작성, ③원산지증명서 발급, ④적송(積送)기준(직접운송 원칙) 확인, ⑤서류 보관, ⑥정기조사 및 사후검증 대비 등으로 우리나라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부 내용은 일본 세관 원산지규칙포털 (<https://www.customs.go.jp/roo/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일본은 FTA라는 용어 대신 자국의 독자성 강조 차원에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FTA와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출처 : 관세청FTA포털-FTA일반현황-일본 수출입통관-FTA활용절차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

■ 일본의 RCEP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일본의 RCEP 관련 제도는 RCEP 협정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앞 파트에서 기술한 <Mega FTA 활용법>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 챕터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하겠다. RCEP 협정의 경우, 일반적인 양자 FTA(EPA) 협정 활용 시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외에 RCEP 원산지국가에 따라 설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일본 재무성 관세국·세관에서 발간한 RCEP협정 세율차 매뉴얼(RCEP協定稅率差マニュアル, 2021.12.)을 참고하면 된다.

【RCEP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WO) : 한 당사국에서 완전히 얻어지거나 생산된 제품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 하나의 당사국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제품
- 품목별 규칙을 만족하는 제품(PSR)
 - 세번변경기준(CTC) : 한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와 해당 제품의 HS Code 간 HS Code 변경이 있는 제품
 - 부가가치기준(RVC) : RCEP협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특정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간접법/공제법]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FOB}} \times 100$$

[직접법/집적법]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익} + \text{기타비용}}{\text{FOB}} \times 100$$

- 가공공정기준(화학반응/CR) : RCEP협정 부속서 3A 주석7(f)에서 규정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 기타 원산지기준 : 누적기준, 미소기준

【RCEP 원산지국가 결정기준】

RCEP협정문	품목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국가요건	원산지국가
협정제2.6조제2항	관세차별	WO, PSR	-	수출당사국
		PE	최소 공정 외 추가 공정	수출당사국
협정제2.6조제4항			최소 공정만 발생	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
협정제2.6조제3항	민감품목	-	DV20* 충족	수출당사국
협정제2.6조제4항		-	DV20 미충족	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
협정제2.6조제6항	수입자 선택에 따르는 경우	-	-	생산 관련 당사국
		-	-	생산 관련 모든 당사국

* DV 20(Domestic Value addition) : 수출 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의 부가가치(DV)가 발생했는지 여부 (DV=역내누적이 공제법 또는 집적법으로 계산한 국내가치비율)

■ 일본의 RCEP 원산지증명제도

일본의 RCEP 원산지증명제도에는 크게 ①제3자 증명제도, ②자기신고제도, ③인정수출자 자기증명 제도가 있으며, 관련해서는 「EPA에 따른 특정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법률」, 「EPA에 따른 신고원산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제3자 증명제도(第三者証明制度) : 한국 ‘기관발급 원산지증명’과 유사

제3자 증명제도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출국에 신청해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면 그것을 수입자에게 송부해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산품임을 증명하는 제도이다.²⁶⁾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라고 부르며, 경제산업성에 의해 일본상공회의소가 유일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3개의 원산지증명제도(제3자 증명제도, 자기신고제도, 인정수출자제도) 중 가장 널리 이용된다. 2022년도 9월 기준 총 200,147건이 발급되었으며, 이 중 RCEP 원산지증명서는 50,383건으로 전체의 25.17%를 차지한다.²⁷⁾

- 발급 절차 -

가) 사업자는 우선 일본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 후,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기업 등록은 7 영업일 이내에 등록 완료되고, 발급시스템을 통해 계정정보가 통지된다.

- 필요서류
 - 법인, 그 외 단체 : 등록신청서, 이력사항전부증명서 원본*(履歷事項全部証明書)
 - 개인 : 등록신청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 사본*
 -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나) 다음으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판정 의뢰(判定依頼)를 진행한다. 원산지 판정은 일본 전역의 8개 일본상공회의소 판정사무소를 통해 원산지 입증 서류 등 근거서류를 갖추어 의뢰하면 된다. 판정은 3 영업일 이내에 판정 승인이 나는데, 서류 미비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다.

- 필요서류
 - 세번변경기준(CTC) 충족여부 확인시 : 대비표(対比表, HS Code 비교표), 계산워크시트(計算ワークシート, 부가가치기준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계산표) 작성
 - * 자율양식으로 발급시스템 로그인 후 PDF형식으로 업로드
 - * 발급시스템에는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HS Code, 원산지판정기준, 적용할 PSR 등 입력
 - 농수산물, 섬유제품은 별도로 ‘생산에 관한 증명서(生産に係る証明書)’ 작성

다) 생산자가 원산지 판정번호를 취득한 경우, 수출자에게 발급 시스템상에서 동의 통지서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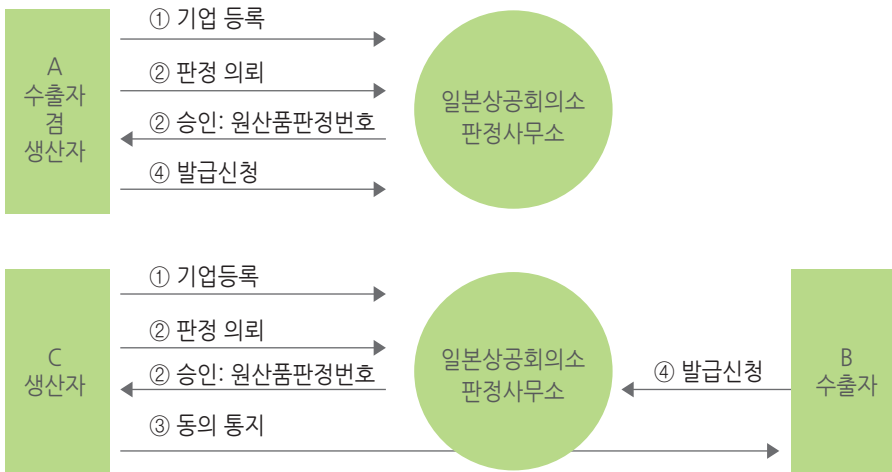
26) 출처 : 일본세관 원산지규칙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roo/origin/gaiyou.htm#02>)

27)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상황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download/gensanchi/coissuance.pdf)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하게 되고, 승인 후 신청자에게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번호가 부여된다. 수출자가 판정 의뢰를 한 경우 그대로 발급 신청이 진행된다. 하지만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판정 의뢰를 한 경우, 수출자에게 해당 판정번호를 인지시키는 ‘동의통지(同意通知)’라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때, 동의 통지서에는 원산품 판정 의뢰 시에 생산자가 작성한 대비표, 계산워크시트 등의 생산 정보 외 판정번호만 공개되기 때문에 생산자의 영업기밀이 보장된다.

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일본 전역 28곳의 일본상공회의소 발급 사무소를 통해 발급신청처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신청은 판정의뢰로 취득한 판정번호를 이용하여 행하고, 신청 후 2 영업일 이내 발급이 이루어진다. 발급 수수료는 기본료(건당 2,000엔)와 가산액(제1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 기재 상품수×가산 단가(500엔, 단 20회를 초과하는 경우 50엔)²⁸⁾이 합산된다. 수수료 납부 후 RCEP 협정의 경우 PDF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출처: TKTC (2022). “調査報告書”, p. 16

② 자기신고제도(自己申告制度): 한국의 ‘자율발급 원산지증명’과 유사

자기신고제도는 제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이 협정상 원산품임을 명기한 ‘원산품 신고서’를 작성해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산품임을 신고하는 제도이다.²⁹⁾ 협정에서 정한 주체가 화물(貨物)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면 되므로 다른 원산지증명제도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원산품신고서 작성 주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 신고와 수입자에 의한 자기 신고로 나뉜다.

28) 20회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단가는 50엔이 된다.

29) 출처: 일본세관 원산지규칙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roo/origin/gaiyou.htm#02>)

-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자기 신고 : 2022년 7월 기준으로 RCEP 협정의 경우 일본, 호주, 뉴질랜드 3개국 간에 한해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기타 서명국에 대해서는 RCEP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RCEP 협정 발효 후 20년 이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RCEP협정문 부속서 3B의 ‘원산지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 항목을 포함하여 영어로 작성하면 된다. 원산품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1년이다.
- 수입자에 의한 자기 신고 : RCEP는 현재 일본으로의 수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기타 당사국은 모든 서명국의 협정 발효 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품신고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단, 일본세관 홈페이지의 샘플 양식 이용 가능), RCEP 협정문 부속서 3B의 ‘원산지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 항목을 포함하여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원산품신고명세서 및 증빙서류 등)를 영어로 작성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1년이다.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를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본에서 수입 신고 시 세관이 요구하는 ‘원산품인 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원산품신고서와 원산품신고명세서 및 관련서류가 있다.

【RCEP 원산품신고서 기재 항목】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①	수출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판명된 경우에는 생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③	수입자 또는 수취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④	산품의 품명 및 통일 시스템 번호(6자리 번호)	
⑤	원산성 부여 기준	
⑥	제2·6조(관세율의 차이)에 규정하는 RCEP 원산국	
⑦	원산성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역내 원산 비율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FOB가액	
⑧	제품의 수량	
⑨	연결원산지 건의 경우 최초 원산지 증명 번호, 발급 날짜, 최초 수출 당사국에서 RCEP 원산지 및 (해당시)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된 수출자 인증 번호	
⑩	원산지 증명서 번호	인증된 수출자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인증 번호 또는 식별 번호
⑪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신고	고유 참조 번호
⑫	발급 기관에 의한 증명이며,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품이 증거에 근거해 RCEP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에 정하는 모든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해 발급 기관의 정규 서명 및 공표장과 함께 제공 되는 것	권한을 부여받은 서명자에 의한 증명이며, 원산지 신고에 기재된 산품이 RCEP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에 규정된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취지가 기재된 것
⑬	운송되는 화물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 정보(예를 들어, 구매서 번호, 출발일자, 선박명칭 또는 항공기 편명, 양륙항)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 원산품신고명세서 : 해당 서류는 원산품신고서에 기재된 제품이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제품의 번호,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RCEP 원산지,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RCEP 원산지 결정에 관한 설명, 관련 증빙서류의 보유자, 명세서 작성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 샘플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 관련서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 여부 입증 관련 서류】

RCEP 원산지 결정기준	필요서류
㉓완전생산제품(WO)	생산증명서, 제조증명서, 어획증명서 등
㉔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계약서, 총부품표(總部品表), 제조공정흐름도, 생산지시서, 각 재료·부품의 투입 기록, 제조원가계산서, 구매서, 가격표 등
㉕품목별 규칙(PSR)	
-세번변경기준(CTC)	총부품표/재료 일람표(HS코드 포함), 제조공정흐름도, 생산지시서 등
-부가가치기준(RVC)	제조원가계산서, 매입장, 전표, 청구서, 지불기록, 구매서, 가격표 등
-가공공정기준(화학반응/CR)	계약서, 제조공정흐름도, 생산지시서, 생산내용증명서 등

【RCEP 원산지 국가 결정기준 확인 관련 서류】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국가요건	원산지국가	필요서류
관세차별	WO, PSR	-	수출당사국 (제2.6조 제2항)	·상기 ㉓ 또는 ㉕의 원산지 기준 충족 관련 서류
	PE	최소 공정* 외 추가 공정	수출당사국 (제2.6조 제2항)	·제조공정흐름도, 생산지시서 등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외 추가공정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최소 공정만 발생		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 (제2.6조 제4항)	·제조공정흐름도, 생산지시서 등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원재료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총부품표, 각 재료·부품의 투입기록, 제조원가계산서, 구입서, 가격표 등 - 최고가격의 원산재료를 제공한 당사국이 확인할 수 있는 것	
민감품목	-	DV20** 충족	수출당사국 (제2.6조 제 3항)	·제조원가계산서, 매입장(仕入帳), 전표, 청구서, 지불기록(支払記録), 구입서, 가격표 등 - DV2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DV20 미충족	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 (제2.6조 제4항)	·제조원가계산서, 매입장, 전표, 청구서, 지불기록, 구입서, 가격표 등 - DV2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원재료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총부품표, 각 재료·부품의 투입기록, 제조원가계산서, 구입서, 가격표 등 - 최고가격의 원산재료를 제공한 당사국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수입자의 선택에 따르는 경우 (제2.6조 제6항)	생산관련 당사국 중 최고 세율 (원산지 국가명 * 표시)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서, 계약서, 총부품표, 각 재료·부품의 투입 기록, 구입서 등 - 원산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1차 재료)를 제공한 모든 당사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모든 당사국 중 최고세율 (원산지 국가명 ** 표시)	·상기 원산지 기준 충족 관련 서류 외 추가 서류는 불필요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RCEP원산지 국가 결정기준에 따라서 원산지국가를 결정한다.

- 제출 서류의 생략

가) 과세가격의 총액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 원산품신고서, 원산품신고명세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사전교시³⁰⁾를 취득하여 수입(납세)신고서에 취득한 사전교시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완전생산품(WO)일 경우 원산품신고서만 제출하고 원산품신고명세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제출 서류의 보관

가) 수입자의 경우, 원산품신고서, 원산품신고명세서, 계약서, 구매서, 가격표, 총부품표(總部品表), 제조공정흐름도, 각 재료·부품의 투입 기록, 제품 출하 기록, 지출 기록, 장부 등 제품의 원산지 관련 모든 증빙 서류를 수입 허가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의 경우, 원산품신고서 및 원산품신고서 작성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제품이 원산품인지 증명하기 위한 추가자료(RCEP 원산지 국가 결정기준 확인 관련 서류 포함) 등이 필요하다.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의 경우, 원산품신고서를 포함하여 제품이 원산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RCEP 원산지 국가 결정기준 확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경우 원산품신고서(사본), 계약서, 구매서, 가격표, 총부품표(總部品表), 제조공정흐름도, 각 재료·부품의 투입 기록, 제품 출하 기록, 지출 기록, 장부 등 해당 제품이 원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RCEP 원산지 국가 결정기준 확인 관련 서류 포함)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정수출자 자기증명제도(認定輸出者自己證明制度) : 한국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과 유사

- 인정수출자 자기증명제도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수출자가 스스로 제품이 협정상의 원산품임을 명기한 신고문을 작성해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산품인 것을 증명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다.³¹⁾ 인정수출자제도에서 기업이

30) 사전교시제도(事前教示制度)란 수입자나 해당 관계자가 수입 전에 당해 화물의 원산지 인정 관련 여부를 세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신청을 하면 서면 회신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와 유사하다.

31) 일본세관 원산지규칙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jp/roo/origin/gaiyou.htm#02>), 일본 재무성 관세국 경제연계실 (20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p. 32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라고 부르며, 위의 제3자 증명 제도의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와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 (제도개요) 해당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하단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원산지증명실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수출자 신청 시 등록면허세(9만 엔)를 납부하고, 유효기간인 3년마다 갱신해야 (갱신수수료 서면신청 5,000엔, 온라인신청 4,550엔) 한다. 인정신청서 갱신 시에는 서면, 우편 외에 e-Gov 온라인신청시스템 (<http://www.e-gov.go.jp/help/shinsei/index.html>)을 통한 전자수속도 가능하며, 인정신청서 심사기준 일부가 면제된다. 신청서류는 수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 필요서류 : ①인정신청서, ②신청서 첨부서류*, ③원산지증명법 제7조의3호(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서류, ④인정수출자 자기증명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제제휴협정, 원산지증명법 및 동법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취지를 설명한 서류, ⑤제2종특정원산지증명서의 작성에 관련된 경제동반자협정 체결국 등을 목적지로 하는 수출에 관한 실적 및 계획을 기재한 서류
- 법인, 그 외 단체: 인정신청서, 정관, 위임장(해당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약력 기재 서류
- 개인: 인정신청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 외국인: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사본 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주민표의 사본 또는 재류자격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

- (신청절차)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실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수리한다. 그 다음, 제출 서류에 따라 서면 심사를 하는데 필요할 경우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심사는 보통 2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심사기준은 일본 원산지증명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참고하면 된다.
- (이용방법)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은 인정수출자는 일본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품 판정 의뢰 단계와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단계를 생략하고 수출 품목이 협정에 근거한 원산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인정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원산품임을 서약하는 ‘제2종 원산품 서약서(第二種原産品誓約書)’를 작성하면 된다.

인정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RCEP의 경우, RCEP협정 부속서 3B에 정해진 필요기재사항(앞서 자기증명제도에서 기술한 【RCEP 원산품신고서 기재 항목】의 원산지신고 부분 참조)을 영어로 기재하면 되는데, 별도의 양식은 아직 없으나(권고 서식은 일본세관 원산지증명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그에 대한 논의는 현재 협정국간 진행 중이다. 인정수출자가 작성하는 RCEP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체약국의 세관 당국에 1회 수입에 한해 제출할 수 있다.

- (연결원산지증명서의 작성) RCEP 협정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

-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사본이 중간계약국의 인정 수출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 연결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이 최초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RCEP협정 부속서 3B(필요적 기재사항(必要的記載事項))의 규정에 따라 연결 원산지 증명에 최초 원산지 증명부터 관련된 정보(당초 원산지 증명서 번호, 발급 연월일, 발급국, RCEP 원산지, 인정 수출자의 인정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중간계약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단, 재포장 또는 물류와 관련된 활동(예를 들어 적재, 창고, 화물의 분할, 수입계약국의 법령, 절차, 행정상의 결정 또는 정책이 요구하는 단순한 라벨 등에 의한 표시, 산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수입계약국으로 산품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작업)은 제외한다.
- 분할하여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최초 원산지증명의 총수량 대신 그 분할된 수출과 관련된 수량이 표시되고, 그 분할된 화물 하에서 재수출되는 총수량이 최초 원산지증명의 총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연속하는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정보에 최초 원산지 증명 발급 일자 및 그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인정수출자의 주요 의무) 인정수출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니게 되고, 해당 사항들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가) 변경신고 의무 : 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제2종 특정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인정을 받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국 등에 수출되는 물품의 품명’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서면과 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나) 장부 기재 의무 : RCEP의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보존서류
 -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 제2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연월일, 물품명, 사무소의 소재지
 - 증명서 작성 업무 담당 사무소:
 - (가) 제2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연월일
 - (나) 제2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자의 성명
 - (다) 제2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물품명, 수량 및 관세번호
 - (라) 제2종 특정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된 물품의 수입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마) 제2종 특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용으로 제공한 구입서 등에 식별을 위한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
 - (바) 제2종 특정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제2종 원산지서약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1) 제2종 원산지 서약서 교부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및 제2종 원산지 서약서 교부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제2종 원산지 서약서를 교부받은 연월일

다) 생산자로부터 서약서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 생산자에게 통지 의무 : 인정수출자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생산자로부터 앞서 기술한 ‘제2종 원산품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출해야 한

對일본 RCEP 활용 전략

다. 결과적으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정수출자는 해당 생산자에 대해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라) 원산품이 아니었을 경우 등 경제산업대신에게 통지 의무 : 인정수출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물품이 특정원산품이 아니었음을 인지(RCEP의 경우 3년)하거나 경미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오류(통지기간 : 1년)를 발견했을 때는 경제산업성장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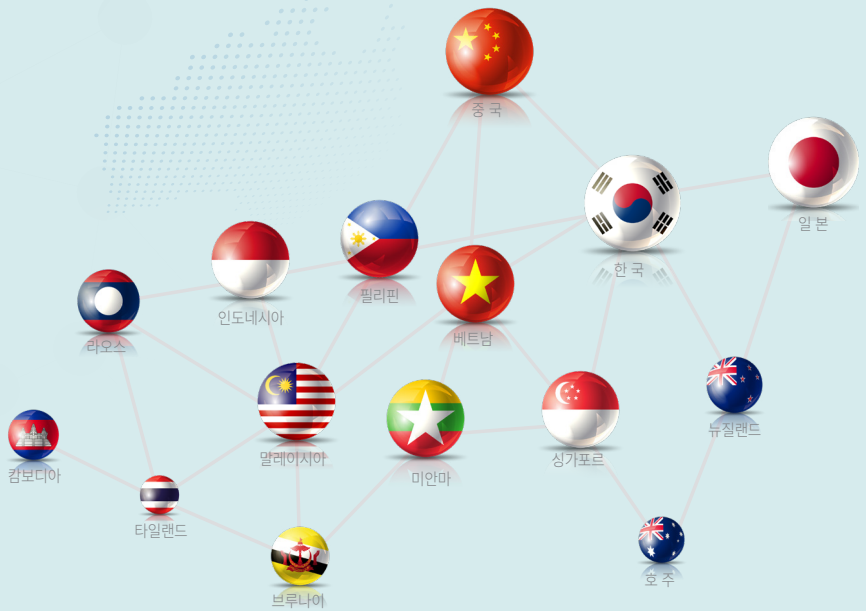
마) 관계서류 보존 의무 : 인정수출자는 상대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검증 대응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관계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인정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니어서 '제2종 원산품 서약서'를 작성한 생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 보존 의무 기간은 RCEP의 경우 3년이다.

- (검인) 인정수출자의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상대국 세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서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RCEP 협정의 경우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 한국의 對일본 수출 유망품목의 일본 현지 EPA 활용 참고사항

- ① **섬유 산업** : 일본 RCEP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CTC 규칙(세번변경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품의 판정 의뢰 시, 생산공정의 가공업자로부터 '생산 내용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섬유제품 제조 시 1개의 생산자가 모든 생산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복수의 기업이 각 공정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직포, 염색 등의 각 공정을 거래처에 의뢰하게 되면서 공급망이 복잡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 ② **철강 산업** : 일본에서는 일본철강연맹(The Japan Iron and Steel Federation)에서 업계 표준을 정하여 RCEP을 포함한 EPA를 운용하고 있다. 해당 업계는 공급망이 비교적 단순하여 원산지 증명 또한 복잡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철강업계는 생산자가 직접 수출을 하는 케이스보다는 상사 등을 통한 수출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규칙은 CTC 규칙이 일반적이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철강제품의 제조 과정 중 철광석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여 용해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광석이 어디에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미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③ **농수산물 분야** : RCEP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일본에서 완전히 재배·수확했다는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농림산품에 관한 생산증명서', '농림산가공품에 관한 제조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해당 증빙은 농업 협동조합(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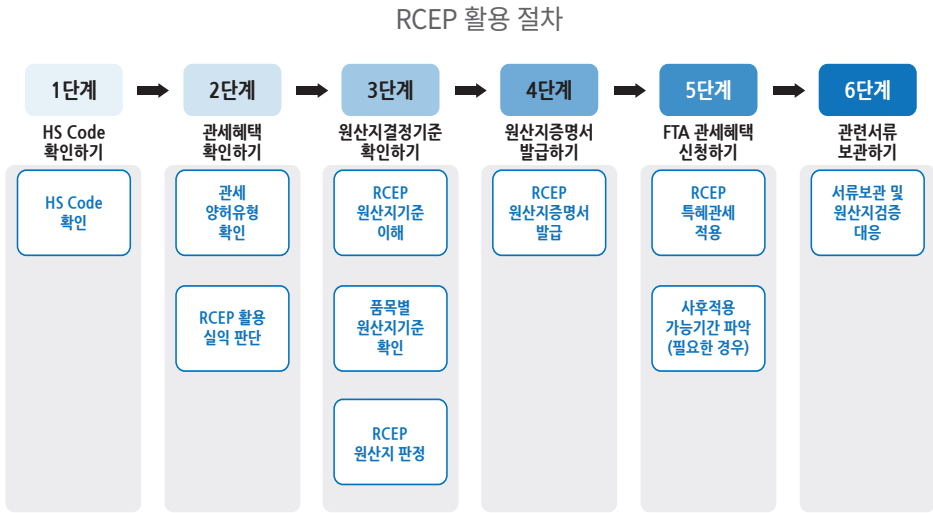


부 록

1. RCEP 활용 실무절차	166
2. 수출 1,000대 품목으로 본 RCEP 수출 유망품목	177
3. RCEP 원산지 간이확인제도 대상품목	187
4. 국가별 주요 품목 양허 실익	199
5. 일본 수출 RCEP 활용 유망품목	214
6. 일본 RCEP 활용 전략 원산지기준 관련 일본어 - 한국어 대조표	223
7. RCEP FAQ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225

부록1 RCEP 활용 실무 절차

RCEP 협정은 회원국 15개국 공통으로 아래와 같이 6단계로 구성된 RCEP 활용 절차를 따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HS CODE 확인하기(품목분류)

HS Code란, 대외무역 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세계관세기구(WCO) 가입국은 기본적으로 6자리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국가별 실정에 따라 세부적인 자릿수를 규정하고 있다.

HS Code는 각 자리 수별로 부(Section)-류(Chapter)-호(Heading)-소호(Sub-Heading)로 구성되며, 대부분인 ‘부’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에 따라 나누면서 표제에는 상품(Product)과 제품(Article)별 대표 품목이 기재되며, 중분류인 ‘류’는 2단위, 소분류인 ‘호’는 4단위, 세분류인 ‘소호’는 5, 6단위 그리고 7단위 아래로는 국가별 실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용한다.

HS Code는 단순히 물품의 품명이 아닌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번을 결정하기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2단계: 관세 혜택 확인하기

① 관세 양허세율 확인

RCEP 협정세율이 연도별로 얼마만큼 철폐 또는 인하되는지는 RCEP 협정문 부속서 1 관세 양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 양허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HS Code에 해당하는 품목이더라도 RCEP 체결국 중 어느 국가로 수출하는지에 따라 물품의 관세양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태국 관세 양허표 예시】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01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 및 버새											
	- 말											
0101.21.00	-- 번식용		%	%	%	%	%	%	%	%	%	%
1010.29.00	-- 기타		%	%	%	%	%	%	%	%	%	%
0101.30	- 당나귀											
0101.30.10	-- 번식용		%	%	%	%	%	%	%	%	%	%
0101.30.90	-- 기타		3%	27%	24%	21%	18%	12%	9%	6%	3%	%
0101.90.00	- 기타		3%	27%	24%	21%	18%	12%	9%	6%	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RCEP 협정문 부속서 1. 태국 관세 양허표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RCEP 협정문 부속서 1.의 태국 관세 양허표를 확인하면 되며, 양허표를 통해 기준세율과 이행 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철폐 또는 인하되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U”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된다는 뜻이다.

② RCEP 활용 실익 판단

RCEP 관세 혜택은 수출상대국의 기본세율과 RCEP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RCEP 활용 시 세율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RCEP 관세 혜택 예시					
1	A 품목	기본세율 2%	RCEP 협정세율 16%	4% 관세 혜택 발생	"RCEP 활용 실익 있음 → RCEP 협정세율 적용"
2	B 품목	기본세율 5%	RCEP 협정세율 5%	% 관세 혜택 발생	"RCEP 활용 실익 없음 → 기본세율 적용"

상기 사례와 같이 수출상대국의 관세율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 물품의 HS Code에 현재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해당 연도의 RCEP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RCEP 협정세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RCEP 활용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CEP 협정문

에서 규정한 해당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3단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① RCEP 원산지결정기준 이해

FTA 관세 혜택은 FTA 체결국가 간의 수출입 물품에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서 규정한 역내산(원산지) 인정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한정해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산지 인정조건을 ‘원산지결정기준’이라 하며 FTA 협정별 및 품목(HS CODE)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정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HS Code 별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RCEP 협정문 부속서 3-가를 통해 품목(HS Code)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기준		의미		비고
일반기준	기본 원칙	완전생산기준	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한 상품	협정문 제3.2조, 제3.3조
		역내가공원칙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가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협정문 제3.2 부속서 3-가
		충분가공원칙	당사국에서 단순 또는 경미한 공정만 수행된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음	협정문 제3.6조
		직접운송원칙	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칙 다만, 상품이 중간경유국의 관세 당국 통제 하에 하역, 재선적, 보관 등의 상태 유지를 위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제3국을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	협정문 제3.15조
	주요 분야별 특례기준	누적기준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국에서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 가능한 조항	협정문 제3.4조
최소기준		-제1류~제97류: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가격(FOB 기준)의 1%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0류~제63류: 비원산지재료의 총량이 상품 총 중량의 1% 초과하지 않을 것	협정문 제3.7조	

실질적 변형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PSR)	세번변경기준	완제품과 투입한 역외 원재료 간 HS CODE 변경 여부로 원산지 결정	부속서 3-가
	부가가치기준	역내 가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정도에 따라 원산지 결정	협정문 제3.5조 부속서 3-가
	조합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의 결합형으로 모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 인정	-
	선택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의 선택형으로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원산지 인정	-

②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 방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RCEP 협정문 부속서 3-가를 통해 품목(HS Code)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RCEP 회원국 공통으로 단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체결한 FTA 협정과 RCEP 협정세율이 동일한 경우에 기업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유리한 협정을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다.

【RCEP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예시】

HS 코드(HS 201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	호	소호		
				04.2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소호 제22 04.21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30	- 그 밖의 포도즙	2단위 세번변경 기준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RCEP 협정문 부속서 3-가

③ RCEP 원산지 판정

RCEP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의 검토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빙서류로는 대표적으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상기 서류를 기반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자재명세서(BOM)

자재명세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한 목록이며,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완제품 품명,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 완제품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과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명, 원산지, 소요량, 구매처 등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부가가치율(RVC) 산정을 위하여 거래명세서와 같은 가격 증빙자료를 기초로 각 원재료의 단가 및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물품 카탈로그, 사진 등 물품 상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관세사를 통해 확인받는 것을 권장한다.

【자재명세서 예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1) 완제품 관련 정보 기재

① 완제품 내역								
품명 및 품목번호(HS6단위)								
모델명								
적용협정								

2) 원재료 관련 정보 기재

일련 번호	품명 (재료명)	품목번호 (HS6단위)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	가격 (원)	공급처 (생산자)	인증서류
1	OOOOO	00000	KR	2	1,000,000	2,000,000	<input type="checkbox"/> 전자	원산지확인서
2	△△△△△	00000	미상	1	500,000	500,000	<input type="checkbox"/> 상사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원)	역내산 재료비		
						비역내산 재료비		
완제품 가격(원)								

3) BOM 작성자, 작성일자 기재 후 날인

작성 자 : _____ (서명)

상 호 : _____

작성일자 : _____

※ 지원파일형식: PDF, EXCEL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 서식

나) 제조공정도

제조공정도는 협정 당사국 내에서 RCEP 협정문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공정 이상의 충분한 가공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이다.

제조공정도에는 상단에 제품명, 모델규격 정보를 기재하고, 공정별로 공정의 명칭, 사진, 공정에 대한 세부 설명, 투입 원재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조공정도 예시】

1) 제품 정보 기재		제조공정도		
<input type="checkbox"/> 제품명: <input type="checkbox"/> 모델규격:				
공정명		2) 공정 그림 또는 사진 삽입		
세부설명		⇒		⇒
투입 원재료	. . .	⇒	.	⇒
		작성일자 : 작 성 자 : (서명)		
		4) 작업일자 및 작성자 기재 후 날인		

출처: 관세청, 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서식 목록 및 작성방법 예

다)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란 완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신청 시 원산지 국가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RCEP 협정상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추가적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7월 5일부터 아래의 원산지소명서 서식이 적용된다.

라)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확인서란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의 요청이

■ 4단계: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① 원산지증명서 개념

RCEP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입 거래 시 FTA의 적용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이다.

② RCEP 원산지증명서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RCEP 협정문 제3장 제2절 원산지 운영 절차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발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 3-나의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영문 서식
작성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 원산지신고서: 인증수출자, 협정문 제3.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들에 의하여 결정될 서식으로 작성 • 고유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를 포함 • 영어로 작성 •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 포함
원산지신고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라 작성 • 영어로 작성 • 증명인의 이름 및 서명 포함 •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 포함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원산지증명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수입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③ 서식

【RCEP 원산지증명서⁰³⁾ / 원산지신고서⁰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_____ (Country)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untry (if know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f known) Departure Date: _____ Vessel's name/Aircraft flight number, etc.: _____ Port of Discharge: _____												
5.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input type="checkbox"/> Given <input type="checkbox"/>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10. Origin Certifying Criterion	11. RCEP Country of Origin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4. Remarks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16.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17.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put type="checkbox"/> Third-party invoice <input type="checkbox"/> ISSUED RETROACTIVELY												

Declaration of Origin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Unique reference number: _____										
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2. Authorization code						
3. Produc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if known)				4.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5. Item number	6.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7.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8. Origin Certifying Criterion	9. RCEP Country of Origin	10.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1.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2. Remarks										
13. Declar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Declaration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Date of Declaration: _____ Name of Signatory: _____ Signature: _____										
14.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input type="checkbox"/> Third-party invoice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 증명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 활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자율 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다.
- ㉡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가 없다.
- ㉢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다.
- ㉣ 수출 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 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03)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 서식

04) 출처: 관세청,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 5단계: RCEP 관세 혜택 신청하기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RCEP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입신고 시점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납부한 실행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RCEP 협정문 상 특혜관세 대우 신청 및 수입 후 특혜관세 신청 관련해서는 제3장 원산지규정 제3.22조, 제3.23조에 규정되어 있다. RCEP 협정문에 따른 원칙적인 특혜관세 부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
- ② 신고서 작성 당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소지.
- ③ 수입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원본 또는 진정 등본을 수입 당사자에 제공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아래의 개정된 서식이 적용된다.

【RCEP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00. 00.)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23.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24. 협정관세 준용명	
25. 분할차수		26. 통관번호 (문 No.)	
		27. 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28. 원산지규정 기준	원산지요건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세관변경기준 [] 부가기준 [] 결정기준 [] 특정공정기준 [] 역위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자율발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율을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 서식			

6. 품명·모형·규격		7. 신청일 및 적용법명	신청일: <input type="checkbox"/> 법 제23조제1항 <input type="checkbox"/> 법 제23조제2항 <input type="checkbox"/> 법 제23조제3항
8. 원산지증명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일품명 []	
9.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주체		기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10. 원산지	11. 기관명 및 종류	국가기관 [] 상영회소 [] 비국가기관(기업) []	
12. 발급·작성번호	13. 발급·작성일		
14. 출산증명	15. 직출국		
16. 직출장	17. 출항일	18. 환적국	
19. 환적장	20. 환적일		
21. 연결원산지 증명서/발급 국가	22. 제3국송출장 발급국가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 서식

■ 6단계: 관련 서류 보관하기

① 서류 보관

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 제3.27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특혜관세 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FTA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이란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RCEP 협정의 원산지 검증 주요 항목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협정관세 적용신청, 직접운송원칙 등이 있으며,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내용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검증(수입국 세관) • 간접검증(수출 C/O 발급기관 또는 수출국 세관)
회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수출국 세관 • 직접검증 동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국 세관 •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검증: 요청 수령일로부터 30~90일 • 직접검증 동의: 요청 수령일로부터 30일 • 직접검증: 요청 수령일로부터 90~180일
	미회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세율 적용 제한

부록2

수출 1,000대 품목으로 본 RCEP 수출 유망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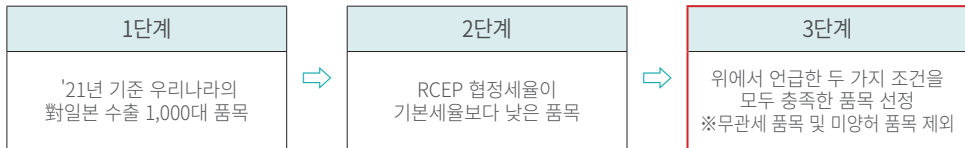
- 일본, 중국, 아세안 3개국(베트남, 인니, 태국) -

1. 일본

RCEP은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이며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으로, 수출 시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 수출 유망품목 선정기준

■ 선정기준



2) 수출 유망품목 리스트

HS CODE		일본 수입 세율 (%)		
일본 세번	품목명	기본세율 (2022)	WTO (2022)	RCEP (2023)
220900.0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8	7.5	6.1
854411.000	구리로 만든 것	5.8	4.8	3.9
281700.000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5.2	4.3	3.5
390810.000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5.6	3.7	3
74102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8	3	2.5
740931.000	코일모양	4.8	3	2.5
2917.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712.010	- 아디프산	4.6	3.9	3.2

부 록

8112.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가루			
811292.100	1 인덱스로 만든 것	3	2.5	2
3909.50	폴리우레탄			
390950.010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 럼프(lump) · 가루 (몰딩 가루를 포함한다) · 알갱이 · 플레이크 (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으로 한정한다	4.6	3.1	2.5
390950.090	- 기타	4.6	3.1	2.5
6110.30 ^{주1)}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1030.030	-- 스웨터	10.9	-10.9	9.5
611030.022	---- 기타	10.9	9.1	8
611030.099	---- 기타	10.9	-10.9	9.5 ^{주2)}

주1) HS 2012 6110.30의 경우 HS 2022에서는 611030.030, 611030.012, 611030.022, 611030.099로 구분

주2) 폴리에스테르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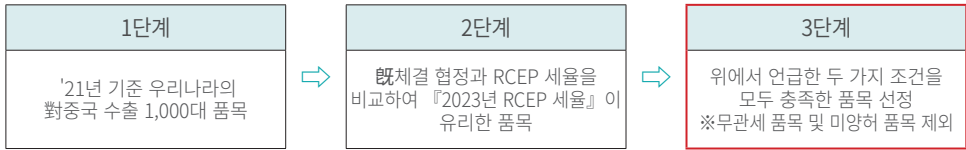
자료: 일본 세관,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2. 중국

중국과의 RCEP 발효로 인해 단계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既체결 협정(한-중 FTA·APTA⁰⁵) 세율과 비교하여,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 수출 유망품목 선정기준

■ 선정기준



2) 수출 유망품목 리스트

HS CODE		중국 수입 세율 (%)			
중국 세번	품목명	MFN (2022)	APTA (2022)	KR-CN FTA (2023)	RCEP (2023)
7403.11.9000	--- 음극의 형재	2		0	0
3207.30.000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0	0
7410.11.0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2.6	0	0
7901.10	-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1000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5 이상인 것	3		0	0
7901.11.9000	--- 기타	3		0	0
7410.2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10.21.1000	---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것	4	2.6	0	0
7410.21.9000	--- 기타	4	2.6	0	0
2903.21.0000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3.6	0	0
2711.12.0000	-- 프로판	5	3.5	0	0
2503.00.0000	- 황[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3	1.5	0	0
8481.80.40 ^{주1)}	--- 기타 밸브				
8481.80.4010	---- 감응식 조절 방식의 그 밖의 밸브	7	4.6	0	0
8481.80.4020	---- 고압 터빈 간격 제어 밸브	7	4.6	0	0

0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부 록

8481.80.4030	----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	7	4.6	0	0
8481.80.4040	---- 항공기 엔진용 예냉 제어 밸브	7	4.6	0	0
8481.80.4090	---- 기타 밸브(관, 보일러, 캔, 배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에 사용)	7	4.6	0	0
8501.31.0000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12	7.8	7.8	6

주1) 현재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8481.80.40 세번은 8481.80.4010, 8481.80.4020, 8481.80.4030, 8481.80.4040, 8481.80.4090으로 세분화하여 세율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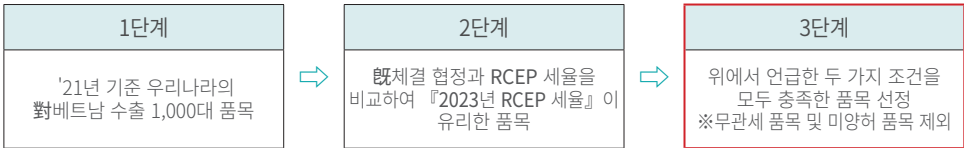
자료: 중국 해관총서,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한-중국 관세 양허표

3. 베트남

베트남과의 RCEP 발효로 인해 단계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既체결 협정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세율과 비교하여,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 수출 유망품목 선정기준

■ 선정기준



2) 수출 유망품목 리스트

HS CODE		베트남 수입 세율 (%)			
베트남 세번	품목명	MFN (2022)	AKFTA (2022)	VKFTA (2022 ^{※1})	RCEP (2023)
3903.3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3903.30.40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8	5	5	0
8544.49	-- 기타				
8544.49.49	---- 기타	10	50 ^{※2}	10	8
8708.40	- 기어박스외 그 부분품				
8708.40.19	--- 기타	10	미양허	10	8
7308.90	- 기타				
7308.90.50	-- 선박용 레일	10	5	5	0
8481.80	- 그 밖의 기기				
8481.80.61	---- 내부 지름이 5센티미터 초과 40센티미터 이하인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이트 밸브	15	16	15	12
8481.80.62	---- 기타	15	16	15	12
8481.80.63	--- 기타	15	16	15	12
3903.2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3903.20.40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10	5	5	0
8536.10	- 퓨즈				

부록

8536.10.91	--- 전기팬에 사용하는 것	25	24	24	20
8536.10.92	--- 기타(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25	24	24	20
8536.10.93	--- 차량용 퓨즈 블록	25	24	24	20
8536.10.99	--- 기타	15	24	24	12
7210.3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30.12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5	4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 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708.80.99	--- 기타	5	5	5	4
8501.10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01.10.51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3	5	3	0

주1) 현재 베트남 관세청을 통해 접근 가능한 수입 세율은 2022년도이기에 한-베트남 수입 세율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주2) 8544.49.49의 경우 한-아세안 관세 양허표에는 1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베트남 시행령(157/2017/ND-CP)에 따라 베트남 수입 시 50으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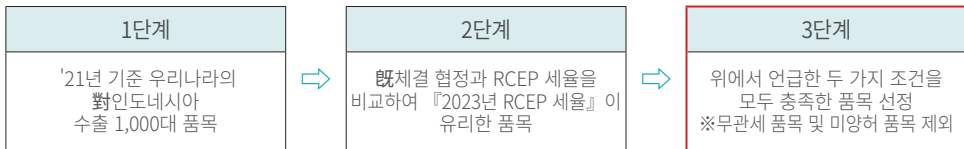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관세청,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한-베트남 양허표, 한-ASEAN 관세 양허표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의 RCEP 발효로 인해 단계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既체결 협정 (한-아세안 FTA) 세율과 비교하여,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 정보를 제공한다.

1) 수출 유망품목 선정기준

■ 선정기준



2) 수출 유망품목 리스트

HS CODE		인도네시아 수입 세율 (%)		
인도네시아 세 번	품목명	MFN (2022)	AKFTA (2023)	RCEP (2023)
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			
8413.70.31.00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4
8413.70.39.00	--- 기타	5	5	4
8413.70.49.00	--- 기타	5	5	4
8413.70.51.00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4
8413.70.59.00	--- 기타	5	5	4
8413.70.91.00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4
8413.70.99.00	--- 기타	5	5	4
3926.90	기타			
3926.90.49.00	--- 기타	15	5	0
7326.90	기타			
7326.90.99 ^{주1)}	--- 기타			
7326.90.91.00	--- 담배 케이스와 박스	7.5	5	0
3921.13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3921.13.10.00	--- 경질의 것	15	5	0

부 록

3921.1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1.19.20.00	--- 경질의 것	10	5	0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8.10.11.00	--- 타일	15	5	0
3918.10.19.00	--- 기타	15	5	0
3918.10.90.00	--- 기타	15	5	0
3921.90	기타			
3921.90.10.00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10	5	0
3921.90.20.00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10	5	0
3921.90.30.00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10	5	0
3921.90.90.00	-- 기타	10	5	0
0303.43.00.00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5	5	4
3920.49.00.00	-- 기타	10	5	0
6704.90.0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5	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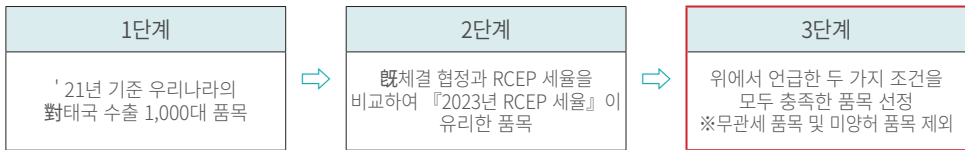
주1) AHTN 2012에 분류되었던 7326.90.99의 세법은 AHTN 2017의 7326.90.20과 7326.90.99로 변경
 자료: 인도네시아 국립 무역 저장소,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한-ASEAN 관세 양허표, TradeNAVI

5. 태국

태국과의 RCEP 발효로 인해 단계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既체결 협정 (한-아세안 FTA) 세율과 비교하여,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 수출 유망품목 선정기준

■ 선정기준



2) 수출 유망품목 리스트

HS CODE		태국 수입 세율 (%)		
태국 세번	품목명	기본세율 (2022)	AKFTA (2023)	RCEP (2023)
8409.91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제8701호의 차량용			
8409.91.21~8409.91.29		10	미양허	8
8409.91.31~8409.91.39		10	미양허	8
8409.91.41~8409.91.49		10	미양허	8
8708.40	-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708.40.91	--- 제8701호의 차량용	10	24	10 ^{주1)}
8708.40.92	--- 제8703호의 차량용	10	24	10 ^{주1)}
8708.40.99	--- 기타	10	24	10 ^{주1)}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95.10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10	24	10 ^{주1)}
8708.95.90	--- 부분품	10	24	10 ^{주1)}
8402.90	- 부분품			
8402.90.10	-- 보일러 몸체나 동체	5	0	0

부록

8402.90.90	-- 기타	5	0	0
8402.19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8402.19.11	---- 증기발생량이 1시간당 15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5	0	0
8402.19.19	---- 기타	10	0	0
8402.19.21	---- 증기발생량이 1시간당 15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5	0	0
8402.19.29	---- 기타	10	0	0
7019.90	기타			
7019.90.90	--기타	3	0	0

주1) RCEP 발효 11년차부터 관세 인하

자료: 태국 관세청,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한-ASEAN 관세 양허표

부록3

RCEP 원산지 간이확인제도(대상품목)

1) 제도의 개요

- (목적)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기업 FTA 활용편의 제고
- (근거)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FTA 특례고시 별표2의2
- (내용)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협정 상 원산지(한국산)가 인정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 제출 생략
 - * 예 : 강력분(1101.00) + 팜유(1511.90) + 분말스프(2103.90) → 라면(1902.30)
 - ↳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2단위 세번이 변경되어 원산지기준 충족(한국산 인정)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 완제품의 품목번호가 원재료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져 한국산으로 인정 가능한 품목(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을 관세청장 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때 원산지소명서*와 그 입증서류를 대신하여 국내 제조사실 입증서류(국내제조확인서) 1부만 제출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로 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가격 품목번호 등), 제조공정 등이 기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반 수출물품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수출물품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발급기관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제조공정도, BOM, 원재료수불부 등 7종 이상)	○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 인정되는 물품(관세청장 고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30px; margin: 5px 0;"></div> (좌 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30px; margin: 5px 0;"></div> 국내제조확인서 로 대체

부 록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022년 5월 10일 개정하여 RCEP에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총 255개를 지정하였다.(아래 표 참조)

2) 활용대상 품목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1	1902.19-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	1902.19-2000		
3	1902.19-3000		
4	1902.30-1010		
5	1905.90-1040		
6	1905.90-1090		
7	2005.99-1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8	2008.99-5010		
9	2101.11-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	2208.90-4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1	2503.0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12	2710.12-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3	2710.19-202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4	2710.19-3000		
15	2710.19-5020		
16	2713.20-0000	한-아세안 FTA, RCEP	
17	2902.2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8	2902.3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19	2902.43-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20	2909.43-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1	2917.14-0000		
22	2917.35-0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3	2917.36-1000		
24	2917.37-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5	2917.39-1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6	2929.1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7	3005.1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8	3212.10-0000		
29	3215.19-0000		
30	3305.10-0000		
31	3401.30-0000		
32	3506.91-1000		
33	3506.91-9000		
34	3707.90-1090		
35	3817.0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36	3901.10-9000	한-아세안 FTA, RCEP	
37	3903.2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38	3903.30-0000		
39	3903.90-1000		
40	3904.22-0000		
41	3906.10-0000		
42	3907.61-0000		
43	3907.69-0000		
44	3909.40-0000		
45	3909.50-0000		
46	3917.40-0000		

부 록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47	3918.9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48	3919.10-0000		
49	3919.90-0000		
50	3920.10-0000		
51	3920.20-0000		
52	3920.49-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53	3920.51-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54	3920.61-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55	3920.99-9090		
56	3921.13-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57	3921.19-1010		
58	3921.90-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59	3921.90-4020		
60	3923.1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61	3923.21-0000		
62	3923.29-0000		
63	3923.30-0000		
64	3924.10-0000		
65	3926.90-9000		
66	4002.11-0000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67	4002.2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68	4002.59-0000		
69	4005.10-1000		
70	4009.21-0000		
71	4009.31-0000		
72	4009.32-0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73	4011.10-1000		
74	4011.20-1010		
75	4011.20-1090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76	4016.93-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77	4107.9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78	4114.20-1000		
79	4805.24-9000		
80	4810.29-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81	4810.92-1010		
82	4810.92-9000		
83	5205.23-1000		
84	5402.11-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85	5402.20-0000		
86	5407.10-2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87	5407.42-0000		
88	5407.52-0000		
89	5407.53-0000		
90	5407.61-1000		
91	5407.61-2000		
92	5407.61-4000		
93	5407.69-2000		
94	5407.69-4000		
95	5407.72-0000		
96	5407.82-2000		
97	5407.92-2000		
98	5502.10-1000	한-아세안 FTA, RCEP	
99	5503.2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0	5503.20-9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1	5503.40-0000	한-아세안 FTA, RCEP	
102	5503.9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부 록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103	5601.22-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4	5607.49-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5	5807.10-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6	5902.20-0000		
107	5903.10-0000		
108	5903.20-0000		
109	5903.90-0000		
110	6001.10-2000		
111	6001.21-0000		
112	6001.22-0000		
113	6001.92-0000		
114	6004.10-0000		
115	6004.90-0000		
116	6005.35-2000		
117	6005.36-0000		
118	6005.37-0000		
119	6006.22-0000		
120	6006.23-0000		
121	6006.24-0000		
122	6006.32-0000		
123	6006.34-0000		
124	6006.42-0000		
125	6006.44-0000		
126	6006.90-0000		
127	6116.10-0000	한-중 FTA, RCEP	
128	6307.10-0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129	6309.00-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30	6909.1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31	7006.00-4000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132	7113.19-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33	7113.19-2000		
134	7114.19-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35	7114.19-9000		
136	7202.11-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37	7202.19-0000		
138	7202.30-0000		
139	7204.21-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140	7208.25-1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41	7208.25-9000		
142	7208.26-1000		
143	7208.26-9000		
144	7208.27-1000		
145	7208.27-9000		
146	7208.36-1000		
147	7208.36-9000		
148	7208.37-1000		
149	7208.37-9000		
150	7208.38-1000		
151	7208.38-9000		
152	7208.39-1000		
153	7208.39-9000		
154	7208.51-1000		
155	7208.51-9000		
156	7208.52-1000		
157	7208.52-9000		
158	7208.54-1000		
159	7208.54-9000		
160	7209.16-1000		
161	7209.16-9000		
162	7209.17-1000		

부 록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163	7209.17-9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64	7209.18-1000		
165	7209.18-9000		
166	7209.27-1000		
167	7209.27-9000		
168	7210.12-0000		
169	7210.49-101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170	7210.61-0000		
171	7212.40-2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172	7216.33-4000		
173	7217.10-0000		
174	7223.00-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75	7226.92-0000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76	7227.90-909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77	7228.5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78	7305.11-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79	7306.40-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80	7306.40-2000		
181	7306.5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82	7307.91-0000		
183	7307.93-0000		
184	7309.00-0000		
185	7310.10-0000		
186	7312.10-2099		
187	7318.15-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188	7318.15-2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189	7318.15-3000		
190	7318.16-0000	한-베트남 FTA, RCEP	
191	7323.93-0000		
192	7326.90-9000		
193	7408.11-0000		
194	7409.11-9000		
195	7409.19-9000		
196	7409.21-9000		
197	7409.29-9000		
198	7410.11-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99	7411.1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00	7412.10-0000	한-아세안 FTA, RCEP	
201	7413.00-0000	한-중 FTA, RCEP	
202	7502.1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03	7502.20-0000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04	7601.20-1000		
205	7601.20-2000		
206	7604.21-0000		
207	7604.29-9000		
208	7606.1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09	7606.9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210	7607.11-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11	7607.2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212	7608.20-0000		

부록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213	7610.9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14	7801.1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15	7801.10-9000		
216	7801.99-2090		
217	7901.11-0000		
218	7901.12-0000		
219	7902.00-0000		
220	7904.00-3000		
221	8113.00-0000	한-아세안 FTA	
222	8302.1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223	8302.20-0000		
224	8302.30-0000	한-베트남 FTA, RCEP	
225	8302.42-0000		
226	8403.10-1000		
227	8403.10-3000	한-중 FTA, RCEP	
228	8412.21-1000		
229	8413.30-4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230	8413.30-9000		
231	8413.81-9000		
232	8414.30-1000		
233	8414.59-9000		
234	8414.80-1000		
235	8414.80-9190		
236	8414.80-9210		
237	8414.80-9220		
238	8414.80-9230		
239	8414.80-9900		
240	8415.10-2010		
241	8415.10-2020		
242	8415.10-9020		
243	8417.10-2010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244	8418.10-103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245	8419.40-0000		
246	8419.50-9000		
247	8420.10-9000		
248	8421.23-1000		
249	8422.20-0000		
250	8422.30-2000		
251	8422.30-3000		
252	8422.40-4000		
253	8422.40-9010		
254	8422.40-9020		
255	8422.40-9030		
256	8424.10-0000		
257	8438.20-0000		
258	8474.80-2000	한-중 FTA, RCEP	
259	8477.20-2000		
260	8477.40-0000		
261	8477.80-0000		
262	8479.81-3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263	8479.82-1000		
264	8479.82-4000		
265	8481.20-1000	한-중 FTA, RCEP	
266	8481.20-2000		
267	8481.30-0000		
268	8481.40-0000		
269	8481.80-1010		
270	8481.80-1030		
271	8481.80-2000		
272	8482.10-2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73	8482.10-9000		
274	8482.20-0000	한-중 FTA,	
275	8482.40-0000	한-베트남 FTA, RCEP	

부 록

연번	HS	활용대상 협정	비고
276	8483.10-9010	한-중 FTA, RCEP	
277	8483.30-9000		
278	8483.40-9010		
279	8483.50-9000		
280	8501.1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81	8505.19-1000	한-중 FTA, RCEP	
282	8505.19-9000		
283	8507.10-0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284	8507.60-2000	한-중 FTA, RCEP	
285	8507.60-3000		
286	8507.60-9000		
287	8507.80-0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288	8514.40-9000	한-중 FTA, RCEP	
289	9001.30-0000	한-아세안 FTA, RCEP	
290	9001.50-1000		
291	9001.9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292	9001.90-3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93	9603.29-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부록4

국가별 주요 품목 양허 실익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

■ 중국 對 한국 주요 품목의 양허 실익

산업군	품명	HS CODE	한-중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기계 · 전기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 태양열 물 가열기	8419.19.10	35.0	31.5	-3.5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정전감광식	8443.31.10	10.0	9.0	-1.0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 -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재생산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8443.39.12	10.0	9.0	-1.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초음파 방식의 세척 기기	8486.30.41	10.0	9.0	-1.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와이어 접착기	8486.40.22	8.0	7.2	-0.8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 출력이 250와트 이하	8501.31.00	7.8	6.0	-1.8
	텔레비전 카메라 -특수목적용	8525.80.11	10.0	9.0	-1.0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	8528.71.10	30.0	27	-3.0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 기타(전연색)	8528.71.80	30.0	27.0	-3.0
	신호발생기 - 주파수 대역이 1,500메가헤르츠 미만인 유니버설 신호발생기(universal signal generator)	8543.20.10	15.0	14.3	-0.7
자동차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	8708.29.90	9.0	6.0	-3.0
	클러치와 그 부분품 -기타	8708.93.90	10.0	6.0	-4.0
의료용 기기	의료용 기구 -기타	9018.19.49	4.0	3.6	-0.4
	그 밖의 용도의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엑스선비파괴 시험장비	9022.19.20	4.0	3.6	-0.4
	그 밖의 용도의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기타	9022.19.90	4.0	3.6	-0.4

부 록

산업군	품명	HS CODE	한·중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의료용 기기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 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9024.90.00	6.0	5.4	-0.6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00	5.0	4.5	-0.5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0.39.00	8.0	7.2	-0.8
	-기타(기록장치를 갖춘것으로 한정)				
	그 밖의 기기(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 -유도용량이나 정전용량 측정용	9030.84.10	10.0	9.5	-0.5
	기타 그 밖의 기기 -유도용량이나 정전용량 측정용	9030.89.10	14.0	12.6	-1.4

■ 베트남 對 한국 주요 품목의 양허 실적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주류	사케	2206.00.20	50.0	49.5	-0.5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2208.20.90	48.0	45.0	-3.0
	위스키류	2208.30.00	48.0	45.0	-3.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물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주정	2208.40.00	48.0	45.0	-3.0
	진(gin)과 제네바(geneva)	2208.50.00	48.0	45.0	-3.0
	보드카	2208.60.00	48.0	45.0	-3.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알(cordial)	2208.70.00	48.0	45.0	-3.0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208.90.10	48.0	45.0	-3.0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208.90.20	48.0	45.0	-3.0
	그 밖의 삼수(samsu)(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208.90.30	48.0	45.0	-3.0
	그 밖의 삼수(samsu)(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208.90.40	48.0	45.0	-3.0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 의 40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208.90.50	48.0	45.0	-3.0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 의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208.90.60	48.0	45.0	-3.0
	비터(bitters)와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 량의 100분의 57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208.90.70	48.0	45.0	-3.0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주류	비터(bitters)와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57을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208.90.80	48.0	45.0	-3.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기타	2208.90.90	48.0	45.0	-3.0
화학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3903.20.40	5.0	0.0	-5.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3903.30.40	5.0	0.0	-5.0
	초산비닐 공중합체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3905.21.00	5.0	0.0	-5.0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3905.99.10	5.0	0.0	-5.0
비(非)금속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한 압연제품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기타	7210.11.90	5.0	4.5	-0.5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한 압연제품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7210.12.10	5.0	4.5	-0.5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한 압연제품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기타	7210.12.90	5.0	4.5	-0.5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한 압연제품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7210.30.12	5.0	4.5	-0.5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한 압연제품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7210.41.12	10.0	9.0	-1.0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 -납땜 스틱 제조용의 것	7213.99.10	5.0	4.5	-0.5
	기타의 봉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7215.90.10	15.0	13.5	-1.5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7217.10.10	15.0	13.5	-1.5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부분품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7308.30.00	5.0	0.0	-5.0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부분품 - 선박용 레일	7308.90.50	5.0	0.0	-5.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외 그 밖의 연료 겸용	7321.11.00	15.0	13.5	-1.5
	구리의 선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기타	7408.11.90	1.5	0.0	-1.5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8213.00.00	5.0	0.0	-5.0

부 록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비(非)금속	비금속제의 봉과 선 - 기타	8311.30.90	24.0	15.0	-9.0
기계 · 전기	제8711호의 차량의 엔진용 - 기화기와 그 부분품	8409.99.31	15.0	13.5	-1.5
	제8711호의 차량의 엔진용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8409.99.32	15.0	13.5	-1.5
	제8711호의 차량의 엔진용 - 실린더 라이너	8409.99.33	15.0	13.5	-1.5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8409.99.34	15.0	0.0	-15.0
	피스톤	8409.99.35	15.0	0.0	-15.0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기타	8409.99.39	15.0	0.0	-15.0
	제87류의 그 밖의 차량의 엔진용 - 기화기와 그 부분품	8409.99.41	10.0	9.0	-1.0
	제87류의 그 밖의 차량의 엔진용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8409.99.42	10.0	9.0	-1.0
	제87류의 그 밖의 차량의 엔진용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8409.99.44	10.0	9.0	-1.0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8409.99.45	10.0	0.0	-10.0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 인 것으로 한정한다)	8409.99.46	10.0	0.0	-10.0
	그밖의피스톤	8409.99.47	10.0	0.0	-10.0
	피스톤링과 거드전핀	8409.99.48	10.0	0.0	-10.0
	제87류의 그 밖의 차량의 엔진용 -기타	8409.99.49	10.0	0.0	-10.0
	그 밖의 원심펌프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8413.70.31	5.0	0.0	-5.0
	그 밖의 원심펌프 - 기타	8413.70.39	5.0	0.0	-5.0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원심펌프	8413.70.41	5.0	0.0	-5.0
	그 밖의 워터 펌프 - 기타	8413.70.49	10.0	9.0	-1.0
	그 밖의 워터 펌프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8413.70.51	5.0	0.0	-5.0
	액체 펌프 -소호 제8413.70.11호와 제8413.70.19호의 펌프의 것	8413.91.30	5.0	4.5	-0.5
	가역 열펌프 -공기조절기(철도용)	8415.81.21	25.0	22.5	-2.5
	--출력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역 열펌프 -공기조절기(자동차용) -- 출력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5.81.31	25.0	22.5	-2.5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기계·전기	공기조절기(기타)	8415.81.93	25.0	22.5	-2.5
	-출력이 21.10킬로와트 이하인 것				
	공기조절기 - 출력이 21.10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5.81.94	25.0	22.5	-2.5
	공기조절기(철도용) - 출력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5.82.21	25.0	24.3	-0.7
	공기조절기(자동차용) - 출력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5.82.31	25.0	24.3	-0.7
	공기조절기(기타) - 출력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5.82.91	25.0	24.3	-0.7
	송수관로 밸브 -내부 지름이 5센티미터 초과 40센티미터 이하인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이트 밸브	8481.80.61	15.0	13.5	-1.5
	송수관로 밸브 - 내부 지름이 4센티미터 이상인 주철제의 게이트 밸브, 내부 지름이 8센티미터 이상인 주철제의 버터플라이 밸브 -- 기타	8481.80.62	15.0	13.5	-1.5
	송수관로 밸브 -기타	8481.80.63	15.0	13.5	-1.5
	스테퍼 모터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 되는 것	8501.10.51	3.0	0.0	-3.0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2.11.00	.015	13.5	-1.5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2.20.10	20.0	18.0	-2.0
	---- 용량이 1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고압전력이 110킬 로볼트 이상인 것	8504.21.92	5.0	4.5	-0.5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그밖의 변압기 -- 기타	8504.32.49	5.0	0.0	-5.0
	아연 탄소(외부 용적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06.80.10	24.0	15.0	-9.0
	- 그 밖의 오븐, 쿠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 및 로스터 -- 기타	8516.60.90	20.0	18.0	-2.0
	--- 가정용 기기의 봉인된 전열판	8516.90.21	3.0	2.7	-0.3
	유선전화 중계기	8518.40.20	3.0	0.0	-3
	전사기계(촬영용 제외)	8519.81.49	25.0	22.5	-2.5
	음향재생기기 -기타	8519.81.79	25.0	22.5	-2.5
	퓨즈 - 전자팬에 사용하는 것	8536.10.91	24.0	22.5	-1.5
	퓨즈 - 기타(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8536.10.92	24.0	22.5	-1.5

부 록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기계 · 전기	퓨즈 - 차량용 퓨즈 블록	8536.10.93	24.0	22.5	-1.5
	퓨즈 - 기타	8536.10.99	24.0	13.5	-10.5
	디지털 계전기	8536.49.10	3.0	0.0	-3.0
	계전기 -기타	8536.49.90	3.0	0.0	-3.0
	절연 전선 · 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 - 기타	8544.49.49	10.0	9.0	-1.0
차량 기기	눈 위 여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 - 기타	8703.10.90	78.0	63.0	-15.0
	제8703호의 차량 차체 - 기타	8707.10.90	32.0	25.2	-6.8
	휠캡 - 기타	8708.70.19	20.0	18.0	-2.0
	서스펜션 시스템 부분품 - 기타	8708.80.99	5.0	4.5	-0.5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 제8703호의 차량용	8708.92.20	20.0	18.0	-2.0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8711.10.92	75.0	70.0	-5.0
	실린더용량이 50cc를 초과 250cc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8711.20.20	75.0	70.0	-5.0
	실린더용량이 800cc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기타	8711.50.90	50.0	47.0	-3.0
	전기구동식의 모터사이클	8711.90.51	70.0	60.0	-10.0
	실린더용량이 200cc를 초과하고 500cc 이하인 것	8711.90.53	70.0	60.0	-10.0
	실린더 용량이 500cc를 초과하는 것	8711.90.54	70.0	60.0	-10.0
	전기구동식의 모터사이클	8711.90.91	65.0	60.0	-5.0
	기타 모터사이클	8711.90.99	65.0	60.0	-5.0

■ 인도네시아 對 한국 주요 품목의 양허 실익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합성 수지	플라스틱 관 - 기타 (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 그밖의 재료로 보강 되거나 결합되지않은것으로한정)	3917.33.00.00	5.0	0.0	-5.0
	타일 바닥 깔개	3918.10.11.00	5.0	0.0	-5.0
	염화비닐 중합체의 바닥 깔개	3918.10.19.00	5.0	0.0	-5.0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합성 수지	염화비닐 중합체의 벽피복재나 천장피복재	3918.10.90.00	5.0	0.0	-5.0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바닥 깔개	3918.90.14.00	5.0	0.0	-5.0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 -기타	3918.90.19.00	5.0	0.0	-5.0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90.92.00	5.0	0.0	-5.0
	그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기타	3918.90.99.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에틸렌의 중합체 --기타	3920.10.0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프로필렌의 중합체 --기타	3920.20.9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스티렌 중합체 --용해하여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	3920.30.1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스티렌 중합체 --냉장고 제조용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ABS) 판	3920.30.2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스티렌 중합체 --기타	3920.30.9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기타	3920.49.0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아크릴 중합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3920.51.0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플레이트와 판	3920.61.1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기타	3920.61.9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3920.73.00.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페놀수지로 만든 것 --기타	3920.94.90.00	5.0	0.0	-5.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스티렌 중합체 --경질의 것	3921.11.20.00	5.0	0.0	-5.0

부 록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합성 수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폴리우레탄 --경질의것	3921.13.10.00	5.0	0.0	-5.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그밖의플라스틱(셀룰러) --경질의것	3921.19.20.00	5.0	0.0	-5.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기타 --벌커나이즈드파이버의것	3921.90.10.00	5.0	0.0	-5.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기타 --경화단백질의것	3921.90.20.00	5.0	0.0	-5.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기타 --천연고무의화학적유도체의것	3921.90.30.00	5.0	0.0	-5.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기타	3921.90.90.00	5.0	0.0	-5.0	
	화학물질 · 방사능이나 화재보호용 의류	3926.20.60.00	5.0	0.0	-5.0	
	작은 조각상과 그밖의 장식용품	3926.40.00.00	5.0	0.0	-5.0	
	어망용 찌(Floats)	3926.90.10.00	5.0	0.0	-5.0	
	부채와 핸드스크린 · 이들의 살과 자루와 그 부분품	3926.90.20.00	5.0	0.0	-5.0	
	경찰 방패	3926.90.41.00	5.0	0.0	-5.0	
	용접이나 이와 유사한 작업용 보호마스크	3926.90.42.00	5.0	0.0	-5.0	
	생명구조 쿠션	3926.90.44.00	5.0	0.0	-5.0	
	안전과 방호용품	3926.90.49.00	5.0	0.0	-5.0	
	기폭장치용 플라스틱 제이형 훅(Jhooks)이나 번치 블록	3926.90.55.00	5.0	0.0	-5.0	
	신발의 골	3926.90.81.00	5.0	0.0	-5.0	
	목주용 구슬	3926.90.82.00	5.0	0.0	-5.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3926.90.92.00	5.0	0.0	-5.0	
	의류 및 기타 의류 제품	상의-남성용이나 소년용[라미(ramie) · 린넨(linen)이 나실크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6109.90.10.00	5.0	0.0	-5.0
		여성 속옷 -면으로만든것	6212.10.10.00	5.0	0.0	-5.0
여성 속옷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6212.10.90.00	5.0	0.0	-5.0	
여성 하의 속옷 -면으로만든것		6212.20.10.00	5.0	0.0	-5.0	
여성 하의 속옷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6212.20.90.00	5.0	0.0	-5.0	
면으로 만든것 -상흔조직과피부부식처리용압박복		6212.90.11.00	5.0	0.0	-5.0	
면으로 만든것 -에슬레틱서포터		6212.90.12.00	5.0	0.0	-5.0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의류 및 기타 의류 제품	면으로 만든것 -기타	6212.90.19.00	5.0	0.0	-5.0
	그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상흔조직과피부이식처리용압박복	6212.90.91.00	5.0	0.0	-5.0
	그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애슬레틱서포터	6212.90.92.00	5.0	0.0	-5.0
	합성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부분가발	6704.19.00.00	5.0	0.0	-5.0
	인조 재료로 만든 가발(합성방직용 섬유제외)	6704.90.00.00	5.0	0.0	-5.0
	은으로 만든 귀금속 부분품	7113.11.10.00	5.0	0.0	-5.0
	은으로 만든 귀금속	7113.11.90.00	5.0	0.0	-5.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뱅글스(Bangles)	7117.19.10.00	5.0	0.0	-5.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그밖의모조신변장식용품	7117.19.20.00	5.0	0.0	-5.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부분품	7117.19.90.00	5.0	0.0	-5.0
	뱅글스 -전체가플라스틱이나유리인것	7117.90.11.00	5.0	0.0	-5.0
	뱅글스 -전체가구드 · 가공한귀갑(龜甲) · 상아 · 뼈 · 뿔 · 산호 · 자개와그밖의동 물성조각용재료,가공한식물성이나가공된광물성 조각용재료인것	7117.90.12.00	5.0	0.0	-5.0
	뱅글스 -전체가자기제인것	7117.90.13.00	5.0	0.0	-5.0
	뱅글스 -기타	7117.90.19.00	5.0	0.0	-5.0
	철강제품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 수편침 또는 자수침	7319.90.10.00	5.0	0.0
철강으로 만든 돛바늘 · 코바늘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7319.90.90.00	5.0	0.0	-5.0
스테인리스강 재질이		7323.93.20.00	9.6	0.0	-9.6
철강 가정용 물품-재질이		7323.99.20.00	9.6	0.0	-9.6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주방용설거지통		7324.10.10.00	9.6	0.0	-9.6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수세식화장실이나소변기(고정형태)		7324.90.10.00	5.0	0.0	-5.0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변기와이동식소변기		7324.90.30.00	9.6	0.0	-9.6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주방용설거지통이나욕조의부분품		7324.90.91.00	9.6	0.0	-9.6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수세식화장실이나소변기(고정형태)의부분품		7324.90.93.00	9.6	0.0	-9.6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기타		7324.90.99.00	9.6	0.0	-9.6

부 록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철강제품	그밖의 철강제품 -가금류유리와이와유사한것	7326.20.50.00	9.6	0.0	-9.6
	그밖의 철강제품 -편자,승마구두스퍼(spurs)	7326.90.70.00	5.0	0.0	-5.0
	그밖의 철강제품 -담배케이스와박스	7326.90.91.00	5.0	0.0	-5.0
	그밖의 철강제품 -라텍스수집용스파우트와컵	7326.90.99.10	5.0	0.0	-5.0
	그밖의 철강제품 -쥐뿔	7326.90.99.20	5.0	0.0	-5.0
기계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출력이100킬로와트를초과 --기타	8408.90.50.90	5.0	0.0	-5.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기타 --제8429호나제8430호의기계류용	8408.90.91.00	5.0	0.0	-5.0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 -싱글스테이지,편흡입수평방향샤프트워터펌프 --흡입구지름이200밀리미터이하인것	8413.70.31.00	5.0	4.5	-0.5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 -물속에잠길수있는워터펌프 --기타	8413.70.39.00	5.0	4.5	-0.5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 -그밖의워터펌프(유속이1시간당8,000세제곱미터 이하인것으로한정) --전기작동식의아닌것	8413.70.41.10	5.0	4.5	-0.5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 -그밖의워터펌프(유속이1시간당8,0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전기작동식이아닌것	8413.70.41.20	5.0	4.5	-0.5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 -그밖의워터펌프(유속이1시간당8,0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기타	8413.70.49.00	5.0	4.5	-0.5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그밖의워터펌프 (유속이1시간당8,000세제곱미터초과13,000세제곱 미터 이하인것으로한정) --흡입구지름이200mm 이하인 것	8413.70.51.00	5.0	4.5	-0.5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 -그밖의워터펌프(유속이1시간당8,000세제곱미터 초과13,0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기타	8413.70.59.00	5.0	4.5	-0.5
	액체펌프, 액체엘리베이터 -기타 --흡입구지름이200mm이하인것	8413.70.91.00	5.0	4.5	-0.5
	기타 워터펌프 -기타	8413.70.99.00	5.0	4.5	-0.5
	접적 관개시스템	8424.81.10.00	5.0	4.5	-0.5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기계류	농업용이나 원예용 스프레이 -기타(전기작동식의것)	8424.81.50.00	5.0	4.5	-0.5
자동차 부품	조립되지 않은 기어박스 -제8704.10.28.00호에속하는차량용 (중량이1.2톤이상의것)	8708.40.27.10	5.0	0.0	-5.0
	자동차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부분품 -조립된것 --제8704.10.28.00호에속하는차량용 (구동축지름이120밀리미터이상의것)	8708.50.27.10	5.0	0.0	-5.0
	타이어를 갖추지 않은 차륜 -제8704.10.28.00호에속하는차량용 (지름이1,000밀리미터이상의것)	8708.70.39.10	5.0	0.0	-5.0

필리핀 對 한국 주요 품목의 양허 실익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농수축산물	황다랑어[터너스알바카레스(Thunnusalbacares)]	0303.42.00	5.0	0.0	-5.0
	가다랑어또는줄무늬비니토	0303.43.00	5.0	0.0	-5.0
	가공치즈	0406.30.00	7.0	0.0	-7.0
	용안(longans)[마타쿠칭(matakucing)을포함한다]	0810.90.10	10.0	0.0	-10.0
	리치(lychees)	0810.90.20	10.0	0.0	-10.0
	람부탄(rambutan)	0810.90.30	10.0	0.0	-10.0
	랑삿(langsat),스타프루트(starfruit)	0810.90.40	10.0	0.0	-10.0
	잭프루트(jackfruit)[첼페탁과낭가 (cempedakandangka)]	0810.90.50	10.0	0.0	-10.0
	타마린드(tamarinds)	0810.90.60	10.0	0.0	-10.0
	살락(salacca)[스네이크프루트(snakefruit)]	0810.90.91	10.0	0.0	-10.0
	용과(dragonfruit)	0810.90.92	10.0	0.0	-10.0
	사포딜라(sapodilla)[치쿠프루트(cikufruit)]	0810.90.93	10.0	0.0	-10.0
	기타 과실	0810.90.99	10.0	0.0	-10.0
차 ·커피·마태	커피·차·마태의 조제품-분말차	2101.20.90	10.0	0.0	-10.0
	커피·차·마태의 조제품-기타	2101.20.90	10.0	0.0	-10.0
화학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2905.32.00	1.0	0.0	-1.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2910.30.00	3.0	0.0	-3.0
	초산	2915.21.00	3.0	0.0	-3.0
	오르토프탈산디옥틸	2917.32.00	1.0	0.0	-1.0

부 록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화학	항진균 성분을 갖고 있는 샴푸	3305.10.10	8.0	0.0	-8.0
	샴푸-기타	3305.10.90	8.0	0.0	-8.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소매용	3811.21.10	3.0	0.0	-3.0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기타	3811.21.90	3.0	0.0	-3.0
	스테아르산	3823.11.00	1.0	0.0	-1.0
	폴리에틸렌-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3901.10.12	12.0	10.0	-2.0
	폴리에틸렌-기타	3901.10.19	12.0	10.0	-2.0
	기타-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3901.10.92	12.0	10.0	-2.0
	에틸렌 -기타	3901.10.99	12.0	10.0	-2.0
	폴리에틸렌(비중이0.94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3901.20.00	12.0	10.0	-2.0
	에틸렌 초산 비닐공중합체	3901.30.00	3.0	0.0	-3.0
	분산액인것	3901.90.40	3.0	0.0	-3.0
	에틸렌의 중합체 -기타	3901.90.90	3.0	0.0	-3.0
	폴리프로필렌-분산액인것	3902.10.30	12.0	10.0	-2.0
	폴리프로필렌 -기타	3902.10.90	12.0	10.0	-2.0
	프린트 잉크 배합용으로 적합한 염소화 폴리프로필렌	3902.90.10	12.0	3.0	-9.0
	폴리스티렌-알갱이	3903.11.10	12.0	10.0	-2.0
	분산액인것	3903.19.10	12.0	10.0	-2.0
	폴리스티렌-기타-알갱이-내충격성폴리스티렌(HIPS)	3903.19.21	12.0	10.0	-2.0
	폴리스티렌-알갱이 -기타	3903.19.29	12.0	10.0	-2.0
합성 수지	폴리에틸렌-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3901.10.12	12.0	10.0	-2.0
	폴리에틸렌 -기타	3901.10.19	12.0	10.0	-2.0
	기타-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3901.10.92	12.0	10.0	-2.0
	에틸렌 -기타	3901.10.99	12.0	10.0	-2.0
	폴리에틸렌(비중이0.94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3901.20.00	12.0	10.0	-2.0
	에틸렌 초산 비닐공중합체	3901.30.00	3.0	0.0	-3.0
	분산액인것	3901.90.40	3.0	0.0	-3.0
	에틸렌의 중합체 -기타	3901.90.90	3.0	0.0	-3.0
	폴리프로필렌-분산액인것	3902.10.30	12.0	10.0	-2.0
	폴리프로필렌 -기타	3902.10.90	12.0	10.0	-2.0
	프린트 잉크 배합용으로 적합한 염소화 폴리프로필렌	3902.90.10	12.0	3.0	-9.0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합성 수지	폴리스티렌-알갱이	3903.11.10	12.0	10.0	-2.0
	분산액인것	3903.19.10	12.0	10.0	-2.0
	폴리스티렌-기타-알갱이-내충격성폴리스티렌(HIPS)	3903.19.21	12.0	10.0	-2.0
	폴리스티렌-알갱이-기타	3903.19.29	12.0	10.0	-2.0
	폴리스티렌-기타-내충격성폴리스티렌(HIPS)	3903.19.91	12.0	10.0	-2.0
	폴리스티렌-기타	3903.19.99	12.0	10.0	-2.0
	단일폴리머(서스펜션형으로한정한다)	3904.10.10	12.0	10.0	-2.0
	폴리(염화비닐)-알갱이	3904.10.91	12.0	10.0	-2.0
	폴리(염화비닐)-가루	3904.10.92	12.0	10.0	-2.0
	폴리(염화비닐)-기타	3904.10.99	12.0	10.0	-2.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분산액인것	3906.10.10	3.0	0.0	-3.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아크릴	3906.10.90	3.0	0.0	-3.0
	폴리카보네이트	3907.40.00	3.0	0.0	-3.0
	폴리아미드	3908.90.00	5.0	0.0	-5.0
	경화단백질로 만든 것-모노필라멘트	3916.90.41	12.0	10.0	-2.0
	경화단백질로 만든 것-기타	3916.90.49	12.0	10.0	-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3916.90.50	12.0	10.0	-2.0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16.90.60	12.0	10.0	-2.0
	기타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	3916.90.91	12.0	10.0	-2.0
	기타 플라스틱- 기타	3916.90.99	12.0	10.0	-2.0
	염화비닐 중합체 바닥 깔개-타일	3918.10.11	12.0	10.0	-2.0
	염화비닐 중합체 바닥 깔개-기타	3918.10.19	12.0	10.0	-2.0
	염화비닐 중합체-기타	3918.10.90	12.0	10.0	-2.0
	바닥 깔개-타일(폴리에틸렌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3918.90.11	12.0	10.0	-2.0
	바닥 깔개-기타(폴리에틸렌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3918.90.13	12.0	10.0	-2.0
	바닥 깔개-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18.90.14	12.0	10.0	-2.0
	기타 바닥 깔개	3918.90.19	12.0	10.0	-2.0
	바닥 깔개-기타-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	3918.90.91	12.0	10.0	-2.0
	바닥 깔개-기타-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18.90.92	12.0	10.0	-2.0
	바닥 깔개-기타-기타	3918.90.99	12.0	10.0	-2.0
	플라스틱 접착성 판, 쉬트, 필름, 박 등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만든것	3919.90.10	15.0	10.0	-5.0
	플라스틱 접착성 판, 쉬트, 필름, 박 등 - 경화단백질로만든것	3919.90.20	15.0	10.0	-5.0
	플라스틱 접착성 판, 쉬트, 필름, 박 등 - 기타	3919.90.90	15.0	10.0	-5.0

부 록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절감 세율
합성 수지	플라스틱 판, 스위트, 필름, 박 등 -스티렌 중합체의 것 - 용해하여 접착제로 사용할수있는종류로만든것	3920.30.10	15.0	10.0	-5.0
	플라스틱 판, 스위트, 필름, 박 등 -스티렌 중합체의 것 -냉장고 제조용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ABS)판	3920.30.20	15.0	10.0	-5.0
	플라스틱 판, 스위트, 필름, 박 등 -스티렌 중합체의 것 -기타	3920.30.90	15.0	10.0	-5.0
	플라스틱 판, 스위트, 필름, 박 등 -아크릴 중합체의 것 -기타	3920.59.00	5.0	0.0	-5.0
	플라스틱 판, 스위트, 필름, 박 등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만든것	3920.62.00	5.0	0.0	-5.0
차량	경기용자전거	8712.00.10	8.0	0.0	-8.0
	어린이용자전거	8712.00.20	8.0	0.0	-8.0
	그밖의자전거	8712.00.30	8.0	0.0	-8.0
	자전거 -기타	8712.00.90	8.0	0.0	-8.0
	자전거 부분품-핸들바(bars)·필라(pillars) ·흠받기·반사경·캐리어·컨트롤케이블 ·램프브래킷이나브래킷용러그,그밖의부속품	8714.99.11	8.0	0.0	-8.0
	자전거 부분품- 체인휠과 크랭크, 그밖의 부분품	8714.99.12	8.0	0.0	-8.0
	자전거 부분품- 핸들바(bars)·필라(pillars) ·흠받기·반사경·캐리어·컨트롤케이블 ·램프브래킷이나브래킷용러그,그밖의부속품	8714.99.91	8.0	0.0	-8.0
	자전거 부분품- 체인휠과 크랭크, 그밖의 부분품	8714.99.92	8.0	0.0	-8.0

■ 호주 對 한국 주요 품목의 양허 실익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주류	발포성 포도주 -기타(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1.15초과100분의10이하인것)	2204.10.23	\$79.22/L of alcohol	4.0
	발포성 포도주 -기타	2204.10.29	\$79.22/L of alcohol	4.0
	베르무 -기타(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1.15초과100분의10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2205.10.30	\$79.22/L of alcohol	4.0

산업군	품명	HS CODE	기체결 FTA 협정세율 (2022년)	RCEP 협정세율 (1년차)
담배	시가, 셔루트, 시가필로 -1개피당담배함유량이0.8그램이하인것	2402.10.20	\$0.46268/stick	0.0
석유 화학	프로판	2711.12.10	\$0.125/L	0.0
화학	조제윤활유 -고체또는반고체상태	3403.11.10	\$0.085/kg	0.0

부록5

일본 수출 RCEP 활용 유망품목 300개

(단위: 천엔)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1	농수산물	0301.99-290	5%	4%	Carp2.9%	1,679,288	혜택
2		0511.91-200	3%	2%	2%	1,615,972	0.2%
3		0813.40-022	15%	9%	7%	221,326	1.6%
4		2008.19-192	22%	11%	9%	1,261,774	2.0%
5		2206.00-229	43.10yen/l	42.40yen/l	38.36yen/l	799,829	혜택
6		2208.90-129	18%	16%	15%	4,286,475	1.5%
7	토석류/소금	2523.30-000	3%	2%	2%	230,891	0.4%
8	석유제품	2710.12-181	934yen/kl	-	Free	113,601,794	혜택
9		2710.19-142	346yen/kl	-	Free	477,116	혜택
10		2710.19-165	459yen/kl	-	401.63yen/kl	12,688,870	혜택
11		2710.19-196	1%	8%	7%	1,262,448	1.0%
12		2710.19-291	4%	3%	Free	641,102	3.3%
13		2710.19-293	4%	3%	3%	1,513,902	0.6%
14	화학공업제품	2803.00-000	5%	4%	3%	5,590,418	0.7%
15		2808.00-000	3%	3%	Free	4,368,161	2.5%
16		2811.22-000	4%	3%	3%	1,323,188	0.6%
17		2812.90-000	4%	3%	3%	3,405,394	0.6%
18		2815.20-000	5%	4%	3%	456,769	0.7%
19		2817.00-000	5%	4%	4%	737,997	0.8%
20		2818.10-010	4%	3%	3%	471,318	0.4%
21		2823.00-000	5%	4%	3%	573,331	0.7%
22		2825.10-050	5%	4%	Free	578,378	3.9%
23		2826.19-090	4%	3%	Free	230,482	3.3%
24		2831.10-000	4%	3%	3%	268,415	0.6%
25		2833.24-000	5%	4%	Free	13,368,623	3.9%
26		2836.40-010	5%	4%	Free	239,697	3.9%
27		2836.99-000	4%	3%	3%	255,710	0.6%
28		2841.69-000	5%	4%	Free	910,675	3.9%
29		2841.90-090	4%	3%	3%	21,769,528	0.6%
30		2842.10-000	4%	3%	2%	971,866	0.5%
31		2847.00-000	4%	3%	Free	1,004,026	3.3%
32		2849.90-090	3%	3%	2%	740,490	0.3%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33	화학공업제품	2850.00-000	4%	3%	3%	547,938	0.6%
34		2853.90-000	4%	3%	!Free~2.7%	243,861	혜택
35		2903.13-000	5%	4%	Free	438,906	3.9%
36		2903.15-000	5%	4%	3%	3,988,888	0.7%
37		2903.71-000	5%	3%	3%	493,466	0.6%
38		2903.91-000	5%	3%	3%	1,506,610	0.6%
39		2903.99-900	5%	3%	3%	1,774,138	0.4%
40		2904.10-000	5%	3%	3%	283,077	0.6%
41		2905.32-000	8%	6%	Free	1,022,331	5.5%
42		2905.39-000	5%	3%	3%	707,722	0.6%
43		2907.19-990	5%	3%	Free	1,479,310	3.1%
44		2907.23-000	3%	3%	Free	4,401,990	3.1%
45		2907.29-000	5%	3%	3%	652,762	0.6%
46		2909.43-000	5%	3%	Free	273,898	3.4%
47		2909.49-090	5%	3%	3%	824,161	0.6%
48		2910.30-000	6%	4%	Free	1,080,031	3.7%
49		2914.11-000	4%	4%	Free	1,512,767	3.9%
50		2915.21-000	3%	2%	2%	5,322,821	0.4%
51		2915.70-020	5%	4%	Free	558,616	3.9%
52		2915.90-090	6%	4%	4%	1,334,459	0.8%
53		2916.12-000	6%	4%	4%	1,957,369	0.8%
54		2916.13-000	5%	4%	Free	239,293	3.9%
55		2916.14-000	5%	4%	3%	661,332	0.7%
56		2916.15-000	4%	3%	Free	241,571	3.3%
57		2916.19-000	6%	4%	Free	893,099	4.3%
58		2916.39-090	6%	4%	4%	496,387	0.5%
59		2917.12-010	5%	4%	3%	1,687,480	0.7%
60		2917.14-000	5%	4%	Free	671,432	3.9%
61		2917.19-000	5%	3%	3%	268,127	0.6%
62		2917.32-000	5%	4%	3%	433,937	0.7%
63		2917.39-010	5%	3%	3%	446,518	0.6%
64		2917.39-090	5%	3%	3%	331,184	0.6%
65		2918.19-090	5%	4%	3%	2,008,510	0.7%
66		2918.29-000	5%	4%	3%	1,928,711	0.5%
67		2918.30-200	5%	4%	3%	4,216,678	0.7%
68		2918.99-000	5%	4%	3%	700,338	0.7%
69		2920.29-000	5%	4%	3%	349,954	0.7%
70		2921.51-900	5%	4%	3%	825,587	0.4%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71	화학공업제품	2922.19-099	5%	4%	3%	505,959	0.7%
72		2922.41-000	5%	4%	3%	471,168	0.7%
73		2922.50-000	5%	4%	3%	338,796	0.5%
74		2923.90-900	5%	4%	3%	1,802,936	0.7%
75		2924.19-029	5%	3%	3%	1,238,112	0.6%
76		2924.29-090	5%	3%	3%	818,191	0.4%
77		2926.10-000	6%	4%	4%	478,987	0.8%
78		2926.90-000	5%	3%	3%	634,193	0.6%
79		2927.00-000	5%	4%	3%	706,660	0.7%
80		2928.00-000	5%	4%	3%	404,636	0.7%
81		2929.10-010	5%	3%	3%	221,873	0.6%
82		2929.10-020	5%	3%	3%	974,505	0.6%
83		2929.10-090	5%	3%	3%	457,446	0.6%
84		2929.90-000	5%	3%	3%	2,780,395	0.6%
85		2931.90-000	5%	3%	3%	3,792,519	0.4%
86		2932.20-090	5%	3%	3%	306,809	0.6%
87		2932.99-000	5%	3%	3%	1,175,060	0.6%
88		2933.29-000	5%	3%	3%	1,438,210	0.6%
89		2933.39-220	5%	3%	3%	3,727,561	0.4%
90		2933.49-900	5%	3%	3%	561,241	0.6%
91		2933.59-400	5%	3%	3%	1,474,788	0.4%
92		2933.69-000	5%	3%	3%	326,365	0.6%
93		2933.79-000	5%	4%	3%	2,790,905	0.7%
94		2933.99-090	5%	3%	3%	3,425,278	0.4%
95		2934.10-000	5%	3%	3%	637,856	0.6%
96		2934.99-099	5%	3%	3%	4,150,345	0.6%
97		2935.90-000	5%	4%	3%	7,529,811	0.7%
98		2938.90-000	5%	4%	3%	246,296	0.5%
99		3204.17-010	5%	4%	3%	1,264,567	0.4%
100		3204.17-090	5%	4%	3%	444,849	0.6%
101		3204.90-000	5%	4%	Free	261,413	4.4%
102		3206.19-000	4%	3%	Free	255,491	2.6%
103	3206.49-900	4%	3%	2%	851,807	0.5%	
104	3207.30-000	3%	2%	2%	734,078	0.4%	
105	3208.10-000	5%	3%	Free	769,764	3.2%	
106	3208.20-000	5%	3%	3%	1,023,163	0.6%	
107	3208.90-020	5%	3%	3%	393,309	0.6%	
108	3208.90-090	5%	3%	Free	449,756	3.2%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109	화학공업제품	3214.10-000	4%	3%	3%	508,402	0.6%	
110		3215.19-000	5%	4%	3%	371,675	0.7%	
111		3307.49-000	5%	4%	3%	525,227	0.7%	
112		3307.90-000	4%	4%~4.8%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oils, fats or waxes Free	7,907,012	혜택	
113		3403.99-000	5%	3%	Free	422,930	3.1%	
114		3506.10-000	5%	4%	3%	606,503	0.7%	
115		3801.10-000	3%	3%	2%	614,461	0.3%	
116		3808.91-010	5%	4%	3%	1,834,865	0.7%	
117		3808.91-091	5%	4%	3%	1,144,521	0.7%	
118		3808.92-010	5%	4%	3%	1,505,410	0.7%	
119		3808.93-010	5%	4%	3%	730,651	0.7%	
120		3808.94-000	5%	4%	3%	244,334	0.7%	
121		3809.91-010	4%	3%	3%	470,331	0.6%	
122		3809.92-000	5%	4%	Free	319,096	3.9%	
123		3812.39-900	4%	3%	Free	571,186	2.6%	
124		3814.00-000	5%	4%	3%	384,063	0.7%	
125		3815.19-290	3%	2%	Free	347,026	2.2%	
126		3821.00-000	3%	3%	Free	370,909	2.5%	
127		3823.12-000	3%	3%	Free	407,083	2.5%	
128		3824.99-200	5%	4%	Free	1,375,812	3.9%	
129		3824.99-999	4%	3%	Free	8,052,734	2.6%	
130		플라스틱/고무	3901.20-019	22.40yen/kg	7%	5.7% or 19.60yen/kg, whichever is the less	1,069,599	혜택
131			3901.40-019	4%	3%	3%	3,527,673	0.3%
132			3901.90-019	4%	3%	3%	527,724	0.3%
133			3902.30-010	4%	3%	3%	15,131,244	0.3%
134			3903.30-010	5%	3%	3%	4,220,169	0.4%
135			3903.90-010	5%	3%	3%	1,471,009	0.4%
136			3904.30-010	5%	3%	3%	472,556	0.6%
137			3906.10-010	4%	3%	3%	1,647,545	0.6%
138	3906.90-010		4%	3%	2%	4,711,456	0.5%	
139	3906.90-090		5%	4%	3%	1,761,122	0.7%	
140	3907.10-000		4%	3%	2%	637,080	0.5%	
141	3907.30-010		5%	3%	3%	1,524,490	0.6%	
142	3907.30-090		5%	3%	3%	4,856,865	0.6%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143	플라스틱/고무	3907.40-900	4%	3%	2%	7,037,106	0.5%
144		3907.61-000	5%	3%	3%	7,005,827	0.6%
145		3907.69-000	5%	3%	3%	5,404,198	0.6%
146		3907.91-000	5%	3%	3%	807,613	0.6%
147		3907.99-019	5%	3%	3%	2,530,450	0.6%
148		3907.99-090	5%	3%	3%	348,520	0.6%
149		3908.10-000	6%	4%	3%	4,707,152	0.7%
150		3908.90-910	6%	4%	3%	554,993	0.7%
151		3909.31-000	4%	3%	2%	2,195,035	0.5%
152		3909.40-010	5%	4%	3%	853,970	0.7%
153		3909.50-090	5%	3%	3%	511,718	0.6%
154		3910.00-090	6%	4%	3%	2,317,837	0.7%
155		3911.10-010	4%	3%	2%	583,317	0.5%
156		3911.90-030	4%	3%	2%	3,945,155	0.5%
157		3911.90-090	4%	3%	2%	448,599	0.5%
158		3912.20-000	5%	4%	3%	219,227	0.7%
159		3912.39-000	5%	3%	3%	1,070,448	0.6%
160		3913.90-000	5%	3%	3%	2,171,424	0.6%
161		3914.00-010	6%	5%	4%	454,043	0.9%
162		3916.90-000	6%	4%	4%	238,511	0.8%
163		3917.21-000	6%	5%	4%	235,202	0.9%
164		3917.22-000	6%	5%	4%	469,749	0.9%
165		3917.29-000	5%	4%	3%	462,763	0.7%
166		3917.32-010	5%	4%	4%	665,044	0.8%
167		3917.32-090	5%	4%	4%	331,681	0.8%
168		3917.39-090	5%	4%	4%	216,895	0.8%
169		3917.40-000	6%	4%	3%	634,294	0.7%
170		3918.10-000	5%	3%	3%	2,233,015	0.6%
171		3919.10-010	4%	3%	2%	254,787	0.5%
172		3919.10-090	4%	3%	2%	959,833	0.5%
173		3920.10-000	6%	5%	4%	2,852,100	0.9%
174		3920.20-000	6%	5%	4%	2,847,947	0.9%
175		3920.43-000	5%	4%	3%	941,617	0.7%
176		3920.51-000	6%	5%	4%	1,656,275	0.9%
177		3920.61-000	5%	4%	3%	257,663	0.6%
178		3920.62-000	6%	5%	4%	15,398,109	0.9%
179	3920.73-000	5%	4%	3%	2,566,308	0.7%	
180	3920.92-000	6%	5%	4%	1,214,858	0.9%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181	플라스틱/고무	3920.99-090	5%	4%	3%	3,532,063	0.7%
182		3921.19-010	5%	5%	4%	1,094,920	0.8%
183		3921.19-090	5%	5%	4%	620,429	0.8%
184		3921.90-010	5%	4%	3%	219,983	0.7%
185		3921.90-020	5%	4%	3%	487,100	0.7%
186		3921.90-030	5%	4%	3%	591,251	0.7%
187		3921.90-090	5%	4%	3%	1,207,237	0.7%
188		3923.21-000	6%	4%	3%	1,319,640	0.7%
189		3923.29-000	6%	4%	3%	403,395	0.7%
190		3923.30-000	6%	4%	3%	4,375,276	0.7%
191		3923.50-000	6%	4%	3%	1,608,474	0.5%
192		3923.90-000	6%	4%	3%	2,145,980	0.7%
193		3924.10-000	6%	4%	3%	1,952,701	0.7%
194		3924.90-000	6%	4%	3%	295,283	0.7%
195		3925.90-000	6%	4%	3%	262,696	0.7%
196		3926.90-029	6%	4%	3%	13,031,795	0.7%
197		4009.11-000	2%	2%	2%	225,474	0.4%
198		섬유/의복/가죽	5402.20-021	8%	7%	Free	373,974
199	5402.33-021		8%	7%	Free	289,697	6.6%
200	5402.34-910		8%	7%	Free	246,509	6.6%
201	5402.45-991		8%	5%	Free	564,800	5.3%
202	5402.47-910		8%	7%	Free	1,304,308	6.6%
203	5407.41-023		6%	6%	Free	280,425	5.7%
204	5407.41-029		8%	7%	Free	237,600	7.1%
205	5407.61-021		6%	6%	Free	874,341	5.7%
206	5407.61-022		6%	6%	Free	721,279	5.7%
207	5503.20-010		8%	7%	Free	2,076,367	6.6%
208	5503.20-090		8%	7%	Free	1,350,785	6.6%
209	5503.40-000		8%	7%	Free	758,290	6.6%
210	5603.11-230		6%	4%	Free	5,306,490	4.3%
211	5603.12-220		6%	4%	Free	418,848	4.3%
212	5603.12-230		6%	4%	Free	1,178,790	4.3%
213	5603.13-220		6%	4%	Free	228,929	4.3%
214	5609.00-010		6%	5%	Free	396,763	5.3%
215	5806.32-090		6%	5%	Free	228,150	5.3%
216	5902.20-010	4%	4%	3%	648,160	0.4%	
217	5903.10-000	4%	4%	Free	289,772	3.5%	
218	5903.20-000	4%	4%	Free	669,632	3.5%	

부 록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219	섬유/의복/가죽	5903.90-000	4%	4%	Free	607,667	3.5%
220		5906.10-000	4%	4%	3%	295,015	0.4%
221		5911.40-090	4%	3%	3%	897,797	0.3%
222		6004.10-020	1%	8%	Free	229,915	7.9%
223		6004.10-040	7%	5%	Free	581,812	5.4%
224		6006.22-020	7%	6%	Free	240,692	5.6%
225		6106.20-010	11%	11%	1%	295,335	1.4%
226		6109.10-010	11%	11%	Containing embroidery or lace, or figured 9.5%	641,895	혜택
227		6110.20-030	11%	11%	Other than containing embroidery or lace, or figured 9.5%	240,964	혜택
228		6110.30-099	11%	11%	Other than of polyesters Excluding embroidery or lace, or figured 9.5%	280,378	혜택
229		6116.93-000	6%	5%	5%	271,463	0.7%
230		6306.22-000	5%	4%	4%	218,122	0.5%
231		6307.10-020	6%	5%	4%	609,145	0.6%
232		6307.90-019	8%	7%	6%	220,612	0.8%
233		6307.90-023	6%	5%	4%	4,440,064	0.6%
234	6307.90-029	6%	5%	4%	2,323,246	0.6%	
235	신발/모자류	6505.00-990	7%	6%	5%	319,070	0.7%
236	유리/도자제품	6804.21-000	3%	2%	2%	1,040,157	0.4%
237		6805.30-000	5%	4%	3%	257,457	0.6%
238		6903.20-000	5%	4%	3%	314,171	0.6%
239	귀금속	7113.19-029	7%	5%	5%	427,265	0.7%
240		7117.19-010	6%	4%	3%	216,075	0.7%
241		7117.19-090	6%	4%	3%	2,870,952	0.5%
242		7117.90-010	13%	1%	8%	262,087	1.8%
243	철강/비철금속	7311.00-000	4%	3%	3%	1,753,795	0.4%
244		7318.15-019	3%	3%	2%	2,129,227	0.5%
245		7318.15-090	3%	3%	3%	913,681	0.3%
246		7318.16-010	3%	3%	Free	542,105	2.8%
247		7318.16-090	3%	3%	2%	816,966	0.5%
248		7318.23-000	3%	3%	Free	270,767	2.8%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249	철강/비철금속	7318.29-000	3%	3%	2%	429,358	0.5%
250		7405.00-000	5%	3%	Free	364,802	3.0%
251		7407.21-000	6%	3%	3%	1,168,588	0.5%
252		7408.21-000	6%	3%	3%	285,288	0.5%
253		7408.29-090	6%	3%	3%	220,977	0.5%
254		7409.11-000	5%	3%	3%	1,550,642	0.5%
255		7409.19-000	5%	3%	3%	223,753	0.5%
256		7409.21-000	5%	3%	3%	7,539,854	0.5%
257		7409.31-000	5%	3%	3%	1,515,830	0.5%
258		7410.11-000	5%	3%	3%	5,138,810	0.5%
259		7410.12-000	5%	3%	Free	829,889	3.0%
260		7410.21-000	5%	3%	3%	1,678,340	0.5%
261		7410.22-000	5%	3%	Free	1,343,682	3.0%
262		7411.10-000	5%	3%	3%	820,967	0.4%
263		7505.22-000	5%	3%	Free	282,101	3.0%
264		7506.10-200	6%	3%	Free	461,035	3.0%
265		7604.21-000	1%	8%	Free	263,179	7.5%
266		7604.29-000	9%	8%	6%	985,512	1.4%
267		7606.11-000	3%	2%	2%	3,215,740	0.4%
268		7606.12-090	3%	2%	2%	8,628,472	0.4%
269		7606.92-090	3%	2%	2%	1,130,937	0.4%
270		7607.11-000	1%	8%	7%	293,330	0.9%
271		7607.19-000	1%	8%	7%	1,364,294	0.9%
272		7607.20-000	1%	8%	6%	434,515	1.4%
273		7608.20-000	1%	8%	6%	691,449	1.4%
274		7610.90-000	4%	3%	3%	2,660,955	0.5%
275		7616.99-000	4%	3%	3%	1,292,613	0.5%
276	7903.10-000	5%	3%	Free	1,073,063	3.0%	
277	7907.00-900	5%	3%	3%	282,102	0.5%	
278	비금속제품	8108.30-090	4%	3%	Free	270,123	3.0%
279		8112.92-100	3%	3%	2%	1,309,865	0.5%
280		8301.40-000	4%	3%	2%	261,845	0.5%
281		8302.10-000	4%	3%	2%	526,850	0.5%
282		8302.41-000	4%	3%	2%	912,009	0.5%
283		8302.49-000	4%	3%	2%	840,945	0.5%
284	비금속제품	8311.20-000	4%	3%	3%	2,364,193	0.6%
285	전기전자	8544.11-000	6%	5%	4%	7,397,720	0.9%
286		8544.19-000	6%	5%	4%	967,731	0.9%

부 록

No.	산업	HS코드	관세율			2021년 수출실적	RCEP 활용실익
			일반관세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287	의료/정밀기기	9003.11-000	6%	5%	4%	2,428,945	0.6%
288		9003.19-010	6%	5%	4%	414,466	0.6%
289	생활용품	9507.10-010	4%	3%	3%	375,965	0.6%
290		9507.30-000	4%	3%	3%	466,092	0.6%
291		9507.90-000	4%	3%	3%	277,761	0.6%
292	기타	9603.21-000	8%	7%	5%	373,030	1.2%
293		9603.29-000	8%	7%	5%	400,761	1.2%
294		9603.30-000	8%	7%	5%	422,124	1.2%
295		9608.10-090	6% or 1.51yen	5% or 1.25yen	4.4%or1.09yen/ piece, whichever is the greater	262,393	혜택
296		9608.20-000	5%	4%	3%	822,597	0.7%
297		9608.60-000	6% or 0.60yen	5% or 0.50yen	Free	316,701	혜택
298	9608.99-010	4%	3%	3%	311,046	0.6%	
299	9615.90-060	5%	4%	4%	548,336	0.8%	
300	9616.20-000	5%	4%	3%	490,475	0.7%	

출처: 일본 관세청 관세율표(2022년 4월 1일자 기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검색일:2022.09.22.)

주1: RCEP 협정세율은 발효 2년차 세율 적용

주2: RCEP 관세혜택 품목 중 2021년도 일본의 對한국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300개 품목 선정

부록6

일본 RCEP 활용전략 원산지기준 관련 일본어-한국어 대조표

일본어	한국어 직역	한국어 의역
締約国	체약국	당사자
原産品	원산품	원산지 상품
原産材料	원산재료	원산지 재료
非原産品	비원산품	비원산지 상품
非原産材料	비원산재료	비원산지 재료
原産地規則	원산지규칙	원산지 규정
品目別原産地規則	품목별원산지규칙	품목별 원산지 규정
関税分類番号 / HS コード	관세분류번호 / HS코드	세번 / HS 코드
類	류	류
項	항	호
号	호	소호
完全生産品 (WO)	완전생산품	완전생산기준 (WO)
関税分類変更基準(CTC)	관세분류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CTC)
CC (上 2 桁変更)	CC(상2항변경)	CC 2 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上 4 桁変更)	CTH(상4항변경)	CT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上 6 桁変更)	CTSH(상6항변경)	CTSH 6 단위 세번변경기준
僅少/許容限度	근소허용한도	최소허용수준
域内原産割合 RVC	역내원산할합 RVC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付加価値基準 VA	부가가치기준 VA	부가가치기준
非原産材料の最大割合 / MaxNOM	비원산재료의 최대할합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비율
間接方式/控除方式	간접방식/공제방식	간접법/공제법
直接方式/積上げ方式	직접방식/적상방식	직접법/직접법
純費用方式	순비용방식	순원가법 NC

부 록

加工工程基準	가공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
軽微な工程及び加工/ 原産資格を与えることとなら ない作業	경미한공정및가공/ 원산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작업	최소 공정 및 가공 불인정공정
積送基準（直接積送）	적송기준(직접적송)	직접운송원칙
サプライヤー証明書	서플라이어증명서	원산지확인서
非加工証明書	비가공증명서	비조작증명서
自己証明*	자기증명	자율발급
認定輸出者	인정수출자	인증수출자
事前教示	사전교시	사전심사

부록7

RCEP FAQ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

Q1. RCEP 원산지증명서 제11번란(원산지국가)에 국가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된 RCEP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인정 여부

A1. 국가명을 모두 대문자로 기재한 경우 협정 제3.26조의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협정에 규정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정에 규정된 작성 방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구비 권고

Q2.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방법

A2.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 ①역내 중간 경유국에서 RCEP 제3.19조의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RCEP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②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음

②의 경우(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 활용방법은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을 참고

Q3. RCEP 회원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A3. ① 우리나라에서 물류·보존·운송 상 필요한 공정 외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협정 제3.4조(누적)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다만 이 경우 누적 대상 원재료 수입 시 적용하는 협정과 별도로 누적 대상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 필요

②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는 경우,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에 따라 원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만 이 경우 중간 경유 수출자인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판단 의무 발생

Q4. 제3자 송장 발행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A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제17란의 ‘Third-Party invoicing’에 체크하고 제14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기재 업무 집행지침’을 참고

Q5. RCEP 발효 전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A5.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원산지 증명서발급을 위한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 발효 전에 RCEP 회원국으로부터 구매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이 협정의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

다만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신규로 작성하여야 함

Q6.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6. RCEP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다른 RCEP 회원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최종상품에 사용된 상품 또는 재료의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갖춘 경우 누적적용이 가능

따라서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로도 해당 원재료가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산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누적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나, 안정적인 특혜적용을 위해 누적 대상 재료에 대해 RCEP 원산지증명 확보를 권고

누적 입증서류에 대한 RCEP 회원국 간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 FTA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Q7. RCEP 회원국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A7. RCEP 제3.16조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의 원산지증명방식으로 ①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음

일부 RCEP 국가는 현재 규정된 세 가지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Q8.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A8. RCEP 제2.6조제6항은 수입자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출당사국 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①가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또는 ②나호에 따라 모든 RCEP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Q9. 반드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A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는 ①원산지증명서 사본, ②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③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원본 보관 의무는 없음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Q10. HS 2022 개정에 따른 RCEP 원산지증명서 9번란 작성방법

A10.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서와 달리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RCEP은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 9번란의 HS 품목번호는 HS 2012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다만 수입신고 상의 HS코드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상이한 경우,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집 필 진

<p>PART1. 서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CEP의 발효 의미 2. RCEP 수출입 동향 3. RCEP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 현황과 의미 <p>PART 2. Mega FTA 활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별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 기존 FTA와 차별점 2.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침 3. RCEP 활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누적 전략 -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전략 - 관세차별 활용전략 - 연결원산지증명 활용전략 4. 원산지검증 유의사항 <p>PART 3.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지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2. 국가별 RCEP 활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p>PART 4. 對일본 RCEP 활용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의 수출입 현황 2. 對일본 RCEP 활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 활용 수출 유망산업 - 다국누적 활용전략 - 일본 중계무역 활용전략 - 일본 GVC 활용전략 3. 일본 현지 RCEP 활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세율 활용, 1국 다협정 전략 - 지원제도 및 정책 정보 활용 - 현지 RCEP(EPA) 활용 방법 <p>부 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CEP 활용 실무절차 2. 수출 1,000대 품목으로 본 RCEP 수출 유망품목 3. RCEP 원산지 간이확인제도 대상품목 4. 국가별 주요 품목 양허 실적 5. 일본 수출 RCEP 활용 유망품목 300개 6. 일본 RCEP 활용전략 원산지기준 관련 일본어-한국어 대조표 7. RCEP FAQ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p>한국무역협회</p> <p>홍정완 과장 강지수 원산지관리사</p>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p> <p>이요섭 대리 차유석 관세사</p> <p>관세청</p> <p>조점술 사무관 김영아 주무관 심성훈 주무관</p> <p>국제원산지정보원</p> <p>윤호성 정책연구팀장</p>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p> <p>이요섭 대리 차유석 관세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렌 무역관(중국) 하노이, 호치민 무역관(베트남) 방콕 무역관(태국) 프놈펜 무역관(캄보디아) 시드니 무역관(호주) 마닐라 무역관(필리핀)</p> <p>한국무역협회</p> <p>장유진 대리 박효정 원산지관리사</p> <p>김숙경 관세사 심민정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김한솔 관세사</p> <p>유관기관 공동</p>
--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